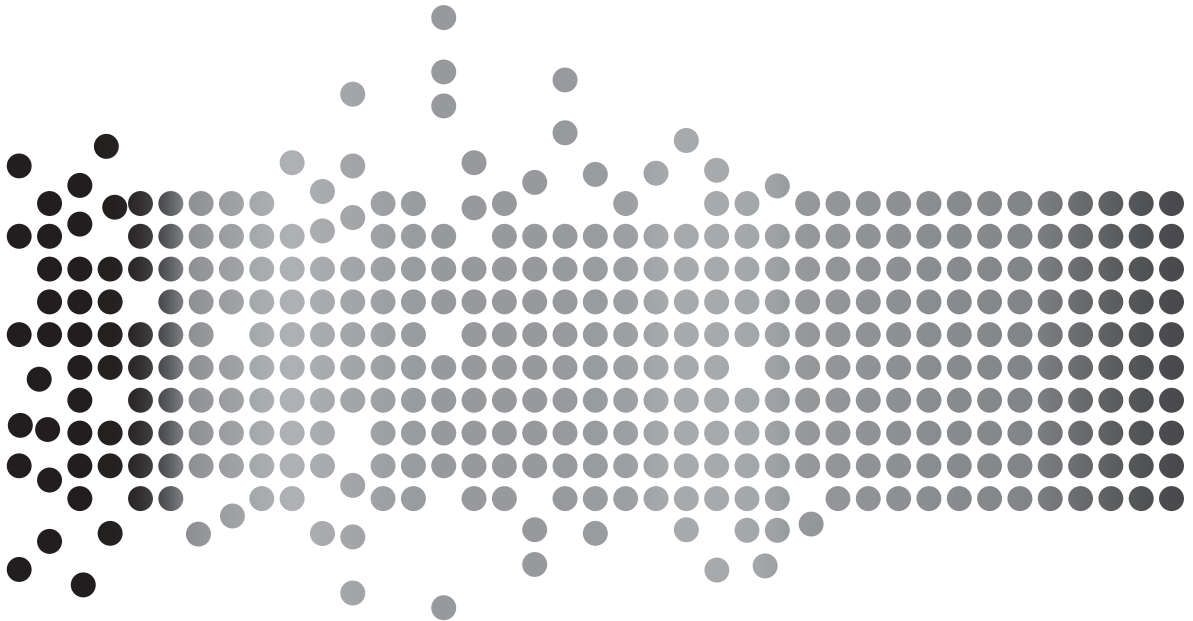


#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The enhancement of fiscal expenditure efficiency of  
NHI with an adoption of internal competition

김진수 · 최인덕 · 박일수 · 이기주



연구보고서 2012-15

---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

발 행 일 2012년  
저 자 김 진 수 외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범신사  
가 격 7,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43-3 93330



## 머리말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제도의 시작은 5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시행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독일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기까지는 127년, 일본은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린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과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이후, 2000년에는 직장파 지역의 조직통합이 이루어 졌고, 2003년에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이루어져 조합운영방식에서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조합과 통합 운영방식에 대한 장·단을 놓고 많은 격론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통합되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위험분산(Risk pooling)과 사회연대성(social solidarity)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과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2001년~2002년과 2009년~2010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요구 확대 등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는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진료비 지출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 건강보험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변화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단일보험자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경쟁 메카니즘 부재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쟁 메커니즘 부재로 관리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거대한 단일 조직에 따른 관료화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효율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일보험자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되,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느슨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김진수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기주 연구원 그리고 최인덕 국립공주대학 교수, 박일수 위덕대학교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은 연구진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한양대학교 사공진 교수, 카톨릭 대학교 신의철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를 세심히 읽고 많은 조언을 해준 신현웅 연구위원, 신화연 부연구 위원에게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                                     |     |
|-------------------------------------|-----|
| Abstract .....                      | 1   |
| 요 약 .....                           | 3   |
| 제1장 서론 .....                        | 43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43  |
| 제2절 연구방법 .....                      | 45  |
| 제2장 내부경쟁 이론 고찰 및 시사점 .....          | 49  |
| 제1절 내부경쟁 이론 .....                   | 49  |
| 제2절 국내 내부경쟁 사례분석 .....              | 56  |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경쟁 현황 및 시사점 .....   | 63  |
| 제1절 보험자 내부경쟁 현황 .....               | 63  |
| 제2절 시사점 .....                       | 68  |
| 제4장 주요 외국의 건강보험 내·외부 경쟁 현황 .....    | 73  |
| 제1절 대만 .....                        | 74  |
| 제2절 네덜란드 .....                      | 78  |
| 제3절 독일 .....                        | 86  |
| 제4절 스웨덴 .....                       | 92  |
| 제5절 시사점 .....                       | 101 |
| 제5장 내부경쟁 필요성 및 적용방안 모색 .....        | 105 |
| 제1절 내부경쟁 필요성, 경쟁방향 및 적용 방안 모색 ..... | 105 |
| 제2절 내부경쟁 적용모형 검토 .....              | 115 |

|                     |     |
|---------------------|-----|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 181 |
|---------------------|-----|

|            |     |
|------------|-----|
| 참고문헌 ..... | 187 |
|------------|-----|

|           |     |
|-----------|-----|
| 부 록 ..... | 193 |
|-----------|-----|

|                                  |     |
|----------------------------------|-----|
| 부록 1. 지역본부별 관할지사(2009년 기준) ..... | 193 |
|----------------------------------|-----|

|                                         |     |
|-----------------------------------------|-----|
| 부록 2. 기존 지역본부 및 지사평가 지표(2009년 기준) ..... | 199 |
|-----------------------------------------|-----|

## 표 목차

|                                              |     |
|----------------------------------------------|-----|
| 〈표 2- 1〉 대외 인정 성과 .....                      | 58  |
| 〈표 4- 1〉 대만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및 분류 .....           | 75  |
| 〈표 4- 2〉 대만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                 | 76  |
| 〈표 4- 3〉 네덜란드 위험조정 프로그램의 실제 예 .....          | 85  |
| 〈표 4- 4〉 스웨덴 보건 및 사회서비스 운영체계 .....           | 93  |
| 〈표 4- 5〉 스웨덴 제네릭 대체조제 현황 .....               | 100 |
| 〈표 5- 1〉 2006~2011년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추이 .....  | 106 |
| 〈표 5- 2〉 2006~2008년 지역본부별 급여비 분석 .....       | 108 |
| 〈표 5- 3〉 지역별 산출 목표진료비 및 실제지출급여비 .....        | 109 |
| 〈표 5- 4〉 전역적 통계량(OLS)과 국지적 통계량(GWR) 비교 ..... | 117 |
| 〈표 5- 5〉 분석자료의 구조 .....                      | 121 |
| 〈표 5- 6〉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 124 |
| 〈표 5- 7〉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 125 |
| 〈표 5- 8〉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 126 |
| 〈표 5- 9〉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 127 |
| 〈표 5-10〉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 128 |
| 〈표 5-11〉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 129 |
| 〈표 5-12〉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 131 |
| 〈표 5-13〉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 133 |
| 〈표 5-14〉 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 134 |
| 〈표 5-15〉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 135 |
| 〈표 5-16〉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 136 |
| 〈표 5-17〉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 137 |

|                                            |          |
|--------------------------------------------|----------|
| 〈표 5-18〉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139 |
| 〈표 5-19〉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141 |
| 〈표 5-20〉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142 |
| 〈표 5-21〉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143 |
| 〈표 5-22〉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144 |
| 〈표 5-23〉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145 |
| 〈표 5-24〉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148    |
| 〈표 5-25〉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149    |
| 〈표 5-26〉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150    |
| 〈표 5-27〉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151    |
| 〈표 5-28〉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152    |
| 〈표 5-29〉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153    |
| 〈표 5-30〉 서울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158    |
| 〈표 5-31〉 부산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162    |
| 〈표 5-32〉 대구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165    |
| 〈표 5-33〉 대전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168    |
| 〈표 5-34〉 경인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171    |
| 〈표 5-35〉 광주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174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 1]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 45  |
| [그림 1- 2] 연구분석틀 .....                                                | 46  |
| [그림 2- 1] 분권화 형태 .....                                               | 52  |
| [그림 2- 2] 욕구이론과 동기-위생이론 개괄 .....                                     | 55  |
| [그림 2- 3]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직도 .....                                         | 57  |
| [그림 4- 1] 데커 개혁방안 .....                                              | 79  |
| [그림 4- 2] 네덜란드 건강보험 개혁 전후 비교 .....                                   | 80  |
| [그림 4- 3] 네덜란드 건강보장체계의 재정흐름도 .....                                   | 81  |
| [그림 4- 4] 네덜란드 보험자간 경쟁 개관 .....                                      | 82  |
| [그림 4- 5]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                                        | 87  |
| [그림 4- 6] 독일 건강보험 재정운용 및 위험조정 프로그램 운영 구조 ..                          | 89  |
| [그림 4- 7] 독일 위험조정 고려 요소와 이환질병의 그룹의 적용방법 ..                           | 91  |
| [그림 4- 8]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수준별 역할 구분 .....                            | 92  |
| [그림 4- 9] 국가 보건사회부 산하 위원회 .....                                      | 95  |
| [그림 4-10] County Council과 Region의 수입 구조 .....                        | 96  |
| [그림 4-11] 스웨덴 조세 부과 흐름도 .....                                        | 96  |
| [그림 5- 1]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GWR 전체) .....  | 157 |
| [그림 5- 2]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 .....                | 159 |
| [그림 5- 3]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서울지역본부1) ..... | 160 |

|                                                                       |     |
|-----------------------------------------------------------------------|-----|
| [그림 5- 4]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서울지역본부 2) ..... | 161 |
| [그림 5- 5]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 .....                 | 163 |
| [그림 5- 6]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부산지역본부) .....   | 164 |
| [그림 5- 7]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 .....                 | 166 |
| [그림 5- 8]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대구지역본부) .....   | 167 |
| [그림 5- 9]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 .....                 | 169 |
| [그림 5-10]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대전지역본부) .....   | 170 |
| [그림 5-11]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 .....                 | 172 |
| [그림 5-12]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경인지역본부) .....   | 173 |
| [그림 5-13]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연간 실제 총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 .....              | 175 |
| [그림 5-14]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br>목표 총급여비 비교(광주지역본부) .....   | 176 |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grey cloud-like shape with several smaller, lighter grey shapes floating around it, positioned behind the 'Abstract' title.

#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nhance fiscal expenditure efficiency of NHI through adoption of internal competition.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a local regression analysis which allows the spatial non-stationarity of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o be examined, was applied to impose target expenditure on NHI Corporation sub-branches and to reflect each of the branche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utcome of the research shows that there exist various contributing factors behind variation of medical costs by regional headquarter or by sub-branch. It is, however, deemed necessary to adopt internal competition to better manage relevant expenditures. Instead of adopting a competition model under full market condition, it is desirable to adopt one under managed or controlled circumstance. Adoption of risk management assessment program activated in countries where multiple insurance agencies are available would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Responsible institutions' effective management capabilities are required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l competition. Refurbishment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NHI Corporation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thus,

necessary. There exist both positive and negative sides when refurbishing institutional functions and duties. Cautious and prudent approaches and decision making are, thus, keys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trace and tackle down regulatory or systematic impediment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f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responsible institution, and NHI Corporation, the implementing institution to strengthen their shoulder-to-shoulder partnership. Under current partnership setting, NHI Corporation is hardly able to function under its own discretion. Its function is within the scope of the implementation guideline and is also under strict supervis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responsible institution. Active inter-branch competition was difficult to initiate under such setting.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have empowered health insurance agencies to fiscally function under their own discretion to some extent. Review in this context is deemed necessary.

# 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이후, 2000년의 직장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조직통합, 2003년 재정통합으로 건강보험제도는 다보험자 방식에서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변화함.
  - 건강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위험분산(Risk pooling) 기능과 사회연대성(social solidarity)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과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의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재정은 2001년~2002년과 2009년~2010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 확대 등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경쟁상대가 없는 단일 보험자 방식인 현행 건강보험 관리체제는 하나

#### 4 •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의 보험자로 인해 가입자가 보험자를 선택할 수 없어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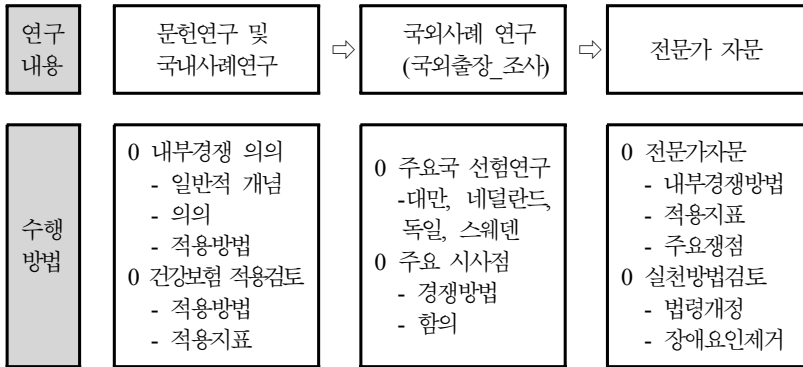
—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가입자를 위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음.

- 단일보험자방식에 대한 다른 비판은 경쟁 메커니즘 부재로 관리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거대한 단일 조직에 따른 관료화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효율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강보험 내부경쟁을 통해 재정지출 관리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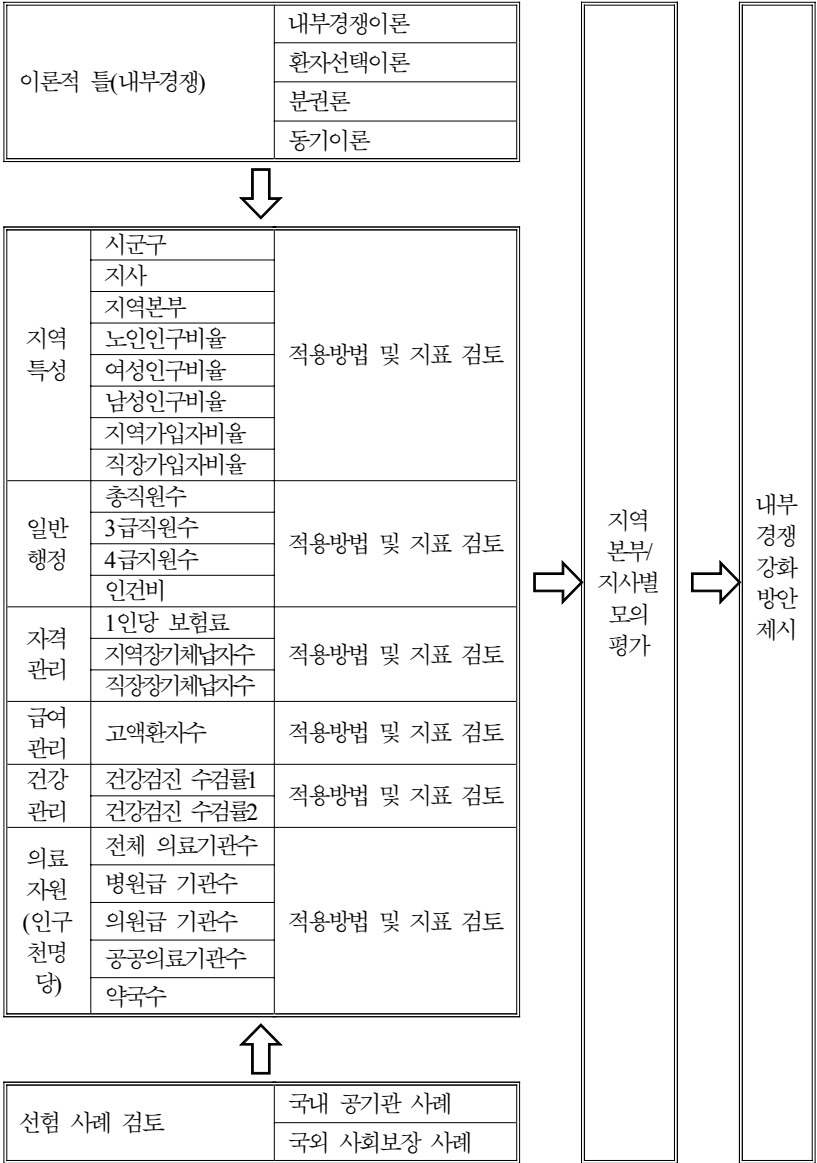
- 연구방법은 먼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내부 경쟁현황을 분석하고, 문헌연구 및 국외출장을 통해 주요 외국국가들의 내부경쟁사례와 국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들의 내부경쟁사례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그림 1]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다음으로 문헌고찰 및 주요외국의 내부 경쟁사례분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급여비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부경쟁방안을 모색함.
- 결론 부분에서는 내부 경쟁 도입방안과 내부경쟁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그림 2] 연구분석틀





## II. 주요 연구결과

### 1. 내부경쟁 이론 고찰 및 시사점

#### 가. 내부경쟁 이론

##### □ 일반적 이론

- 내부경쟁이란 용어는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내 부서나 팀 간에 경쟁을 유도 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경영전략에서 사용되어 왔음.
- 내부경쟁의 목적은 조직이나 제도 내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나 부서가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직이나 제도 내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개발과 외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단점으로는 자원의 중복투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조직 분열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Brikshaw(2001)은 적절한 통제하의 내부경쟁으로 획득 가능한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 첫째, 내부경쟁은 조직 내부에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경쟁에 필요한 유연성과 활동적인 실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경영계획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 둘째로 내부경쟁은 조직운영이나 기업경영에서 근시안적인 경영전략에 대한 교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 마지막으로 시장을 통한 외부경쟁이나 경쟁자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보안이나 경영특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들고 있음.

□ 분권화 이론

- 분권화의 의미는 관리운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상위조직에서 하위조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함.
  - － Bankauskaite & Saltman(2007)은 분권화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장점으로서는 지방정부나 하부조직에 비용의식을 부각하고, 공급자와 직접계약을 유도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 또한 하부조직에 의해 효율성 증진이 보다 확고해 질 수 있고, 지역별 또는 하부조직간 형평성을 증진시켜 효과적 재정관리 또는 지출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분권화는 하부조직의 재원조성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 그러나 단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분권화가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재원조성의 책임을 하부조직이 가질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위험분산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환자선택 이론

- 보건의료는 다른 재화와 달리 서비스의 가격이나 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제공된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공급자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적정 수준 이하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
  - －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서비스와 제공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공급자의 질 향상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음.

- 그리고 정보제공은 소비자가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을 촉진하여 제공자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고, 제공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됨.

#### □ 동기이론

- 사회복지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가치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이론으로 조직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론임.
- 동기이론은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론(content theories)과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에 대해 인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process theories)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욕구충족은 동기를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조직이나 개인의 미시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동기부여의 설명이론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보상의 정도나 결과에 대한 인지과정에서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의 형평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불 형평적인 보상이나 결과에 따라 노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동기부여이론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 과정이론은 조직이나 개인이 어떻게 동기화되어 역동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이론임.

#### □ 시사점

- 내부 경쟁관련 이론고찰을 통해 내부경쟁에 필요한 주요 선결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먼저 기본적으로 내부경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동반한 분권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분권화된 각 조직 또는 지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조직의 효율성 증대와 각 조직 간 목표설정 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보유한 권한과 책임을 통해 각 조직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이 노력의 결과는 소비자들의 선택과 선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경쟁과 노력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내부경쟁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임.

## 나. 국내 내부경쟁 사례분석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부경쟁유도를 위해 2006년도부터 사내직위공모와 성과관리를 통해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시스템과 연계하고 있으며 지사별 목표영업이익달성도, 원가절감 제안 실적 등 내부경쟁을 유도해 성과보상을 차등 실시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전환이후 2006년 조직개편과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사장과 팀장에 대한 공모제와 내부승진이 라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권한 위임을 위해서 인사권을 지방 본부 및 지사로 이관하고 책임경영 계약을 체결하였음.
  -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지사에는 인사혜택을 부여하였고, 상여급에 대한 차이(170%)를 두어 성과에 따른 차등적인 책임과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음.
- 국내기업의 내부경쟁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권한위임을 통해 지사나 지역본부에 자율권을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이는 경쟁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기획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중앙에서는 지사나 지역본부에 대한 개입보다는 평가가나 지원자의 역할로서 공정한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평가항목과 개선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사와 지역본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그리고 평가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상이 경쟁체제를 유지함과 더불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임.

##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경쟁 현황 및 시사점

### 가. 보험자 내부경쟁 현황

#### □ 자격징수

- 자격징수 영역의 내부경쟁항목은 4대사회보험 처리실적,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 지역보험료 징수실적, 직장보험료 징수실적, 체납 전담파트 징수실적, 소득축소탈루 통보실적, 자격징수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 등으로 구성됨.
- 자격징수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는 지역본부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본부에 비하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전년에 비해 당해 연도의 성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그 외 지역본부만의 독창적이거나 타 지역본부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선정하여 비계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 보험급여

-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실적 및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실적에 대한 평가는 전체 통보건수 중에 특정기간(45일 이내)에 환급건과 특정기간이후의 환급건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실적률을 측정한 후,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비율을 제외함으로서 지급률이 향상된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실적은 설정된 관할지사별 목표치 대비 실제 의뢰된 기관수로 평가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실적은 전년도 월평균진료비 심사결정금액 대비 환수결정사유별 환수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정도로 평가하고 있음.
- 기타징수금 징수실적은 목표징수율 대비 해당연도 금액징수율을 나눈 값으로 산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 － 보험급여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는 비계량적 평가로서 보험 급여업무와 관련되어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경우, 그 외 독창적인 업무를 통해 다 지역에 귀감이 되는 사업 등에서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비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있음.

#### □ 건강지원

- 건강지원 분야는 현재 건강검진, 의료이용지원, 그리고 노력도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건강검진의 실적 평가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1차 검진 목표 수검률 대비 해당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1차 검진 수검률로 하며, 의료이용지원은 검진결과 사후관리 실적으로 사후상담목표 건수 대비 사후상담건수에 80%를 배점하고, 만족도 점수의 성취도를 20%로 반영하고 있음.
  - － 합리적 의료이용제도 실적과 사례관리 상담실적 역시 목표 상담건수 대비 실제 상담 건수에 70%를 배정하고 만족도 성취도에 30%를 배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의료이용지원 업무에 대한 노력도는 업무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를 활용하고 있음.

## 나. 시사점

-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활용 또는 적용하고 있는 업무 평가와 실적기준은 매우 계량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질적 수준이나 고객 입장에서의 평가 도구 개발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 만족도 조사 역시 객관화된 조사나 기법 등이 적용된 것이 아닌 자체적인 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 그리고 공단 지사나 지역본부 내에서 가입자가 직접 기입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 건강검진 1차 수검률의 목표 달성정도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2차 검진율이나 수검 후 진단 질병에 따른 세부적인 만족도 또는 성과 달성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급여 관리측면에서 공급자의 부당이익 환수실적 등을 고려하는데, 질적 수준을 고려한 진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보험료 징수관리에서는 4대 사회보험 처리실적이나 연말정산 처리 실적을 평가척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공단 자체의 평가 기준으로만 적용이 가능한 도구이므로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나 서비스 질 개선 측면에서 활용가능한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평가 업무에서 공급자와의 계약 또는 구매력, 의약품 단가 협상이나 수가 협상 실적, 제도개선 실적 등도 필요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척도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 차원의 평가는 부재한데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위험정도를 보정하여 실제 건강개선이 이루어진 결과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궁극적으로는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건들의 지사별 또는 지역본부별 형평성이나 위험균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 조성을 각 평가 지표별로 마련해야 할 것임.
  - 공정한 경쟁조건 마련을 위한 가입자의 위험조정 또는 건강상태 보정 기술인데, 과거 조합방식에서 사용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주요외국의 건강보험 내 외부 경쟁 현황

#### 가. 대만

- 대만 역시 통합된 단일보험자 내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6개 지역본부로 나누어 예산절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경쟁방식의 도입의 전제 조건은 통합이라는 단일보험자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공정한 경쟁으로 지역본부별 경쟁이나 지사별 경쟁을 유도하기 이전에 지역별 인구, 연령, 성별 분포에 따라 공정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지역본부별로 결정되어 중앙본부에 보고되는 상황식을 따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복지부와 같은 위생서(DOH: Department of Health)에서 결정하고 있음.
  - 결정된 건강보험의 예산은 일부가 지역본부에 직접 분배되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통제하고 있음.
  - 지역별 성과평가는 지역본부의 편차(인구, 연령, 성별 분포 등)를 고려한 성과지표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무엇보다도 전년도



성과와 지역본부의 목표 달성 정도의 비교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대만에서 진료비 지불방식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총액예산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보험료 징수율, 체납율, 적자비율, 의료의 질 등이 반영되고 있음.

- 지역본부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 되는데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최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급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명예로 인식되기 때문에 직원 간 경쟁유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음.

## 나.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공정하고 규제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전체 재정의 55%이상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가입자를 위해 보다 많이 배정함으로써 소득재분배는 물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있음.

[그림 3] 네덜란드 보험자간 경쟁 개관



- 개별 보험사간 정액보험료 경쟁, 급여 차등화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이 높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배제를 금지하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보험사간 급여가 왜곡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있음.
- 경쟁 시스템으로 민간보험사는 재정 흑자 시 보험료 환급, 건강검진 바우처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자 시에는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게 되어, 다른 보험사와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 다른 경쟁의 축은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계약 또는 서비스 구매에서 나타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보험자는 네덜란드 내에 있는 양질의 공급자를 선별해서 계약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원하는 병원을 계약할 수 있어 공급자로 하여금 급여수가를 할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다보험자 운영방식에서는 적자 보험자의 파산 위험성에 대비하고, 전 국민의 소득재분배, 연대 등을 위해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이는 다보험자 방식에서 사전에 위험을 분산하여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각 보험자가 재정의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한 후 개별 보험자에게 재분배할 때는 가입자 중 위험요소 여부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식임.
- 초기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은 성별, 연령과 진료비 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배분하였으나, 보험수리 발달과 위험요소 등의 확대로 보다 정교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 －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중앙에 위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가입자(국민)의 성별, 연령, 질병 및 장애정도, 소득수준, 지역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이용가능성과 진료비 지출 예상액 등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공동기금을 가입자가 속해 있는 보험자에게 배분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40세 여성이면서 장애급여 수급자는 당뇨 환자 진단군에 속해 있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금액으로 판정된 1,231유로에 소득이 높아 책정된 1,033유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산정된 83유로, 지역에서 46유로, 처방약에 대한 진료비 수준으로 3,327유로 진단그룹에서 -113유로 총합계 5,577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보험료 납부로 보충될 금액이 -947유로 강제 공제금액 -155유로며 이를 통해 최종 공동기금에서 위험 조정금으로 재 배분될 예상금액은 4,475유로로 산정되는 것임.
- 또 다른 예시로 주어진 38세 정상적 남성의 경우는 건강상태 양호, 지역수준 쾌적, 질병위험 낮음 등의 이유로 공동기금에서 오히려 제공할 금액이 없고, 공제하게 되는 대상으로 산정되고 있음.
- 따라서, 보험자는 위험이 높은 가입자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며 오히려 이들 대상자의 질병이나 건강수준을 잘 관리하게 되면 배당금액을 절감할 수 있어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실제 개별 보험자들은 건강한 가입자를 선호하기 보다는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 가입자들을 가입시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위험조정프로그램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며, 사전에 위험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보험자가 제공받은 예상진료 금액을 절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까지 있게 되며, 정교한 위험조정 프로그램의 운영은 네덜란드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의 가장 큰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네덜란드 위험조정 프로그램의 실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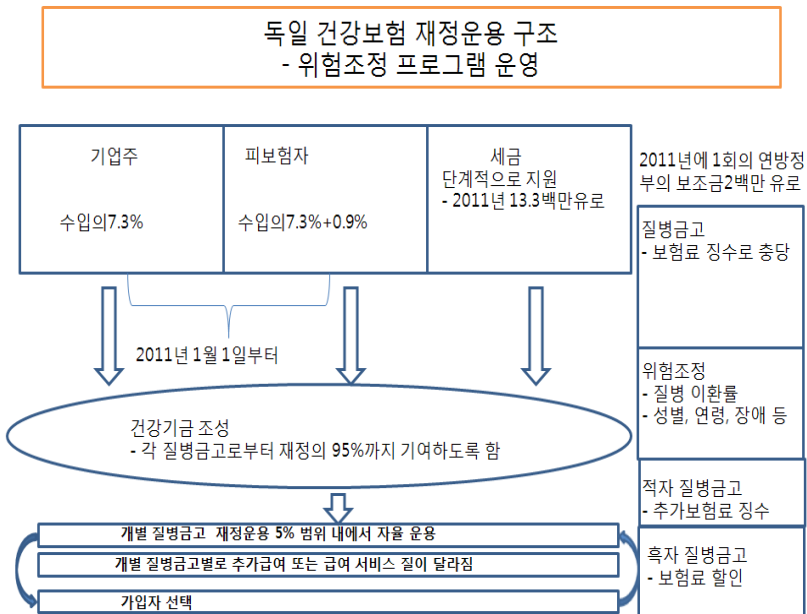
| 구 분                       | 40세 여성, 장애급여 수혜자<br>사회경제적 수준 낮음<br>도시 지역 거주<br>PCG-당뇨-1, DCG-none | 38세 남성, 정상 직업<br>사회경제적 수준 높음<br>쾌적한 거주지<br>PCG-none, DCG-none |
|---------------------------|-------------------------------------------------------------------|---------------------------------------------------------------|
| 성별/연령                     | 1,231                                                             | 980                                                           |
| 소득                        | 1,033                                                             | - 54                                                          |
| 사회경제적상태(SES)              | 83                                                                | - 98                                                          |
| 지역(region)                | 46                                                                | - 79                                                          |
| Pharma Cost Group(PCG)    | 3,327                                                             | -347                                                          |
| Diagnosis Cost Group(DCG) | - 113                                                             | - 113                                                         |
| 총 비용                      | 5,577                                                             | 299                                                           |
| 기본 보험료                    | - 947                                                             | - 947                                                         |
| Compulsory deduct         | - 155                                                             | -7                                                            |
| <b>위험조정 후 지불액</b>         | <b>4,475</b>                                                      | <b>- 655</b>                                                  |

## 다. 독일

- 독일의 경우 역시 2008년 국제 재정위기와 인구고령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당국은 질병금고 간 규제된 경쟁을 위해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보험료율을 동일화하는 혁신을 단행함.
- 독일은 2008년 217개 질병금고에서 2010년 169개 질병금고로 병합, 확대하여 위험분산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질병금고별로 개별적이던 보험료율을 15.5%로 통일 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재정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독일 질병금고는 추가보험료 명목으로 개별 보험자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가입자는 질병금고 선택권을 통해 추가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질병금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금고 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급여비를 절약하고, 관리하는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됨.

- 아래 그림은 독일 연방정부의 2009년도 회계자료를 재정의 흐름에 따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기업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조성된 기금을 95%수준에서 통합재정으로 합한 뒤 위험조정에 따라 재분배하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조세로 일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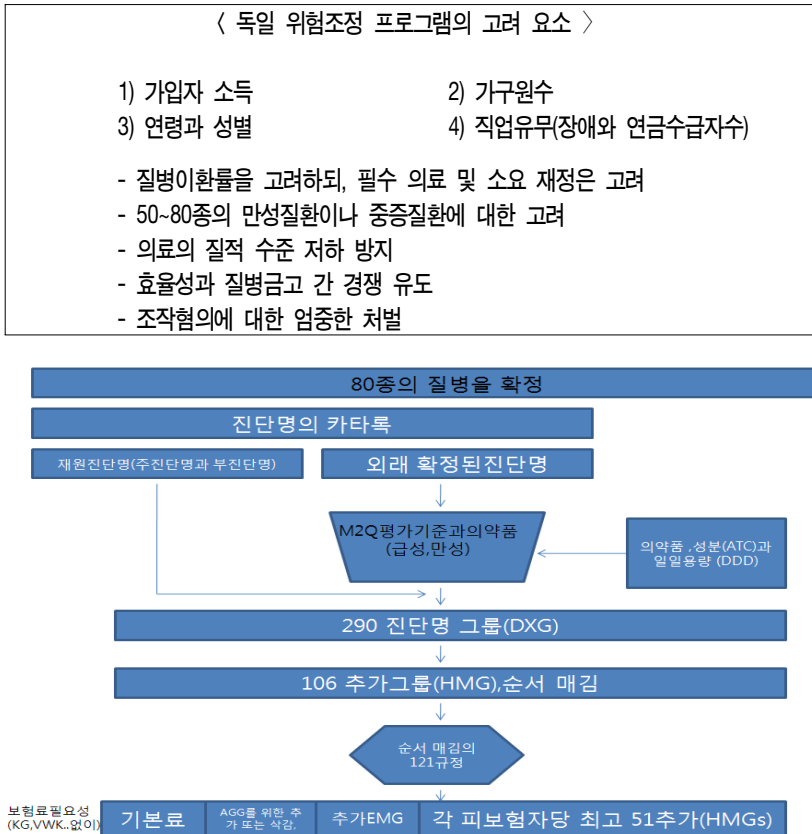
[그림 4] 독일 건강보험 재정운용 및 위험조정 프로그램 운영 구조



-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 질병금고는 재정운용을 잘 하여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가입자의 선택이 많아져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될 것이고, 가입자가 증가하여 더욱더 재정은 안정될 수 있으며, 재정운영 결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운영 흑자를 환급해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최대 25유로, 또는 월 8유로까지 지급하고 있음.

- 보건당국은 보험자들이 공급자와의 계약 측면에서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개별 질병금고는 병원이나 약국 등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질병금고는 추가급여나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가입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하고 있음.
- 종합하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질병금고를 선택하도록 하며, 질병금고는 공급자와의 계약이나 구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매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 독일 건강보험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95%까지 통합하여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 일차적으로 위험조정에 의해 배분받은 금액을 절약하고자 위험이 높은 가입자들에게 진료와 건강유지를 독려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5%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재정에 대해 절약하기 위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공급자와의 계약에 있어 우위의 구매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독일 위험조정프로그램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첫째, 가입자의 소득의 차이를 고려하고, 둘째, 가구원 수를 고려하며, 셋째,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끝으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장애인 또는 연금수령자 수가 고려대상이 되고 있음.

[그림 5] 독일 위험조정 고려 요소와 이환질병의 그룹의 적용방법



-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 일정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  
되, 이를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따라 재배분함으로써 사전에  
위험분산(ex-ante)을 시도하고 이를 개별 질병급고나 보험자가 맞추  
어서 가입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급자와의 계약에서도 이러한 재정운용 절감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큼.

## 라. 스웨덴

- 분권화를 통한 경쟁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스웨덴은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가운데, 공급자 간에 경쟁체계를 추진해오고 있음.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지역별 격차 감소와 더 나은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지역별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그 예로 정부기관 역할은 지역별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 간 연계망 구성을 통해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유도함.
  - 의료공급자의 선택은 19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되어왔으며 1991년에 연방회의에서 추진된 1차 의료 공급자 선택과 특정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이슈화되었고, 몇몇 지방의회는 선택의 옵션을 확대하였음.
  - 정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추가재정을 보장하고 환자에게는 다른 병원, 같은 지역 또는 환자거주지역외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음.
- 약국 관련된 경쟁 체계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합리적 의약품 사용(Rational use of pharmaceuticals)을 전제로 약제비 관리책임의 분권화(decentralized pharmaceutical budgets)를 시도함.
  - 주의회정부가 1차 의료지역단위나 1차 의료센터 또는 병원 단위로 예산을 책정하며, 이는 고정예산제 또는 통합예산제 형태로 도입됨.
  - 처방가이드라인은 County council 단위의 의약품위원회(pharmaceutical committee)가 일반적 질환에 대한 첫 치료약제 추천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추천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정부약제비 예산을 절감할 경우, 또는 처방 개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에 제공됨.



- 특히, 의약품시장에 민영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약국 독점제를 폐지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 첫 번째 단계로 국립스웨덴제약회사 소유의 50%가량을 민영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 선택된 두통제와 같은 일반의약품(OTC) 생산품의 판매를 약국외의 주유소, 기타 허가받은 시설 등에서 허용하는 것이었음.
- 이와 같은 개혁의 목적은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더 자유스런 구매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8개 영역의 465개 약품들이 2009년의 과정을 통해 민영화되었고, 추가적으로 150개 약품들이 민영화됨.

## 마. 시사점

- 다보험자방식과 단일보험자 방식이 모두 포함된 외국의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규제 속에서 제한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국민의 건강보장성을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분산기능을 통합하고 개별보험자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위험분산기능은 통합할지라도 내부경쟁체제는 유지시킴으로서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다보험자 방식이든 단일보험자 방식이든 제도의 큰 프레임은 보존하면서 내부적인 기능의 향상과 경쟁유도로 서비스의 질과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더불어, 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경쟁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보험자와 공급자간 서비스 구매에서 또 다시 관리된 경쟁을 도입하여 이중의 효율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당연계약

제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자가 자율적이며, 가입자를 대표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공급자와 수가 계약을 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자가 급여비 관리를 위해 가입자의 건강위해 행위를 규제하고,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법과 더불어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6. 내부경쟁 필요성 및 적용방안 모색

### 가. 내부경쟁방향 및 적용 방안 모색

#### □ 내부경쟁 방향

- 건강보험제도는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이 통합되어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단일보험자 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양한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약되어 서비스의 질 개선 노력과 효율적인 의료비지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사례를 보면 단일보험자 방식은 다보험자 방식처럼 경쟁상대가 부재하다는 것일 뿐, 비용절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혁신노력이 부재한 것은 아님.
  - 단일보험자 방식의 위험분산형태를 가지고 있는 NHS 방식의 국가들은 의료보장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화와 내부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지향적인 관리운영체계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현재 단일보험자 방식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집중화된 건강보험서비스 체계를 지역별 특성이나 가입자의 특성을 감안 적절한 분권화를 시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분권화 수준은 민영화나 탈집중화 보다는 권

위와 책임을 이전하는 이양과 위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분권화의 주체와 대상은 지역별로 구분하는 방안과 수행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 단일보험자방식에서 분권화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되며, 대상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양은 재원운용과 공급자 계약과 소유 등과 관련한 관리권한을 의미하며, 위임은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책임이 될 수 있음.
- 외국의 분권화 사례의 경우에서도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지만, 중앙은 가이드라인 설정과 지방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통해 전국의 수준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자 방식에서 국민들의 지역본부, 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 지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타지사와의 비교를 통한 서비스 요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즉, 환자선택권이 지역이나 지사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권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임.

#### □ 내부경쟁 적용방안

○ 단일보험자 방식인 국민건강보험체계 내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내부경쟁체계의 방향은 기업경쟁과 같이 시장경쟁에서 제시되는 외부경쟁을 목적으로 내부경쟁을 강조하기보다 경쟁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직내부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질병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를 배제하는 역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 지사별, 지역본부별로 다양한 진료비 관리기술, 인센티브 제공 전략을 개발하여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그 경쟁의 성과를 제공하는데 그 본래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보건의료나 교육 분야 등 공공정책분야에서 시장에서 무한경쟁은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서구 복지국가에서 도입한 경쟁방식인 관리된 경쟁 또는 규제된 경쟁방식은 완전 시장경쟁의 개념 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관리와 규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쟁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음.
- 관리된 경쟁 또는 규제된 경쟁이 지나친 시장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관료화된 보건의료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연대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질 개선을 추구하기에는 적합한 경쟁방법으로 보여짐.
  - － 2000년 다보험자가 가지는 위험분산의 한계, 재정불균형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보험자로 통합되었고 조합방식의 일련의 문제점을 극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방식의 경쟁조건을 위해서 조합방식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이나 회귀비용 등 따른 이점을 감안할 때 제도 자체를 조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나. 내부경쟁 적용모형 검토

### □ 분석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 지사별 목표급여비 설정의 기본적인 개념은 최인덕(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사별 특성을 고려한 지사별 가입자 1인당 평균 급여비를 추정하고, 이를 가입인구에 적용하여 지사별 총 목표급여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일반적인 회귀모형의 경우, 지역이 가지는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급여비 지출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사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급여비 추정을 위해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는 모형인 지리적 가중회귀분석(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활용함.

- 일반적으로 지역단위의 자료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이 흔히 사용되는데, 일반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되는 전통적 회귀분석은 관찰들간의 독립성과 오차의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을 가정하기 때문에 공간적 변이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음.
- 전통적 회귀분석에서는 표집 위치에 상관없이 관찰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종속변수의 관찰값과 추정값의 차이인 오차(errors)가 상호 독립적이며 분산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공간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표집된 사례일수록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공간적 이질성 또는 의존성이라는 하는 특성들이 존재하는 현상을 OLS 회귀모형으로 분석하게 되면 모수 추정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일반최소자승법(OLS)의 경우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연구대상지역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남을 가정하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지사 간 다양한 특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간적 변이가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 즉, 일반최소자승법(OLS)와 같은 기존의 통계적 모형들은 연구지역 전체에 걸쳐 평균적이며 전역적인 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체 연구대상 범위에 대해서 변수별로 하나의 계수(coefficient)만을 제시하므로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그 변수의 영향은 연구지역 전체에서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반면,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의 경우, 지역별로 각각 다른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변수들의 국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의 회귀분석에서 고려할 수 없는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표 2〉 전역적 통계량(OLS)과 국지적 통계량(GWR) 비교

| 전역적 통계 방법        | 국지적 통계 방법       |
|------------------|-----------------|
| 전체 연구지역의 자료요약    | 전역적 통계량의 국지적 분해 |
| 한 가지 결과만 도출      | 서로 다른 결과들이 도출   |
| 지도화할 수 없음        | 지도화할 수 있음       |
| GIS에 비적합         | GIS에 적합         |
| 비공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제약 | 공간적             |
| 공간적 동질성을 강조      | 공간적 이질성을 강조     |
| 규칙성 혹은 범칙탐색      | 예외 혹은 지역적 특징 탐색 |

○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의 핵심은 회귀계수를 상수가 아니라 위치의 함수로 간주하는 것으로 회귀계수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도록 모형화 하는 것인데 알려진 어떤 위치  $\mu$ 에 대해 종속변수  $y$ 와  $m$ 개의 독립변수  $x$ 가 있고, 회귀계수와 오차항이 각각  $\beta$ ,  $\epsilon$ 인 경우 회귀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음.

식)  $y_i(\mu_i) = \beta_{0i}(\mu_i) + \beta_{1i}(\mu_i)x_{1i} + \beta_{2i}(\mu_i)x_{2i} + \dots + \beta_{mi}(\mu_i)x_{mi} + \epsilon_i(\mu_i)$

$y_i$  = 지점  $i$ 에서의 종속변수( $i = 1, 2, \dots, n$ ),  $n$ 은 관측치

$x_{mi}$  = 지점  $i$ 에서의  $m$ 번째 독립변수

$\beta_{mi}$  = 모형에서 추정된 지점 $i$ 에서의  $m$ 번째 회귀계수(파라미터)

$\epsilon_i$  = 지점  $i$ 에서의 오차항

$\mu_i$  = 지점  $i$ 를 나타내는 공간좌표

- 일반적인 회귀모형과 다른 점은 각 항에 ( $\mu$ )가 붙는 것인데, 이는 모수의 추정이 주어진 위치  $\mu$ 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 위치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냄.

#### □ 분석자료

- 분석자료는 2009년을 기준으로 발췌된 자료이며, 연구분석의 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사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목표급여비를 추정하고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의 일반적 특성, 행정관리, 자격관리, 급여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의료자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해당 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인인구 비율, 여성인구 비율, 남성인구 비율, 지역가입자 비율 그리고 직장가입자 비율이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음.
  - 행정관리 부분은 해당지사가 관리하는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총직원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3급 이상 직원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4급 이하 직원수, 4급 이하 직원 인건비 비율 그리고 3급 이상 직원 인건비 비율로 구성하였음.
  - 자격관리는 1인당 건강보험료, 지역 장기체납자수 비율, 직장 장기체납자수 비율, 급여관리는 고액환자 비율, 건강관리는 1, 2차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를 이용함.
  - 의료자원은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총의료기관수, 지역 인구1,000명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공공의료기관수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약국수로 구성함.

〈표 3〉 분석자료의 구조

| 구분        | 변수                       | 설명                                                            | 비고    |
|-----------|--------------------------|---------------------------------------------------------------|-------|
| 지역의 일반 특성 | 시군구                      |                                                               | 독립 변수 |
|           | 지역본부                     |                                                               |       |
|           | 지사                       | 178개 지사                                                       |       |
|           | 노인인구 비율                  | 지사별 65세 이상 적용인구/지사별 적용인구                                      |       |
|           | 여성인구 비율                  | 지사별 여성 적용인구/지사별 적용인구                                          |       |
|           | 남성인구 비율                  | 지사별 남성 적용인구/지사별 적용인구                                          |       |
|           | 지역가입자 비율                 | 지사별 지역가입자/지사별 적용인구                                            |       |
|           | 직장가입자 비율                 | 지사별 직장가입자/지사별 적용인구                                            |       |
| 행정 관리     | 지역인구1,000명당 총직원수         | (지사별 총직원수/지사별 적용인구)×1000                                      |       |
|           | 지역인구1,000명당 3급 이상 직원수    | (지사별 3급 이상 직원수 /지사별 적용인구) ×1000                               |       |
|           | 지역인구1,000명당 4급 이하 직원수    | (지사별 4급 이하 직원수 /지사별 적용인구)×1000                                |       |
|           | 3급 이상 인건비 비율             | 지사별 3급 이상 인건비/지사별 전체 인건비                                      |       |
|           | 4급 이하 인건비 비율             | 지사별 4급 이하 인건비/지사별 전체 인건비                                      |       |
| 자격 관리     | 1인당 건강보험료                | 지사별 전체 보험료/지사별 적용인구                                           |       |
|           | 지역 장기 체납자수 비율            | 지사별 6개월 이상 지역체납자 /지사별 전체 지역 체납자                               |       |
|           | 직장 장기 체납자수 비율            | 지사별 6개월 이상 직장체납자 /지사별 전체 직장 체납자                               |       |
| 급여 관리     | 고액환자 비율                  | 지사별 500만원이상 고액급여비 지출자수 /지사별 적용인구                              |       |
| 건강 관리     | 건강검진 수검률(1차)             | 지사별 1차 건강검진자 /지사별 1차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       |
|           | 건강검진 수검률(2차)             | 지사별 2차 건강검진자 /지사별 2차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       |
| 의료 자원 분포  | 지역인구1,000명당 총 의료기관수      | (지사별 총의료기관수/지사별 적용인구)×1000<br>※ 약국 제외                         |       |
|           | 지역인구1,000명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 | (지사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 /지사별 적용인구) ×1000                            |       |
|           | 지역인구1,000명당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 | (지사별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 /지사별 적용인구) ×1000                            |       |
|           | 지역인구1,000명당 공공 의료기관수     | (지사별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관수/지사별 적용인구)×1000<br>※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
|           | 지역인구1,000명당 약국수          | (지사별 약국수/지사별 적용인구)×1000                                       |       |
| 1인당 급여비   |                          | 총급여비/전체 적용인구수                                                 | 종속 변수 |



## □ 분석결과

○ 내부경쟁 체제를 위한 지사별 목표급여비 산출을 위해, 지사별 특성 자료를 중심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지사별 목표급여비를 추정함.

—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했던 지역의 일반적 특성 5개, 행정관리 5개, 자격관리 3개, 급여관리 1개, 건강관리 2개, 의료자원 분포 4개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로 최종 4개의 변수(지사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당 총직원수, 직장 장기체납자수 비율, 2차 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지사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당 총의료기관수)가 채택됨.

—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에 따른 목표급여비는 지도상에 실제 총급여비와의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되었으며, 분석표를 통한 값으로도 제시함. 단, 분석표에서의 지사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표급여비값이 자료수급이 용이한 제한된 자료만으로서 추정함에 따라 익명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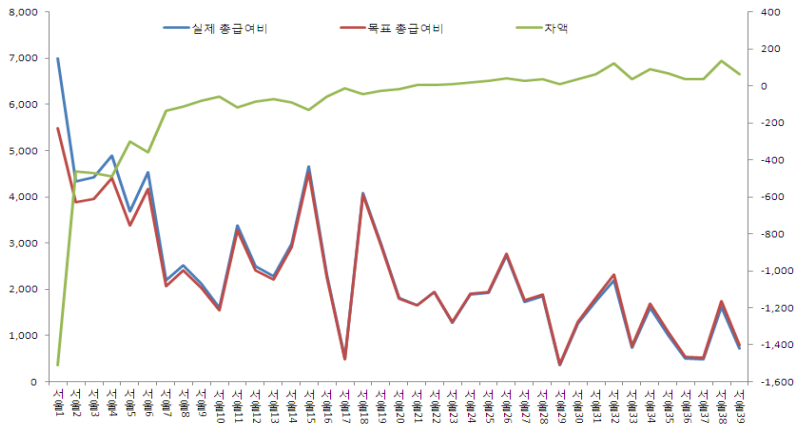
○ 서울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지역본부별 관할 지사들의 실제 급여비와 추정된 목표 급여비를 비교분석하면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인 서울1지사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는 702,514원이나 목표 급여비는 550,546원으로 1인당 연평균 151,967원의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총급여비로는 약 1,512억원의 급여비가 절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서울지역본부 전체로는 연간 3,743억원의 급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아래 그림은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별로 실제 연간 총급여비와 목표 연간 총급여비를 비교한 그래프로 실제 급여비와 목표 급여비의 차액이 “0” 이하일 경우는 본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직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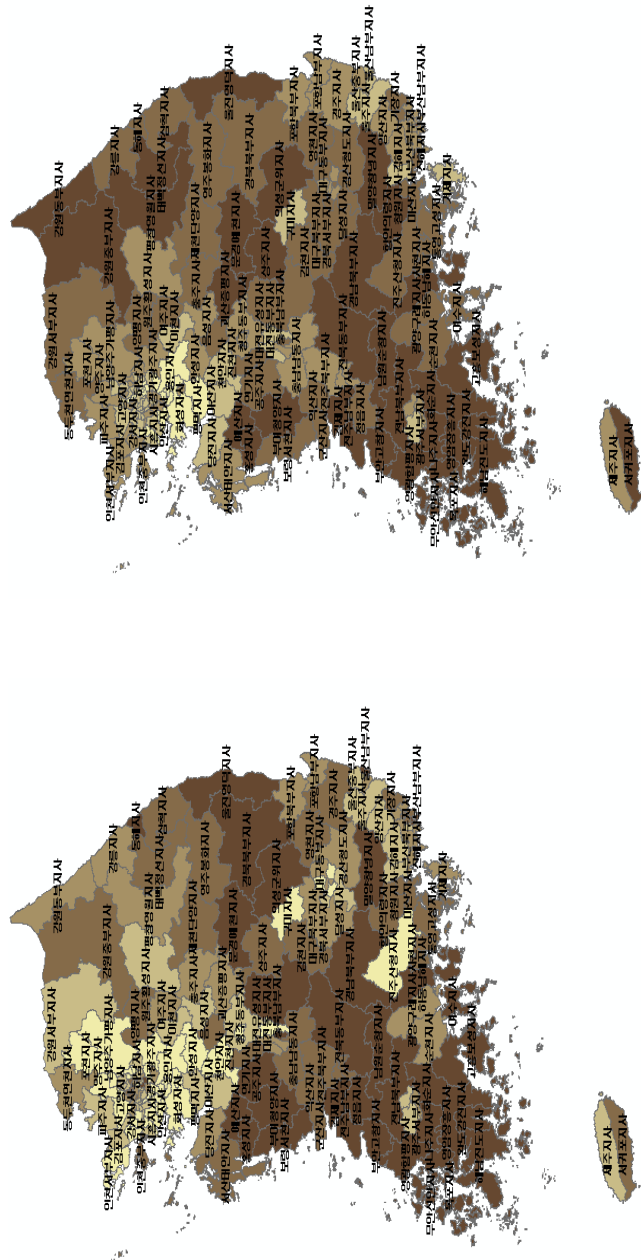
2차 건강검진을, 장기체납자 비율, 의료기관수 등)들의 개선노력을 통해 그 차액만큼 연 평균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나타냄.

[그림 6] 목표 총급여비 비교



-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인 부산1지사의 경우는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는 687,439원이나 목표 급여비는 596,94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간급여비로 환산할 경우, 그 차액은 355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 대구지역본부에 속한 지사 중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와 목표 급여비의 차이가 가장 큰 지사는 대구 1지사였으며 그 크기는 약 2 만7천원 정도로 나타남.
- 대전지역본부의 경우는 대전1지사가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와 목표진료비의 차이가 약 6만8천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인지역본부는 경인1지사의 차액이 약 4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광주1지사의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와 목표진료비 차이 약 14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 총 27개 중 7개를 제외한 20개의 지사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사특성을 반영한 내부경쟁제도의 도입에 따라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GIS를 이용한 지시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GWR 전체)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경우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이 가지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의 일반적 회귀모형들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적으로 이질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됨에 따라 지역 간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에서는 매우 적합한 통계적 접근방법론이라 생각됨.  
 —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가 급여비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추정된 목표급여비에 대한 해석의 정확도 및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목표급여비 추정에 있어서는 지사별로 네덜란드 사례에서와 같이 보건복지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지역본부별 혹은 지사별로 가입자(국민)의 성별, 연령, 질병 및 장애정도, 직업 유무, 소득수준, 지역 등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동기금을 가입자가 속해 있는 보험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선진국사례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자원 등을 감안한 질환별 지역 내 의료이용 자체 충족율 및 지역의 건강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목표급여비를 추정한다면 현재의 추정결과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며, 이를 이용한 내부경쟁 지표로서의 목표급여비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III.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선 지역본부별, 지사별 진료비 편차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관리측면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한 내부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둘째, 내부경쟁의 방법은 완전시장경쟁보다는 관리된 또는 규제된

조건하에서 경쟁을 의미하며, 단일보험자내에서 다보험자의 진료비 효율화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 진료비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체계 운영방법과 다보험자 방식의 국가에서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위험조정프로그램의 적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됨.

- － 내부경쟁 적용방안으로는 자료를 보정하여 진료비의 지사 간 차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목표진료비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먼저 내부경쟁방안과 관련해서 언급하면

-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로 통합하면서 사후적 위험분산 방식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분산방식에서 소득 재분배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재정이 전체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나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 따라서 통합방식의 단일 보험자의 위험분산 효과는 극대화하되 단일보험자이기 때문에 유도할 수 없는 지역 간, 지사별 경쟁시스템을 다보험자 방식의 사전적 위험분산 기전으로부터 차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현행 단일보험자 방식에서도 재정을 전국단위로 배분하되, 사전적으로 위험분산 방식의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응용하면 적자 재정을 사후에 다시 배분하더라도 그 책임에 따라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평가를 통해 공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로 내부경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리 운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을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 최병호(2007)는 향후 건강보장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건강보장재정 보호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원이 모두 요구받게 될 중요한 과제로 예상하고 있음.
- 최병호(2007)는 건강보장 집행체계 개편방안을 첫째, 공단과 심평원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각 조직의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와 가입자 건강관리 기능 전환과 건강보장정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심사평가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심사와 질 평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둘째로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가칭 ‘건강보험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인데 건강보험관리원은 가입자의 건강관리, 진료비심사지급, 건강보장정책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에 심평원이 담당하던 평가 기능은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평가전문기관(가칭 ‘의료평가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임. 건강보험관리원과 의료평가원 간의 의료정보 공유와 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건강보험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제안에 대해 최병호(2007)의 주장은 지불보상제도의 변화를 선행과제로 보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 기능이 축소되고 질병의 사전예방 또는 목표진료비 제도의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지출합리화를 주장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부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목표진료비 설정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험자의 역할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방안이 적정하지 다

양한 대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음.

- 끝으로 선진국 사례에서 시사점으로 언급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보험자가 공급자와의 계약에서 구매력을 행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보험자 방식에서는 공급자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나 단일보험자에서는 다소 공급자와의 경쟁유도 또는 구매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지만 보다 발전적이고 강력한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더불어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지사별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은 객관적 지표 설정이나 가입자 입장에서의 만족도나 서비스 질적 향상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의 활용, 목표진료비의 적용 등을 통해 보험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별 경쟁체계가 도입된다면 자구적으로 진료비 절감 노력을 지사별 또는 지역본부별로 추구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중앙에서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별, 지사별로 아래에서부터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으로 보여짐.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분권화와 개별 지사나 지역본부의 동기유발 등의 차원에서도 스스로 진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방법을 고안하고, 평가척도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임.

- 이상의 결론과 정책제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제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우선 관리운영측면에서의 장애요인임.

- 관리운영 측면에서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과거 20

여년전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 시에 설계한 업무 설계에 따라 구성된 인력배치와 업무분배는 전산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된 시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함. 효율적 조직구조로 가기 위해서 업무를 재설계하고, 필수 인원 이외의 인력을 위한 업무 개발 또는 급여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분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다음으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보험료 징수업무가 효율화 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중심의 정보 집중과 4대 사회보험의 관리업무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복지부에서는 관장자로서 향후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징수업무와 연계하여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임. 이는 앞서 공단의 업무재설계와 관리운영 효율화와의 연계되는 사안이지만 보다 거시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항임.

○ 법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요인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먼저, 관장자인 보건복지부, 실행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관계정립이 필요함.

- 관장자인 복지부와 의 입장차이 때문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법적 규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사간 경쟁체계도입과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음. 외국의 사례처럼, 보험자는 관리 및 재정운영 방식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정범위 내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짐.

- 최인덕(2011)은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관장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추가될 것과 동법령 제16조의 정관내용에서 재정관리와 보험급여 관리 항목이 삽입 그리고 제50조에서 급여 확인 조항을 급여의 확인 및 관리 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16조



의 개정은 분권화를 통한 지역본부와 지사의 재정관리 측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급여확인 및 관리는 지역본부와 지사의 업무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전제조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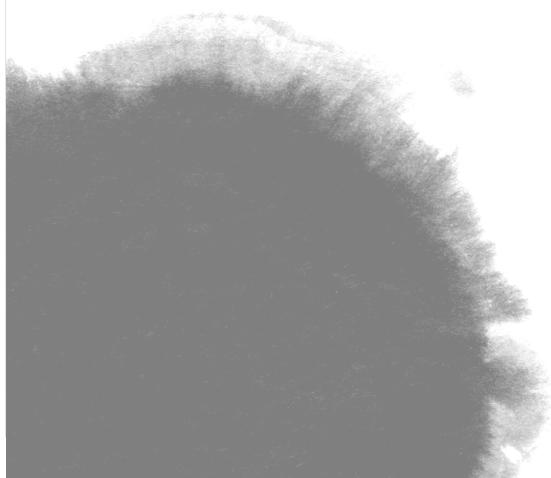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 도입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 자료 이용의 한계로 인한 문제도 제기 될 수 있지만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경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요용어: Regulated competition, NHI medical expenditure efficiency, Risk assessment



# 1장

서론





# 제1장 서론

##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이후, 2000년의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의 조직통합, 2003년 재정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다보험자 방식에서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건강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목적인 위험분산(Risk pooling) 기능과 사회연대성(social solidarity)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과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관리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재정은 2001년~2002년과 2009년~2010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욕구 확대 등 건강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효율적인 의료비지출관리 방안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의 변화는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체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1) 김진현, 2007, “건강보험 관리운영조직의 평가와 발전방향”, 이상외, 2006,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개념정립과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최인덕, 2008, “의료보험통합의 위험분산 효과분석”을 참조하기 바람.

경쟁상대가 없는 단일 보험자 방식인 현행 건강보험 관리체제는 하나의 보험자로 인해 가입자가 보험자를 선택할 수 없어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있다. 또한 단일 보험자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가입자를 위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보험자방식에 대한 다른 비판은 경쟁 메커니즘 부재로 관리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거대한 단일 조직에 따른 관료화로 인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효율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Anderson and Hussey, 2004). 이러한 비판들은 기존 조합방식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조합방식의 장점인 경쟁체계의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들에서도 제기된다(이규식, 2008, 사공 진, 2007). 이들의 주장은 단일보험자 방식은 다 보험자 방식과 달리 경쟁을 통한 보험료인하, 급여서비스 개선, 행정편의 제공, 보험자의 치열한 가입자, 공급자 관리 노력 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규식, 2008).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 단일보험자로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그리고 약 12,000여명의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sup>2)</sup>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자격관리를 전국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주 지역 또는 특정지역 지사 소속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급여를 아껴서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지사별 차별화와 특성화를 할 여지는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178개 지사에서는 가입자인 국민이 어느 병원을 가든, 무리한 진료나 의료쇼핑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2) 2012년 현재 12,335명의 임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직 8,181명, 건강직 1,530명, 요양직 2,329명, 전산 기술, 연구 및 기능직을 합한 288명이 근무하고 있음(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 자료,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DA0203/](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_WBDDA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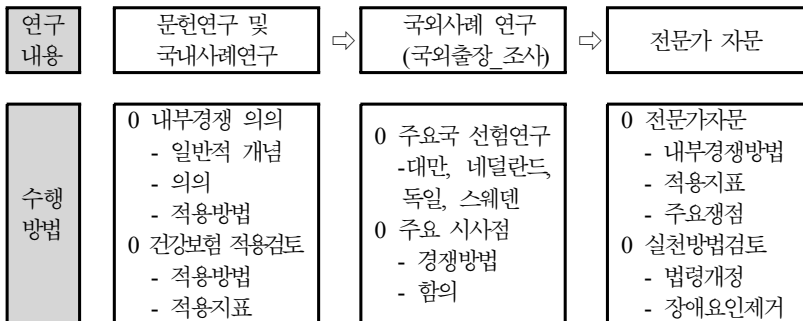
부재하고, 공급자 역시 이를 남용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강보험 내부경쟁을 통해 재정 지출 관리 측면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제2절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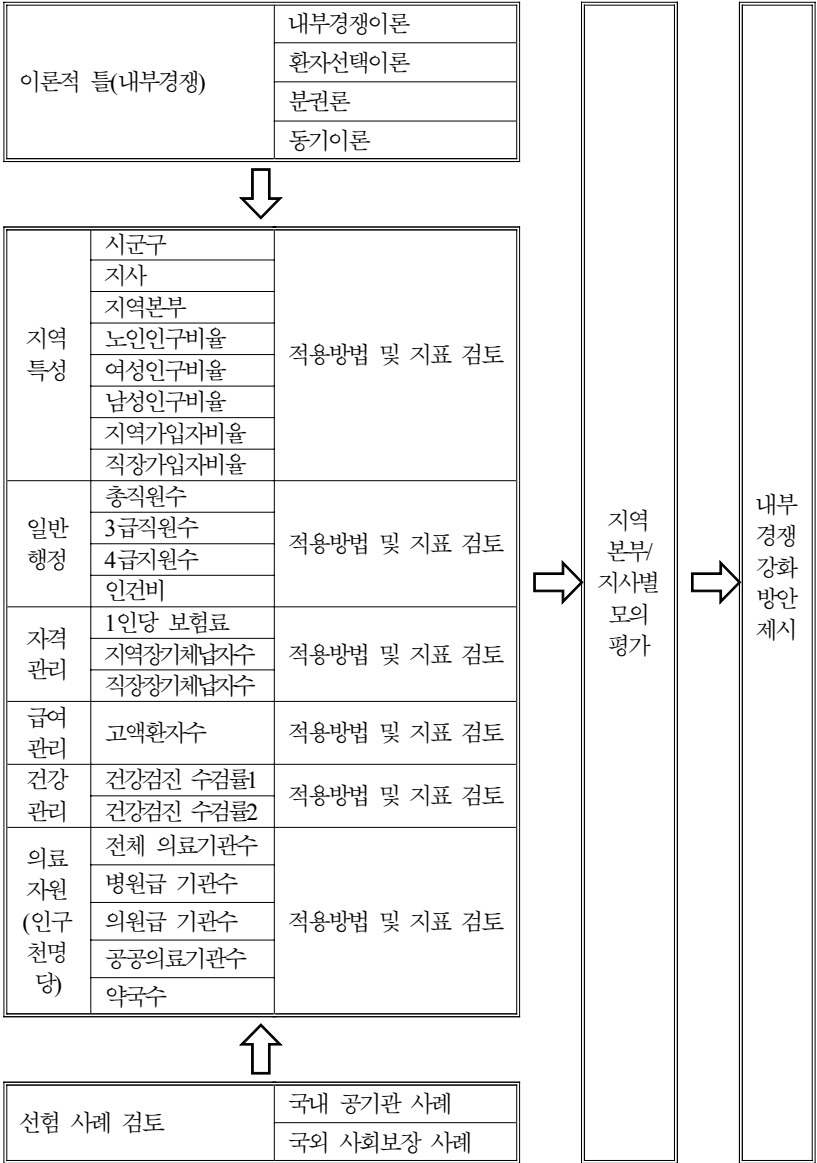
연구방법은 먼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인 내부 경쟁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연구 및 국외출장을 통해 주요 외국국가들의 내부경쟁사례와 국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들의 내부경쟁사례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다음으로 문헌고찰 및 주요외국의 내부 경쟁사례분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급여비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부경쟁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문에서는 내부 경쟁 도입방안과 내부경쟁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틀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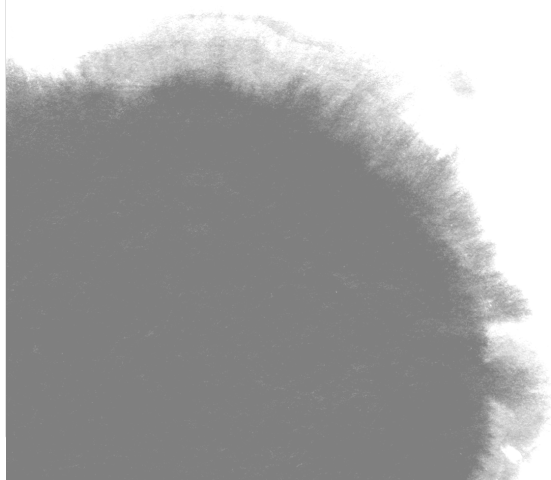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분석틀





# 2장

## 내부경쟁 이론 고찰 및 시사점





## 제2장 내부경쟁 이론 고찰 및 시사점

### 제1 절 내부경쟁 이론

본 절에서는 내부경쟁과 관련된 4가지 측면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먼저 내부경쟁에 대한 일반이론으로서 기업의 경영전략차원에서 내부경쟁이 가지는 의의와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분권화이론이다. 분권화는 절대적인 중앙집권에 반해 지방이나 지역, 또는 분야별 권한이 행이나 재정의 분화를 통해 지역중심의 자율적인 발전과 재정책임을 유도하는 이론으로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환자선택에 따른 이론적 접근이다. 조직통합이전 조합방식의 건강보험 관리운영 방식에서의 조합선택권에 대한 접근을 통해 내부경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과거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관리운영 방식이 개선되면서 조합에 대한 환자선택권이 지역본부 또는 지사별 경쟁을 통해 어떻게 재확립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끝으로 조직 또는 인적자원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도입 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을 통해 경쟁의 가치와 방법 적용의 기초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이론들이 경쟁이나 내부경쟁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작동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체계라는 특수한 공공의 영역에서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이후 제시되는 이론적 틀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공공기관 경영

이나 사회보장체계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 1. 일반적 이론

내부경쟁이란 용어는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개발,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내 부서나 팀간에 경쟁을 유도 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경영전략에서 사용되어 왔다. 내부경쟁의 목적은 조직이나 제도 내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나 부서가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이나 제도 내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개발과 외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자원의 중복투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조직 분열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Brikshaw(2001)은 적절한 통제하의 내부경쟁으로 획득 가능한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내부경쟁은 조직내 유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바구니에 여러 개의 달걀을 넣는 것처럼 경직된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교하게 통제되는 내부경쟁은 앞서 서술한 것처럼 불필요한 경쟁방법이나 지나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경쟁에 필요한 유연성과 활동적인 실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경영계획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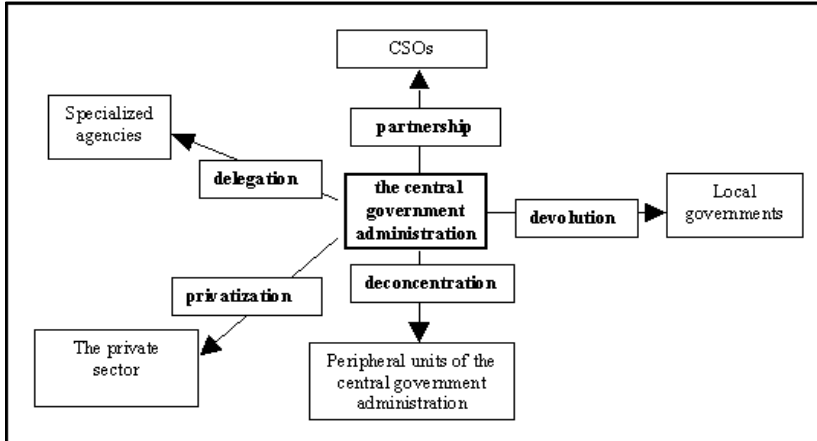
둘째로 내부경쟁은 현상유지(The status quo)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이 있다. 내부경쟁은 조직운영이나 기업경영에서 근시안적인 경영전략에 대한 교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경쟁은 외부에 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유출할 위험을 낮추어주고, 시장을 통한 외부경쟁이나 경쟁자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보안이나 경영특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한다.

## 2. 분권화 이론

분권화의 의미는 관리운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상위조직에서 하위조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분권화의 형태는 탈집중화(deconcentration), 이양(devolution), 위임(delegation), 민영화(privatization) 등이다. 탈집중화는 행정적 수준의 권한과 책임이전을, 이양은 권위의 이전을, 위임은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영화는 행위 주체가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Rondinelli, 1983).

Bankauskaite & Saltman(2007)은 분권화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지방정부나 하부조직에 비용의식을 부각하고, 공급자와 직접계약을 유도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하부조직에 의해 효율성 증진이 보다 확고해 질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지역별 또는 하부조직간 형평성을 증진시켜 효과적 재정관리 또는 지출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분권화는 하부조직의 재원조성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단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분권화가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재원조성의 책임을 하부조직이 가질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위험분산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Bankauskaite & Saltman, 2007;15)

[그림 2-1] 분권화 형태



자료: <http://www.fao.org/docrep/005/y2006e/y2006e05.htm>.

### 3. 환자선택 이론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측면은 영국의 NHS 체계내에서 출발하였다. 국민들은 NHS 병원을 선택함으로써 병원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2008년 런던정경대(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선택권 부여는 실제 병원의 경쟁을 통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은 의료시장 내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회피를 유발하는 경쟁을 제한하고 서비스의 질을 증가시키는 경쟁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the Guardian, 2012, 2, 20일자).

건강보장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우선 환자와 일반 대중의 건강보호라는 건강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

이 당연하다.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건강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면 건강보장으로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소극적인 혹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더 적극적인 측면은 건강보장 재원이 가치 있게 쓰여야 한다는 점으로, 한정된 자원으로서 건강보장 재원은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야 하며, 이때의 효과는 질과 연관된다는 것이다(김창엽, 2009).

보건의료는 다른 재화와 달리 서비스의 가격이나 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제공된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제공자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쳐, 소비자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적정 수준 이하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서비스와 제공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해석할 수 있으면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제공자의 질 향상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제공은 소비자가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을 촉진하여 제공자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고, 제공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지침 역할로 작용하게 된다. 제공자로서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질을 의식하고 질 향상의 압력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정보를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경쟁의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했을 때, 전국 의사들의 75%가 항생제 처방을 줄인 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즉, 공개하는 사실 만으로도 의료기관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민인순, 2011).

#### 4. 동기이론

동기이론은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론(content theories)과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에 대해 인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process theori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이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와 이론은 Maslow(1968)의 욕구위계이론, Alderfer(1972)의 ERG 이론, Herzberg(1966)의 동기위생이론(motivator hygiene theory), McClelland(1961)의 네 가지 획득되는 이론 등이 있다(황성철 외, 2011:102~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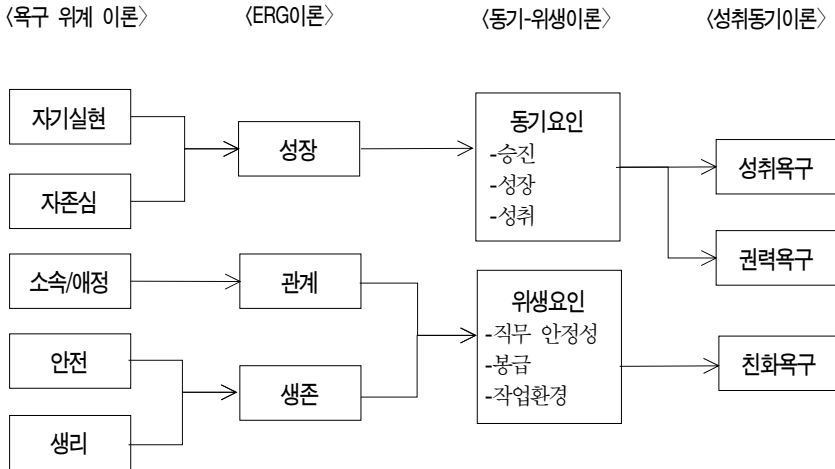
Maslow의 욕구위계이론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자아실현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욕구충족은 동기를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조직이나 개인의 미시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동기 부여의 설명이론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과정이론은 조직이나 개인이 어떻게 동기화되어 역동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동기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는 다시 Adams(1963)의 형평성이론과 Vroom(1964)의 기대이론,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등이 있으며, 특히 Adams의 형평성이론은 조직이나 개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결과에 대해 보상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즉, 보상의 정도나 결과에 대한 인지 과정에서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의 형평성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불형평적인 보상이나 결과에 따라 노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동기부여에 핵심으로 보는 이론이다.

Vroom의 기대이론 역시 과업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의 보상이나 결과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이익이나 결과의 가치가 기대하는 바에 충족되는가 여부에 따라 동기가 부여된다는 주장이다.



[그림 2-2] 욕구이론과 동기-위생이론 개괄



자료: 황성철 외 『사회복지행정론』, 2011에서 표로 재구성.

사회복지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결과나 목표달성에 대한 가치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직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보여진다.

## 5. 시사점

내부 경쟁관련 이론고찰을 통해 내부경쟁에 필요한 주요 선결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본적으로 내부경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을 동반한 분권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분권화된 각 조직 또는 지사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 조직의 효율성증대와 각 조직 간 목표설정 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한 권한과 책임을 통해 각 조직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이 노력의 결과는 소비자들의 선택과 선호를 유도할 수 있

을 것이다. 내부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을 촉진하게 되면 제공자 사이의 경쟁이 강화되게 된다. 제공자로서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의 질을 의식하고 서비스 질 향상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과 노력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내부경쟁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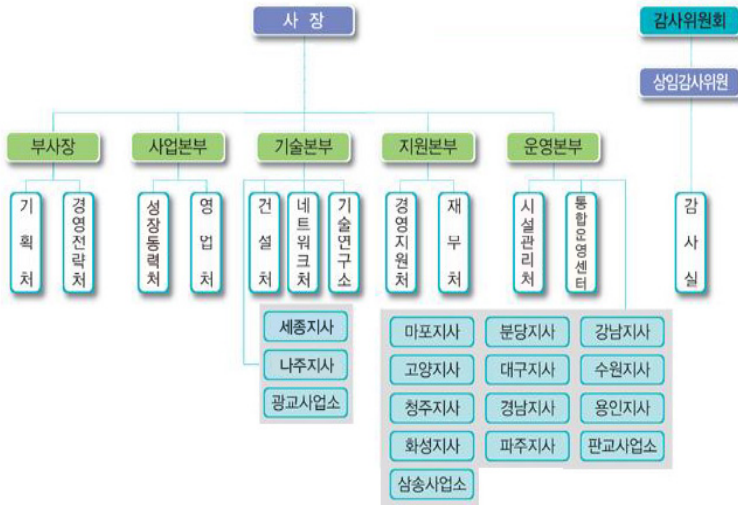
아래의 국내 내부경쟁 사례들은 이처럼 내부경쟁체제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 뿐 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 제2절 국내 내부경쟁 사례분석

### 1.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8년부터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모토로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구축을 시도해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 전략은 우선 기존 5본부 13처 40팀 14지사 57팀에서 3본부 11처 36팀 13지사 54팀으로 개편하면서 조직을 슬림화했고, 정원도 조정함으로써 정원초과 현원은 신규사업부문에 배치하였다(신선경, 2010). 내부경쟁유도를 위해 2006년도부터 사내직위공모와 성과관리를 통해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지사별 목표 영업이익달성도, 원가절감 제안 실적 등 내부경쟁을 유도해 성과보상을 차등 실시하고 있다.

[그림 2-3]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직도



자료: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직안내(<http://www.kdhc.co.kr>), 2012년 현재.

## 2.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전환이후 2006년 조직개편과 권한의 하부이양, 체계적인 원가절감 등을 통해 조직개편과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사장과 팀장에 대한 공모제와 내부승진이라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권한 위임을 위해서 인사권을 지방 본부 및 지사로 이관하고 책임경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지사에는 인사혜택을 부여하였고, 상여급에 대한 차이(170%)를 두어 성과에 따른 차등적인 책임과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직운영에 활력을 주어 조직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철도연구원, 2007).

〈표 2-1〉 대외 인정 성과

|      | 고객만족 부문                                                                                                                                                                       |
|------|-------------------------------------------------------------------------------------------------------------------------------------------------------------------------------|
| 2011 | -콜센터 서비스 ‘11년 KS(Koran Industrial Standard) 서비스 인증 획득<br>*11, 12월 한국표준협회(KSA) 콜센터 서비스 부문<br>-한국소비자의 날 소비자 중심 경영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공정거래위원회)<br>-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 획득(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 2010 | -공기업고객만족도(PCSI) 최그 등급달성(기획재정부)<br>-정보공개운영실태 우수기관 선정(국토해양부)<br>-제 3회 「국민신문고 대상」 우수기관 선정(국민권익위원회)                                                                               |
| 2009 | -공기업 최초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CCMS) 인증 획득(공정거래위원회)<br>-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KSQI) 4년 연속 1위 기업선정(한국능률협회)<br>-정보공개운영실태 최우수기관 선정(국토해양부)                                                           |
| 2008 | -콜센터 서비스품질지수(KSQI) 3년 연속 1위 기업선정(한국능률협회)<br>-메세나 대회 창의상(한국메세나협회, 매일경제)                                                                                                        |

자료: 한국철도연구원,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과 기업가치」, 2007.

최근에는 KTX 노선에 지역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KTX 민영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사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경쟁은 극히 제한적이고,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성희, 2012). 철도사업 민영화 경쟁체제의 핵심은 지역별로 철도의 운영자를 두어 복수의 운영자로 하여금 공동운영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철도공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운임비 절감과 시설투자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영화 논의는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3. 시사점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권한위임을 통해 지사나 지역본부에 자율권을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경쟁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기획과 실행할 수 있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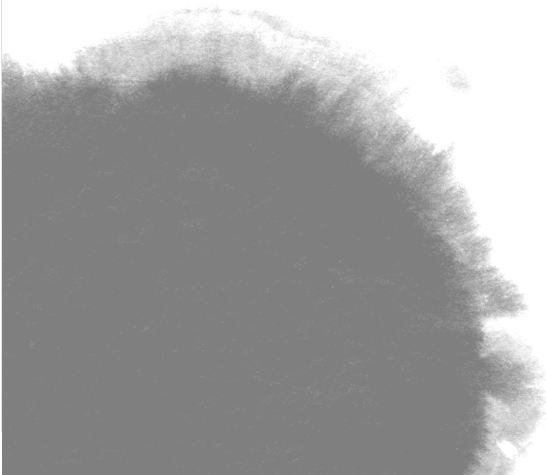
적 장치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중앙에서는 지사나 지역본부에 대한 개입보다는 평가자나 지원자의 역할로서 공정한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평가항목과 개선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과 지사와 지역본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이다. 내부경쟁의 효과가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더불어 적절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평가항목은 규제된 내부경쟁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평가항목 구성을 통해 전체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함으로써 하부조직의 경영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인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상을 통해서 경쟁체제를 유지함과 더불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소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적절한 보상을 한 조직의 경우, 내부경쟁체계 도입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조직 구성원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3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경쟁 현황 및 시사점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경쟁 현황 및 시사점

### 제1 절 보험자 내부경쟁 현황<sup>3)</sup>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중심의 평가기준을 설정 적용하고 있다. 징수영역, 급여영역 등의 각 분야에서 추진성과와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달성 중심의 업무보다는 대고객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 1. 자격징수

자격징수 영역의 내부경쟁항목은 4대사회보험 처리실적,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 지역보험료 징수실적, 직장보험료 징수실적, 체납전담파트 징수실적, 소득추소탈루 통보실적, 자격징수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4대사회보험 처리실적은 접수된 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안이다. 먼저 기간내에 처리된 경우에서 처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처리된 건수를 제외한다. 하지만, 처리기간 경과 일

---

3) 본보고서에서 인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경쟁관련 지표는 2009년도기준이며 관련 구체적인 지표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람. 부록에는 지역본부 평가지표와 지사평가지표로 구분되어 있음.

수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함으로써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은 정산대상자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율을 정해진 기간내에 달성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전체 정산대상자인 근로자와 개인대표자의 직전연도 처리건수에서 처리기한내 처리건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최소 달성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보험료 징수실적은当年징수율에 가중치를 0.3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률에는 가중치를 0.7로 부여하여 평가하는 것이다.当年징수율과 목표달성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eft[ \frac{\text{당년도 징수율}}{\text{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 (100 - \text{최근 3년간 전체평균징수율}) \times 1.5\%} \right] \times 100$$

직장보험료 징수실적은 지역보험료 징수실적과 유사하게当年징수율과 목표달성률의 합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当年징수율과 목표달성률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当年징수율의 경우 사업장 크기에 따라 가중치에 차등을 두므로써 징수가 어려운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업무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목표달성률 계산수식은 아래와 같다.当年징수율은  $\{(50\text{인 미만 징수율} \times 70) + (50\text{인 이상 징수율} \times 30)\} \times 100$ , 목표 달성률은 아래 수식과 같다.

$$\left[ \frac{\text{당년도 징수율}}{\text{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 (100 - \text{최근 3년간 전체평균징수율}) \times 15\%} \right] \times 100$$

채납전담파트 징수실적은 채납부분의 징수실적은 특별관리부분의 목표치 달성률과 공매목표치 달성률을 합산하여 측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

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특별관리부분의 달성률에 공매부분의 달성률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산술식은 각 분야 모두 목표금액 대비 달성도에다가 특별관리분야는 가중치 0.6을, 공매분야에는 0.4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특별관리목표금액은 특별관리 대상금액에 목표징수를 50%를 곱하고 공매목표건수는 특별관리 대상세대에 공매목표율 3%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결과 값의 인정범위는 가중치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서 성과위주의 업무진행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소득축소탈루 통보실적은 각 지역별 목표건수 대비 심사위원회 상정 후 승인된 국세청 통보건수로 한다. 각 지역별 목표건수는 가입자 수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자격징수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는 지역본부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본부에 비하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전년에 비해 당해 연도의 성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그 외 지역본부만의 독창적이거나 타 지역본부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선정하여 비계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 보험급여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실적은 전체 통보건수 중에 특정기간(45일 이내)에 환급건과 특정기간이후의 환급건의 가중치를 달리하여 실적률을 측정 한후,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비율을 제외함으로서 지급률이 향상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불능 건(사망, 출국 등)중에서 수령이 거부된 건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실적은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실적”과 같은 산정식을 택하고 있다. 먼저 전체 통보건수 중에 특정기간(45일 이내)에

처리된 건과 특정기간이후에 처리된 건에 대해 가중치를 달리하여 합산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전년도에 처리하지 못한 비율을 감함으로서 환급율이 향상된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지급불능 건 중에 수령 거부된 건은 제외하고 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실적은 설정된 관할지사별 목표치 대비 실제 의뢰된 기관수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관할지사별 목표치는 거리에 따라 현지조사 기관을 설정한다. 의뢰기관수는 본부 심의결과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수이다.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실적은 전년도 월평균진료비 심사결정금액 대비 환수결정사유별 환수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정도로 평가한다. 환수결정사유별 환수결정금액은 4종류로 (1)병원급 선정 후 환수 결정전, (2)의원급 선정 후 환수 결정전, (3)전산검점, (4)현지조사의뢰<sup>4)</sup>에 의한 환수실적 및 참여실적으로 한다. 이중 (1)병원급 선정 후 환수결정건에 대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2)의원급 선정 후 환수결정건은 (1)의 가중치보다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3)과 (4)항목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모수가 되는 전년도 월평균 진료비 심사결정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다.

기타징수금 징수실적은 목표징수율 대비 해당연도 금액징수율을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금액징수율은 당해연도 총고지 금액 중 징수된 금액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목표징수율은 최근 5년간 금액징수율 중 최고연도

4) 현지조사 의뢰 및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반영 기준임.

- 현지조사 직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부당확인금액 중 요양기관별로 지사 환수목표액의 30%까지 실적반영.
- 현지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소속지사에 현지조사 참여 월별로 지사환수 목표액의 10% 실적반영.
- 현지실사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표방과목별 전년도 평균 부당확인금액을 요양기관별로 지사 환수목표액의 30%까지 실적반영.
- 현지실사 의뢰기관 중 미실시기관은 표방과목별 전년도 평균부당확인금액의 90%를 요양기관별로 지사 환수목표액의 30%까지 실적반영.

징수율과 최저연도 징수율을 제외한 3개년금액징수율의 평균값에 2.5%를 곱한 값으로 하여 좀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목표치산정식을 설정하고 있다. 평가 시 감사원과 보건복지부 실사관련 고지 건이나 대형사고나 전염병 등으로 인한 대량고지건 중 장기간 징수가 어려운 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보험급여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는 비계량적 평가로서 보험급여업무와 관련되어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경우, 그 외 독창적인 업무를 통해 다 지역에 귀감이 되는 사업 등에서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비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 3. 건강지원

건강지원 분야는 현재 건강검진, 의료이용지원, 그리고 노력도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강검진의 실적 평가는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1차 검진 목표 수검률 대비 해당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1차 검진 수검률로 하며, 암검진율은 역시 목표수검률 대비 실제 수검률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영유아 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 역시 목표 수검률 대비 실제 수검률로 평가 된다.

둘째, 의료이용지원은 검진결과 사후관리 실적으로 사후상담목표건수 대비 사후상담건수에 80%를 배점하고, 만족도 점수의 성취도를 20%로 반영하고 있다. 합리적 의료이용제도 실적과 사례관리 상담실적 역시 목표 상담건수 대비 실제 상담 건수에 70%를 배정하고 만족도 성취도에 30%를 배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의료이용지원 업무에 대한 노력도는 업무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 4. 노인장기요양 부분

자원관리 부분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실적률을 평가하여 반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을 참조하기 바란다.

인정관리 측면에서는 법정기한내 등급판정 처리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노력도는 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기관의 정보게시율을 통한 기관관리와 인정등급 판정에서의 효과적이고 기한 내 평가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신속 정확한 판정과 서비스 전달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시사점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활용 또는 적용하고 있는 업무 평가와 실적기준은 매우 계량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질적 수준이나 고객입장에서의 평가 도구 개발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 조사 역시 객관화된 조사나 기법 등이 적용된 것이 아닌 자체적인 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 그리고 공단 지사나 지역본부내에서 가입자가 직접 기입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또한, 건강검진 1차 수검률의 목표 달성정도만을 반영하고 있는데 2차 검진율이나 수검 후 진단 질병에 따른 세부적인 만족도 또는 성과달성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급여 관리측면에서 공급자의 부당이익 환수실적 등을 고려하는데, 질적 수준을 고려한 진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징수관리에서는 4대 사회보험 처리실적이나 연말정산 처리실적을 평가척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와는 무

관하고 오히려 공단 자체의 평가 기준으로만 적용이 가능한 도구이므로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나 서비스 질개선 측면에서 활용가능한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업무에서 공급자와의 계약 또는 구매력, 의약품 단가 협상이나 수가 협상 실적, 제도개선 실적 등도 필요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척도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위험정도를 보정하여 실제 건강개선이 이루어진 결과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재정관리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성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건들의 지사별 또는 지역본부별 형평성이나 위험균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 조성을 각 평가 지표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조건 마련을 위한 가입자의 위험조정 또는 건강상태 보정 기술인데, 과거 조합방식에서 사용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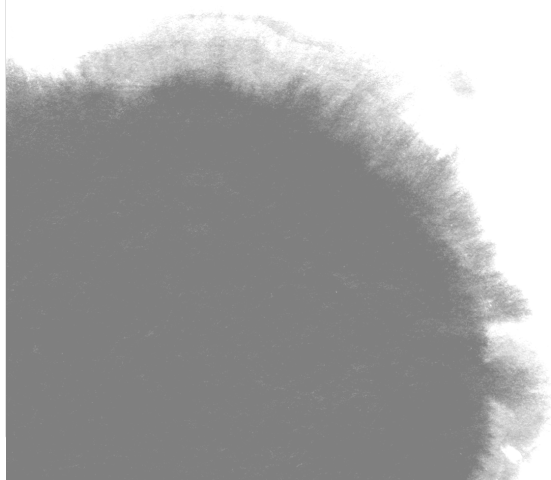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5) 자세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 운영과 시사점은 주요국의 사례에서 참조하기 바람.





# 4장

## 주요 외국의 건강보험 내·외부 경쟁 현황





## 제4장 주요 외국의 건강보험 내·외부 경쟁 현황

인구고령화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후기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은 취업과 실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종신고용이나, 취업이 곧 사회보장제도로의 진입과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보장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공식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2000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선진국의 개혁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은 인구고령화 및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급격하게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요국은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지출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재정과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보험료 인상, 목적세 도입 등을 추진하고, 지출측면에서는 지불제도 개편, 국민의 선택권 강화를 통해 관리된 경쟁체계(managed competition)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절에서는 대만,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의 건강보장제도 개요, 운영특성, 내부경쟁현황을 살펴보고 관련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 제1 절 대만

### 1. 제도개요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는 우리와 매우 유사하며,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대만 전민 건강보험은 정부기관인 대만 위생서(DOH; Department of Health)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중앙건강보험(NHI, National Health Insurance)이 건강보험의 주요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다<sup>6)</sup>.

대만 역시 6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3,077명의 직원과 임시직원이 국민의 진료, 예방,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7)</sup>.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대상자는 대만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대만에 4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규정에 따라 외국인과 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외국인 거주자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격을 갖게 된다.

적용대상자는 세부적으로 6범주로 구분되며, 1범주는 근로자와 공무원 등 주로 우리의 직장근로자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따라서 이들 가입자는 본인과 함께 피부양자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2범주는 자영업자이며, 그에 딸린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받게 된다. 3범주는 농어민, 4범주는 군인, 사관생도 등 군 관련자가 포함된다. 5범주는 우리의 저소득계층이나 의료급여대상자가 포함되는

6) 대만위생서 산하 건강보험(NHI) 관련 위원회는 대만건강보험감리위원회(National Health Insurance Supervisory Committee), 대만건강보험쟁의심의위원회(National Health Insurance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대만건강보험의료비용협정위원회(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Expenditure Negotiation Committee), 중앙건강보험국(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가 있음.

7) 2006년 2,505명에서 2010년 현재 3,075명으로 증가됨(National health Insurance Profile, 2011; www.nhi.gov.tw).

사회적 약자계층이며, 6범주는 보훈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이한 것은 이들의 자격관리를 수행하는 대리자가 각각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자격관리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직장 근로자에 해당하는 1범주의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학교, 사업장, 공기업 조직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적인 자격 및 급여 관리는 전민건강보험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4-1〉 대만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및 분류

| 구 분 | 적용대상                                                                    |                                             | 보험집행자                                |
|-----|-------------------------------------------------------------------------|---------------------------------------------|--------------------------------------|
|     | 가입자                                                                     | 피부양자                                        |                                      |
| 1범주 |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br>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br>기타 근로자<br>사업자 및 일반 자영업자<br>전문 직업인 | 1. 배우자<br>2. 친족<br>3. 20세 이상 친족 중 장애가 있는 경우 | 조직, 학교, 회사<br>근로자 집단                 |
| 2범주 | - 특고고용주가 없거나 자영업자로서 직업공회(노조)의 회원<br>- 원양어업선원                            | 상 동                                         | 가입자가 속한 직업공회(노조)<br>국립선원노조<br>선주협회 등 |
| 3범주 | - 농어민<br>- 이민협회 구성원                                                     | 상 동                                         | 농어민협회<br>이주민협회                       |
| 4범주 | - 군인<br>- 공사생도<br>- 군인유가족<br>- 군대체복무자                                   | 없 음                                         | 국방부                                  |
|     |                                                                         | 없 음                                         | 내무부                                  |
| 5범주 | - 사회복지법에 의거 저소득가족의 구성원                                                  | 없 음                                         | 진, 시, 구 행정사무소<br>(우리의 시군구)           |
| 6범주 | - 실업퇴역군인 또는 퇴역군인의 유가족 세대주<br>- 실업 세대주                                   | 1분류 피부양자 기준과 동일 (모두 실업자이어야 함)               | 상 동                                  |

자료: BNHI,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2012.

건강보험 가입범주별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 대만 전체 인구 23,074천명이었고, 1분류가 12,240천명이다. 전체 가입범주에서 53.05%

에 해당된다. 2분류는 3,976천명에 17.23%이고, 3분류는 2,828천명에 12.26%, 4분류는 157천명에 0.68%이며, 5분류는 271천명에 1.18%이고, 6분류는 3,600천명으로 15.6%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응급으로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귀국 후에 건강보험국으로부터 진료비를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급여보장성을 확대하였다.

〈표 4-2〉 대만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1범주        | 2범주       | 3범주       | 4범주     | 5범주     | 6범주       | 합 계        |
|---------|------------|-----------|-----------|---------|---------|-----------|------------|
| 소계      | 12,240,752 | 3,976,004 | 2,828,337 | 157,576 | 271,211 | 3,600,607 | 23,074,487 |
| 전체 중 비율 | 53.05%     | 17.23%    | 12.26%    | 0.68%   | 1.18%   | 15.60%    | 100.0%     |

자료: BNHI a,(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2012; 2010년 기준임.

대만의 재정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2,917억 대만달러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3,919억 대만달러로 3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현재 4610억 대만달러이며, 95%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5%는 담배부담금, 복권기금 등에서 유입된다(BNHI, 2011).

## 2. 경쟁체제 도입 및 운영방법

대만 역시 통합된 단일보험자 내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6개 지역본부로 나누어 예산절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방식의 도입의 전제 조건은 통합이라는 단일보험자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다. 즉, 지역본부별 경쟁이나 지사별

경쟁을 유도하기 이전에 지역별 인구, 연령, 성별 분포에 따라 공정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선, 재정수입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지역본부별로 결정되어 중앙본부에 보고되는 상향식을 따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복지부와 같은 위생서(DOH: Department of Health)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건강보험의 예산은 일부가 지역본부에 직접 분배되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지역별 성과평가는 지역본부의 편차(인구, 연령, 성별 분포 등)를 고려한 성과지표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무엇보다도 전년도 성과와 지역본부의 목표 달성 정도의 비교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동된다. 특히 이는 현재 대만에서 진료비 지불방식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는 총액예산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보험료 징수율, 체납율, 적자비율, 의료의 질 등이 반영되고 있다<sup>8)</sup>.

지역본부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 되는데 금액의 크고 적음을 떠나 최종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수급하였다는 것은 상당한 명예로 인식되기 때문에 직원 간 경쟁유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다(최인덕, 2009)<sup>9)</sup>.

8) 전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성과에 따라 인사권과 인력 편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전민대만건강보험법령) 86조, Enforcement Rul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86조 관련 시행령), Regulations Governing Contracting and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Institutions(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86조 관련 시행령)

9) 대만 건강보험국 직원의 인터뷰 자료이며, 우리의 경우도 공기업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는 인센티브를 모두 거두어 동일하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복지부나 경영자측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제2절 네덜란드

### 1. 제도개요 및 개혁배경

네덜란드는 공적의료보험(1층), 민간의료보험과 특별의료비지출제도(2층), 그리고 보충형민간의료보험제도(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강보장체계를 2층의 민간의료보험과 특별의료비지출제도를 규제된 급여목록을 제공하는 기초건강보험제도로 통합시켰다. 이와 같은 개혁의 목적은 기존의 다보험자방식으로 인해 이원화된 위험분산기능을 통합하는 것과 보험자간 규제된 경쟁을 통해 보험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즉, 규제된 또는 관리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병 금고별 차이를 보정하지 않고서는 경쟁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통합과 함께 소규모 조합으로 운영되던 보험자를 몇 개의 비슷한 규모와 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개혁은 보험자간 제한된 경쟁을 통해서 재정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사회연대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목적에 기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이전의 상황과 제도운영을 살펴보면, 우선,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은 2006년 이전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네덜란드는 공보험과 사보험이 공존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 및 보험제도가 복잡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 소득수준과 함께 민간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과거병력, 피부양자수,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였기 때문에 보험종류와 급여내용도 매우 다양하였다. 따라서 국민입장에서는 매우 복잡하여 가입과 급여혜택에 불편이 많은 제도였다.

둘째, 복잡한 구조에서 가입자는 보험을 선택하지 않거나, 민간보험사



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등 보험의 역선택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sup>10)</sup>.

셋째, 다른 서구유럽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위기에 대해 깊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공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으며, 보험자간 경쟁이 없어 효율적인 가입자관리, 건강관리 서비스 부재와 의료비 절감에 대한 유인이 없었다.

끝으로, 만성적인 대기시간의 문제였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의료공급량 통제에 따라 만성적 대기시간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시설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sup>11)</sup>.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개혁은 1987년 데커(Dekker) 위원회 보고서를 기초로 시작되어,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 데커 위원회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은 재원조달 단일화, 의료이용 형평성 증진, 보험자와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건의료 관리체계의 관리된 경쟁 체계 도입 등이 중심이었다.<sup>12)</sup>

#### [그림 4-1] 데커 개혁방안

- 건강보험의 재원조달을 단일화
-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향상
- 가입자의 선택권보장
- 건강보험 효율성 제고: 보험자와 공급자 경쟁 인센티브 부여
- 보건의료 관리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 형성: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방식 전환

10) 총인구의 2%가 무보험자 층으로 분류됨(황라일 외, 2008).

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의 네덜란드 출장자료(2008)에서 재인용함.

12) 네덜란드 건강보험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권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내용에 충실하여 개혁의 기본틀을 지속 유지함.

개혁이후 제도운영의 개요를 정리하면 우선, 사보험과 공보험이 공존하던 것을 민간보험자에게 사회보험을 강제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였다.

[그림 4-2] 네덜란드 건강보험 개혁 전후 비교

| 2006년 이전         |                       |                       | ⇒ | 2006년 이후                                          |  |
|------------------|-----------------------|-----------------------|---|---------------------------------------------------|--|
| 요 양 보 험          |                       |                       |   | 요 양 보 험                                           |  |
| 사회보험<br>(1천만명)   | 공직자<br>건강보험<br>(90만명) | 민영<br>건강보험<br>(490만명) |   | 사회민간보험<br>(Social-Private Insurance)<br>(1,600만명) |  |
| 보충형 민간보험<br>(선택) |                       |                       |   | 보충형 민간보험<br>(선택)                                  |  |
|                  |                       |                       |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출장보고서」,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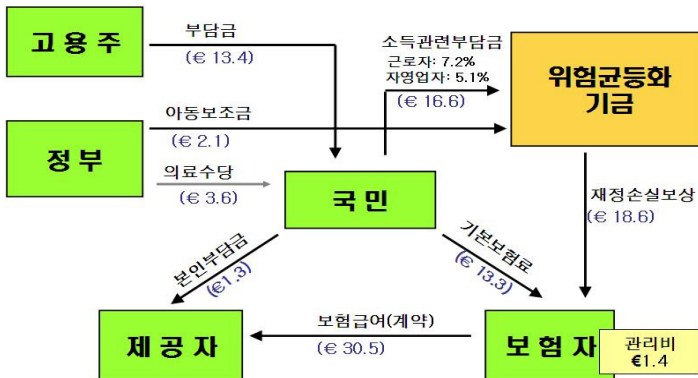
비록 민간보험자에게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보험자 역할을 부여하였으나, 네덜란드의 민영보험회사는 대부분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민영화와는 성격이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민영보험사에 보험자 역할을 부여하면서 제시된 경쟁방법이 바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한 규제된 또는 관리된 경쟁체계이다. 이는 국가의 공공재에 대한 규제와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시장경쟁의 무한경쟁을 의미하지는 않는 방식이다.

개혁 후 네덜란드의 민영보험회사는 130여개에서 25개로 통폐합되었으며, 2008년 현재 상위 4개 보험사에 가입자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개혁이후 민영보험사가 건강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기피할 수 없도록 네덜란드 당국은 이를 법령에 명시하였고, 가입자는 자율적으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보험사는 가입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가입자가 최대한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의료비 절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네덜란드 건강보험재정은 총 319억유로로 소득비례로 부과된 정률보험료가 50%, 정부조세에서 부담하는 기금이 5%이며, 전체 재정의 55%를 위험균등화 작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민간 보험사에 배분하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45%의 보험료는 정책 보험료로 민영보험사에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금을 통해 민영보험사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sup>13)</sup>

[그림 4-3] 네덜란드 건강보장체계의 재정흐름도



자료: 황라일 외,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제도개혁과 시사점』, 2008.

2008년 기준 직장인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7.2%이고, 자영업자는 5.1%이며, 연간 보험료 상한액은 31,000유로이다.

13) 네덜란드 교민의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사례: 1인당 월 평균 기본보험료 90유로와 보충형 보험료 40유로 총 130유로 납부함.

- '08년 현재 기본적 일정공제액(deductible)은 연간 150€이며 가입자는 일정공제액 650€까지의 보험 상품 선택 가능.

- 일정공제액이 많을수록 정책보험료는 낮은 편이나, 일정공제액 150€ 상품에 국민의 95%가 가입.

※ 일정공제액 150€의 경우 연 평균보험료 1,105€(1,745,900원).

※ 일정공제액 650€의 경우 연 평균보험료 899€(1,420,420원).

※ Deductible 이란 연간 150€(또는 650€)의 의료비까지는 본인부담, 그 이상은 전액 보험자 부담임.

## 2. 경쟁체계 도입 및 운영방법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개혁은 전국민을 하나의 위험분산 범주로 통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기존의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통합하여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전국민의 보험자 기능을 수행하되, 정부는 공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통해 표준형 급여목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sup>14)</sup>.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공정하고 규제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전체 재정<sup>15)</sup>의 55%이상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가입자를 위해 보다 많이 배정함으로써 소득재분배는 물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4〕 네덜란드 보험자간 경쟁 개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출장보고서」, 2010.

개별 보험사간 정책보험료 경쟁, 급여 차등화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게 되는데,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질병위험이

14) 기존의 민간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하였던 국민들은 개혁이후 강제적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민간보험사에 가입해야 함. 선택받은 보험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게 되고, 기본 급여를 제외한 부가급여 및 인센티브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음.

높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배제를 금지하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보험사간 급여가 왜곡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있다<sup>15)</sup>. 경쟁 시스템으로 민간보험사는 재정 흑자 시 보험료 환급, 건강검진 바우처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자 시에는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게 되어, 다른 보험사와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경쟁의 축은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계약 또는 서비스 구매에서 나타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험자는 네덜란드 내에 있는 양질의 공급자를 선별해서 계약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원하는 병원을 계약할 수 있어 공급자로 하여금 급여수가를 할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sup>16)</sup>. 정부는 진료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보험자와 공급자간 담합에 따른 진료의 질적 저하를 막는 방법도 부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17)</sup>.

### 3. 공정 경쟁을 위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다보험자 운영방식에서는 적자 보험자의 파산 위험성에 대비하고, 전 국민의 소득재분배, 연대 등을 위해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보험자 방식에서 사전에 위험을 분산하여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 보험자가 재정의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한 후 개별 보험자에게 재분배할 때는 가입자 중 위험요소 여부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15)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의 배제, 보험사별 보험료 할인의 적정성(10%), 보험사와 공급자간의 경쟁에 의한 계약 여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최인덕, 2008: 76~77).

16) 보험자는 공급자와 계약을 통해 양과 가격을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매력을 행사하는데 참조가격제, 포괄수가제 등이 대표적인.

17) 초기의 경쟁유도가 이후 보험자의 담합이나 독과점이 형성되어 공급자를 관리하여 급여서비스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을 통해 공급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공급자와 계약하고 있고, 구매가격도 보험자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관리된 경쟁의 성과 평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김진수(2012) 독일-네덜란드 출장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 교수 인터뷰 자료’)

초기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은 성별, 연령과 진료비 금액 등으로 구분하여 배분하였으나, 보험수리 발달과 위험요소 등의 확대에 보다 정교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조합방식으로 운영했던 1995년에 위험조정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확대 실시하였으나 2000년 단일 보험자로 통합하면서 이와 같은 위험조정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네덜란드는 건강보험 개혁이후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보험자 방식으로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위험조정프로그램을 보다 정교하게 운영함으로써 보험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자 간 재정격차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중앙에 위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가입자(국민)의 성별, 연령, 질병 및 장애정도, 소득수준, 지역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이용가능성과 진료비 지출 예상액 등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공동기금을 가입자가 속해 있는 보험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3>에 제시된 것과 같다. 40세 여성이면서 장애급여 수급자는 당뇨 환자 진단군에 속해 있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금액으로 판정된 1,231유로에 소득이 높아 책정된 1,033유로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산정된 83유로, 지역에서 46유로, 처방약에 대한 진료비 수준으로 3,327유로 진단그룹에서 -113유로 총합계 5,577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보험료 납부로 보충될 금액이 -947유로 강제 공제금액 -155유로며 이를 통해 최종 공동기금에서 위험조정금으로 재 배분될 예상금액은 4,475유로로 산정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주어진 38세 정상적 남성의 경우는 건강상태 양호, 지역수준 쾌적, 질병위험 낮음 등의 이유로 공동기금에서 오히려 제공할 금액이 없고, 공제하게 되는 대상으로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위험이 높은 가입자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며

오히려 이들 대상자의 질병이나 건강수준을 잘 관리하게 되면 배당금액을 절감할 수 있어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개별 보험자들은 건강한 가입자를 선호하기 보다는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 가입자들을 가입시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2012). 결과적으로 위험조정프로그램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며, 사전에 위험에 따라 배분하므로써 보험자가 제공 받은 예상진료 금액을 절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까지 있게 되며, 정교한 위험조정 프로그램의 운영은 네덜란드 건강보험 효율화의 가장 큰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표 4-3〉 네덜란드 위험조정 프로그램의 실제 예

| 구 분                       | 40세 여성, 장애급여 수혜자<br>사회경제적 수준 낮음<br>도시 지역 거주<br>PCG-당뇨-1, DCG-none | 38세 남성, 정상 직업<br>사회경제적 수준 높음<br>쾌적한 거주지<br>PCG-none, DCG-none |
|---------------------------|-------------------------------------------------------------------|---------------------------------------------------------------|
| 성별/연령                     | 1,231                                                             | 980                                                           |
| 소득                        | 1,033                                                             | - 54                                                          |
| 사회경제적상태(SES)              | 83                                                                | - 98                                                          |
| 지역(region)                | 46                                                                | - 79                                                          |
| Pharma Cost Group(PCG)    | 3,327                                                             | -347                                                          |
| Diagnosis Cost Group(DCG) | - 113                                                             | - 113                                                         |
| 총 비용                      | 5,577                                                             | 299                                                           |
| 기본 보험료                    | - 947                                                             | - 947                                                         |
| Compulsory deduct         | - 155                                                             | -7                                                            |
| 위험보정 후 지불액                | 4,475                                                             | - 655                                                         |

자료: 김진수, 「독일-네덜란드 출장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제3절 독일

#### 1. 제도개요

독일은 여전히 질병금고의 조합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자들에게는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독일 공적 의료보험체계(GKV)는 1차 의료보험자(Erste Krankenkassen)와 2차 의료보험자(Ersatzkrankenkassen)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7개의 하위 보험자 조합으로 구분된다<sup>18)</sup>.

2008년의 경우 공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강제가입을 위한 소득상한선은 연간 소득 48,150유로이며, 월 4,012유로이다.

18) 일반 지역 의료보험조합(AOK)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지역주민 및 보험가입의무자 중 다른 의료보험의 미가입자를 보호함. 직장 의료보험조합(BKK)은 상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일반사업장 의 근로자들을 보호함. 공업자 의료보험조합(IKK)은 상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수공업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함. 농민 의료보험조합(LKK)은 자영농민 및 그 가족종업원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을 위한 재해보험·노령연금보험·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농민 사회보험의 한 부문임. 선원 의료보험(SeeKK)은 해상선박 승무원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상선박 승무원을 위한 재해보험·노령연금보험·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선원 사회보험의 한 부문임. 연방 광산 근로자 의료보험(BKnsch)은 광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산근로자들을 위한 재해보험·노령연금보험·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연방광산근로자 조합의 한 부문임. 근로자들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의료보험조합(EK)은 생산직 근로자 대체 의료보험조합(Arb. EK)과 사무직 근로자 대체 의료보험조합(Ang. EK)로 구분됨(이용갑, 2009).



[그림 4-5]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자료: KBV, Grunddaten zu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in Deutschland 2008. Zahlen·Fakten·Information, Köln, 2008.

## 2. 건강보험 경쟁체계 도입 및 운영방법

독일의 경우 역시 2008년 국제 재정위기와 인구고령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하였다. 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자간 관리된 경쟁 프로그램과 보험자의 역할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 보건 당국은 질병금고 간 규제된 경쟁을 위해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보험료율을 동일화하는 혁신을 단행하였다. 독일은 2008년 217개 질병금고에서 2010년 169개 질병금고로 병합, 확대하여 위험분산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질병금고별로 개별적이던 보험료율을 15.5%로 통일 하였다<sup>19)</sup>. 또한 지속적인 재정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2008년 독일 질병금고는 추가보험료 명목으로 개별 보험자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0)</sup>. 따라서, 가입자는 질병금고 선택권을 통해 추가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질병금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병금고 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해 급여비를 절약하고, 관리하는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독일 연방보건부(2010) 박종덕, 2010에서 재인용)<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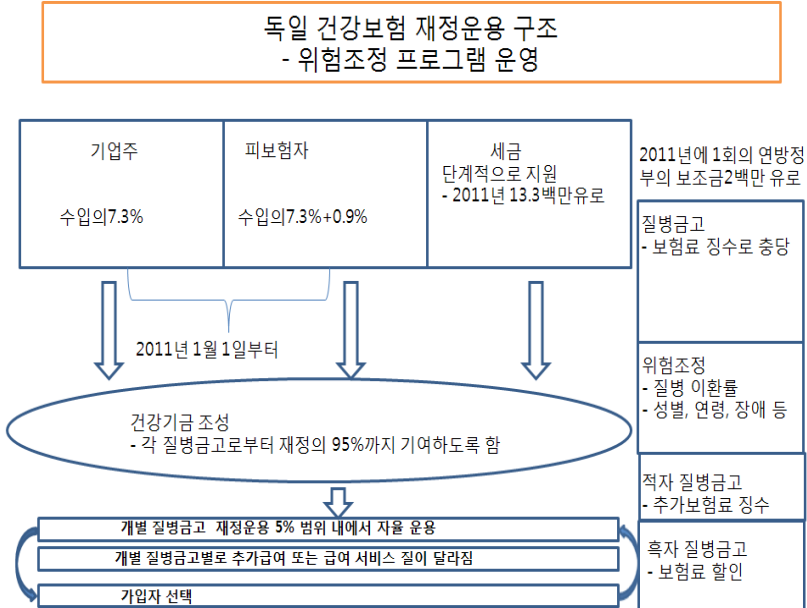
아래 그림은 독일 연방정부의 2009년도 회계자료를 재정의 흐름에 따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기업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조성된 기금을 95%수준에서 통합재정으로 합한 뒤 위험조정에 따라 재분배하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조세로 일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11년에는 조세로 1330만유로가 지원되었다.

19) 고용주가 7.3%, 근로자가 7.3%에 0.9%를 추가하여 8.2%를 부담하는데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임.

20) 재정이 악화된 질병금고는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월 최대 8유로까지이며, 연 소득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보험자는 사전에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가 없거나 더 낮은 질병금고를 선택하여 이탈 할 수 있도록 하였음(박종덕, 2010:173).

21) 독일 정부는 2011년 질병금고간 보다 공정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음. 기존 개별 질병금고가 징수한 추가보험료를 중앙정부에서 ‘사회조정금’ 명목으로 일괄 징수하고, 분배하여 재정안정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더불어 개별 질병금고는 가입자 연소득의 2%까지 추가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경쟁을 강화함(박종덕, 2010: 172~173).

[그림 4-6] 독일 건강보험 재정운용 및 위험조정 프로그램 운영 구조



자료: 김진수, 『독일, 네덜란드 출장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구체적으로 개별 질병금고는 첫째 재정운용을 잘 하여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 가입자의 선택이 많아져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될 것이고, 가입자가 증가하여 더욱더 재정은 안정될 수 있다<sup>22)</sup>. 둘째, 재정 운영 결과에 따라 가입자에게 운영 흑자를 환급해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최대 25유로, 또는 월 8유로까지 지급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건당국은 보험자들이 공급자와의 계약 측면에서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개별 질병금고는 병원이나 약국 등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참조가격제를 통해 약가 인하율을 6%에서 16%까지 확대하였으며, 단기 자금 축적(short term savings) 제도를 통해 질병금고가 흑자 재정을 적립할 수

22) 가입자들은 각 보험자(질병금고)의 추가보험료 부과 금액, 운영흑자 환급, 추가 급여 내용 등에 대해서 인터넷 공지를 통해 비교 확인할 수 있음.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질병금고는 추가 급여나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가입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독일 연방보건부(2010) 박종덕, 2010에서 재인용).

종합하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입자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질병금고를 선택하도록 하며, 질병금고는 공급자와의 계약이나 구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매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 3. 공정 경쟁을 위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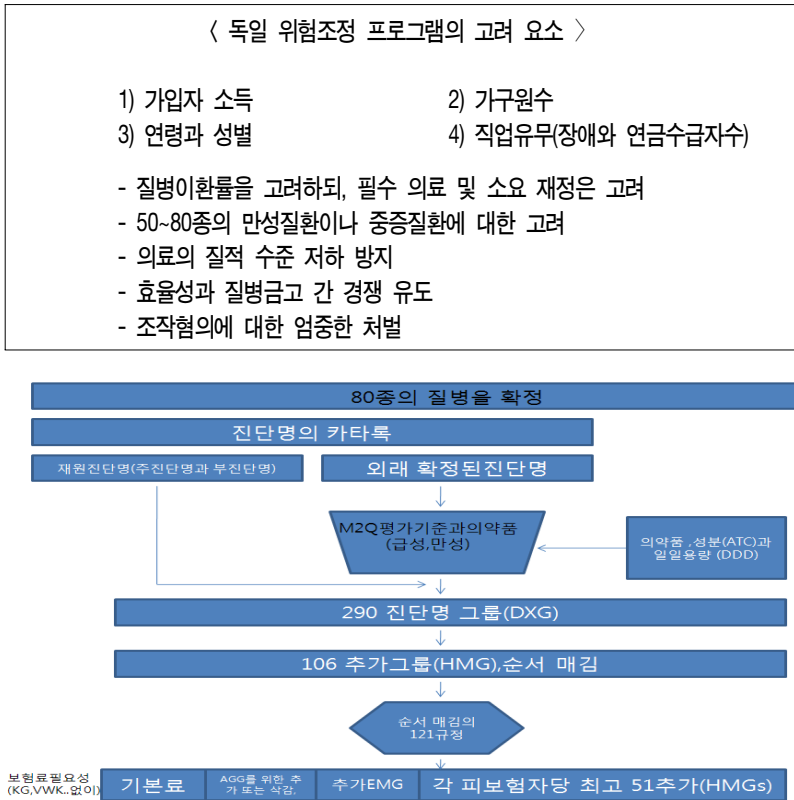
앞서 네덜란드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보험자 방식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독일 건강보험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95%까지 통합하여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후 5%의 자율성을 가진 질병금고는 보험재정운용에 있어서 추가보험료를 걷지 않고자 노력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위험조정에 의해 배분 받은 금액을 절약하고자 위험이 높은 가입자들에게 진료와 건강유지를 독려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5%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재정에 대해 절약하기 위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공급자와의 계약에 있어 우위의 구매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스위스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의 원천국가답게 보다 정교하고,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다.

독일 위험조정프로그램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아래 [그림 4-7]에서처럼 첫째, 가입자의 소득의 차이를 고려하고, 둘째, 가구원 수를 고려하며, 셋째,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끝으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장애인 또는 연금수령자 수가 고려대상이 된다.

[그림 4-7] 독일 위험조정 고려 요소와 이환질병의 그룹의 적용방법



자료 : 김진수, 「독일, 네덜란드 출장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료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필수 진료수준을 고려한 보험료가 책정되고, 의약품과 진단 그룹에 따라 필수와 비필수진료의 우선순위가 자세하게 규정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자의 위험을 조정하고 있다.

결국,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 일정 금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이를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따라 재배분함으로써 사전에 위험분산(ex-ante)을 시도하고 이를 개별 질병금고나 보험자가 맞추어서 가입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급자

와의 계약에서도 이러한 재정운용 절감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제4절 스웨덴

### 1. 제도개요

스웨덴은 북구유럽의 복지선진국으로 의료보장방식 역시 영국과 같은 국가보건서비스 방식(NHS)이다. 따라서 스웨덴 보건의료제도는 주로 세 급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며, 관리운영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재정에 대한 책임은 주로 광역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까지 세분화하고 있다<sup>23)</sup>. 광역자치단체는 21개이며, 2개의 거대행정구역이 존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290개로 구성되어 있다. County council의 광역자치단체와 Municipalities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 조직, 추적조사,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8]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수준별 역할 구분

| 중앙 정부              | 지방 정부                                |
|--------------------|--------------------------------------|
| 보건사회부              | 스웨덴 광역자치단체(21개) 및<br>기초자치단체(290개) 연합 |
| 국가보건복지위원회          |                                      |
| 책임 역할 : 입법, 감독, 평가 | 책임역할 : 재정, 조직, 추적조사                  |

23) 광역자치단체가 주요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은 2차 이상의 병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동보육과 노인 및 장애 수발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에는 8개의 지역병원으로 종합전문병원, 대학병원 등의 교육의료원이 존재하며, 종합병원급으로 70개의 카운티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기초의료시설로 1000여개의 지역보건의료센터가 지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sup>24)</sup>.

반면, 29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장기요양 및 장애, 복지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표 4-4〉 스웨덴 보건 및 사회서비스 운영체계

| 지역 구분                                             | 주요업무                                                | 의료서비스 제공단위                       | 전달체계                             | 대 상                                                                        |
|---------------------------------------------------|-----------------------------------------------------|----------------------------------|----------------------------------|----------------------------------------------------------------------------|
| 20개<br>광역자치단체<br>(County Councils)<br>(2개 region) | 지역 내<br>자원의 배분<br>및 제공                              | regional<br>care                 | 8개 지역병원<br>- 종합전문, 대학병원 등        | 거주 국민<br>전체                                                                |
|                                                   |                                                     | Country<br>medical<br>care       | 70개 카운티병원<br>- 종합병원 급            |                                                                            |
|                                                   |                                                     | primary<br>care                  | 1000개 healthcenters<br>- 1차 의료기관 |                                                                            |
| 290개<br>기초자치단체<br>(Municipalities)                | 사회서비스<br>아동보호<br>학교건강 및<br>환경응급구조<br>상하수도<br>대중교통 등 | 시설<br>수용노인 및<br>장애인 대상<br>서비스 제공 |                                  | ① 시설에 수용된<br>노인과 장애인<br>② 일부 mun-<br>icipalities의 경우<br>집에 거주하는<br>노인과 장애인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출장보고서」, 2010.

중앙정부는 케어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확립,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법률과 명령에 의하거나 스웨덴 지방정부연합(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ALAR: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함)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4) Korolinska 대학병원(Stockholm), Sahlgrenska 대학병원(Gothenburg), Uppsala 대학병원, Lund 대학병원, Malmö 대학병원, Linköping 대학병원, Norrlands 대학병원(Umeå), Örebro 대학병원이 속함.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는 스웨덴 의회(Riksdag)와 정부가 규정한 의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보장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이다.

의료보장 관련 업무는 정부 위탁기관에서 분담하고, 정부는 일반 및 치과, 제약 관련 생산을 관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장체계, 법령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정책쟁점을 논의하고 county councils, municipalities 등의 의료보장기관과 협상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 보건사회부 산하 5개의 독립적인 기관이 존재하는데,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SoS)는 진료행위 발전, 가이드라인 이슈, 의료보장의 감독 등을 맡은 위원회이며, 모든 의료 관련 종사자들은 본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다.

둘째, Medical Responsibility Board(HSAN)는 환자의 보호, 진료, 검사를 맡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불만(이의제기)을 조사하는 위원회이며, 이의제기는 환자본인, 친척, SoS 위원회에서든 제기할 수 있다.

셋째, Swedish Council on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 Care(SBU)는 의료혁신기술의 검증하는 기구로서, 치료의 질 향상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들은 유용한 자원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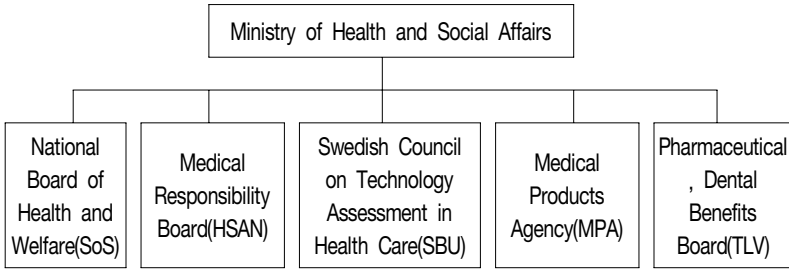
넷째, Medical Products Agency(MPA): 의료생산물(서비스, 기계 등을 포함한 개념)의 향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환자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양질의 의료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Pharmaceutical, Dental Benefits Board(TLV)는 의료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제약 관련 산출물의 결정을 하는 기구로서, 또한 이들 산출물의 가격까지 결정하는 기구이다.<sup>25)</sup>

25) 2010년 치과급여 여부까지 결정하면서 LFN에서 TLV로 전환함.



[그림 4-9] 국가 보건사회부 산하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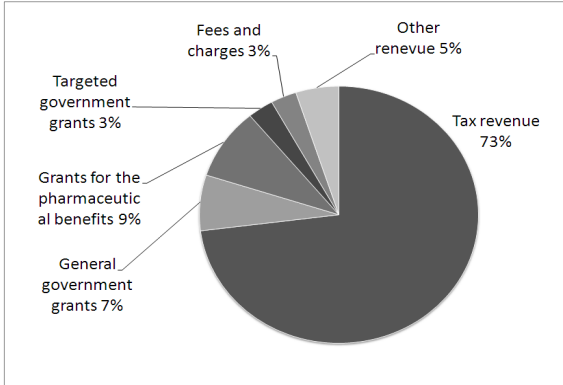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출장보고서」, 2010.

스웨덴 보건의료 재정의 주된 원천은 세금이며 그 외 정부보조, 본인 부담금, 국가건강보험이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된 원천인 세금에는 county council과 municipality의 지방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을 위한 재원은 county council이 주로 담당하며, 재정수입의 90%를 보건의료서비스 재원에 투입하고 있다.

2009년 스웨덴 지방자치단체연합(SALAR)의 자료에 의하면 County Council의 재정구성을 보면, 조세수입이 73%, 국고지원 및 보조, 목적세가 19%, 사용자 이용료 3%, 기타 5%로 구성<sup>26)</sup> 된다.

26) 여기서 환자부담이 3%라는 것은 스웨덴 전체 보건의료지출에서 환자본인부담이 3%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이것은 스웨덴 광역자치단체의 총 수입 중의 비율이므로 전체 보건의료지출 대비 환자 본인부담비율과 무관함.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직접 받는 본인부담금처럼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분류되는 본인부담금이지 일반개원의나 민간개원의, 혹은 광역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병원의 본인부담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참고로 2004년 스웨덴 전체 보건의료 지출비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Out of-pocket)은 13.9%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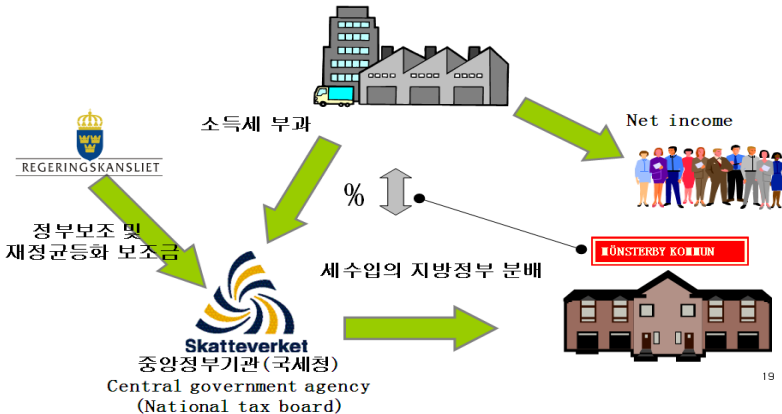
[그림 4-10] County Council과 Region의 수입 구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출장보고서」, 2010.

스웨덴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비례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 county council의 소득세율은 평균 10.76%, municipality의 소득세율은 20.79%이며 전체 스웨덴의 세금 규모는 연소득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1] 스웨덴 조세 부과 흐름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출장보고서」, 2010.

스웨덴은 보험방식을 통해 상병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 상병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체계이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에는 상병수당이 임의급여로 되어 있어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스웨덴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 아닌 보험방식으로 상병수당의 재원을 마련하며, 소득비례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상병수당의 경우 제 1일에는 지급하지 않고, 제 2일부터 14일까지는 고용주가, 14일부터는 스웨덴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에서의 또 다른 재원은 본인부담으로서 스웨덴 보건의료체계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9%(WHO, 2007)이다.

## 2. 건강보장제도 경쟁체계 도입 및 운영방법

분권화를 통한 경쟁체계 도입 및 약국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계 도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웨덴은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가운데, 공급자간에 경쟁체계를 추진해왔다

건강보장체계의 분권화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회와 분권화도 포함된다. 각 지역의회는 건강보장서비스에 대한 재정과 계획책임은 1982년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률(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전통은 지역의회간의 건강보장공급과 거버넌스의 지역별 차이를 만들어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지역별 격차 감소와 더 나은 서비스의 필요에 의해 지역별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나타났다. 그 예로 정부기관 역할은 지역별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

불어 지역 간 연계망 구성을 통해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서 지역 간 편차를 줄여 각 지방의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한 것이다.

건강과복지전국위원회는 심각한 만성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을 위한 증거기반가이드라인(Evidence -Based Guideline)을 제공하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병원들의 통합을 통해 지역별 집중화가 추진되었고 각기 다른 의료수준과 병원수준의 협력이 증가하였다. 이전의 분권화의 국가정책은 2000년대 의료전달의 집중화 경향으로 대체되었다.

건강과사회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는 의료, 공공의료, 사회보험과 사회현안과 같은 영역의 발전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의료공급의 가장 중요한 법적 규제는 1982년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이다. 이 법률은 지역거주민의 건강증진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지역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 의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는 사회서비스법(the Social Services Act)에 의해 규제된다.

건강과복지전국위원회는 의료서비스, 건강보호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다. 이 기관은 제시된 서비스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시된 목적들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고 평가한다.

2011년의 신환자안전법(a New Patient Safety Act)은 의료종사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개인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에는 의료공급자의 책임도 포함된다. 체계적 환자 안전과 예방 업무의 개선,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환자안전조치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환자가 의료적 치료와 관련하여 손해 또는 질병,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공급자는 건강과복지위국가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섯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비차별 원칙”, “동등치료의 원칙”, “투명원칙”, “과잉조치금지의 원칙”, “상호인식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것들이다.

의료공급자의 선택은 19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되어왔으며 도입 초기에는 환자의 공급자 선택이 민영화와 공급자 설립의 자유와 결합되지 않았다. 1991년에 연방회의에서 추진된 1차 의료 공급자 선택과 특정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이슈화되었고, 몇몇 지방의회는 선택의 옵션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지역의회에 공인을 받은 공급자의 설립자유와 국민의 1차 의료 공급자의 선택이 결합하였다. 200개 이상의 1차 의료 공급자들이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환자들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어떤 공공 또는 개인 공급자에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공급자선택에 대한 환자의 권리는 스웨덴에서 공식적인 국가규제의 부분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적용되어왔다. 1992년에 12개의 선택적 치료에 대한 국가보장이 도입되었다.

이 보장은 건강과사회부와 연방의회간의 전국적 수준에 대한 합의의 결과이다. 정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추가재정을 보장하고 환자에게는 다른 병원, 같은 지역 또는 환자거주지역외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였다. 현장에서는 이 보장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들의”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5년 이후에는 새로운 보장이 제시되었으며, “0-7-90-90”규칙으로 진찰을 위한 건강보체체계대기시간이 지연해서는 안되고, 7일 이내에 GP를 봐야하며, 90일 이내 전문의의 진찰을, 진단 받은 이후에 치료받는 것이 90일 이상 되어서는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민영화와 관련된 경쟁 체계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합리적 의약품 사용(Rational use of pharmaceuticals)을 전제로 약제비 관리책임의 분권화(decentralized pharmaceutical budgets)를 시도하였다.

주의회정부가 1차 의료지역단위나 1차 의료센터 또는 병원 단위로 예산을 책정하며, 이는 고정예산제 또는 통합예산제 형태로 도입되었다. 처방의사는 신청시 자신의 처방패턴관련 통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처방가이드라인은 County council 단위의 의약품위원회(pharmaceutical committee)가 일반적 질환에 대한 첫 치료약제 추천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추천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정부약제비 예산을 절감할 경우, 또는 처방 개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에 제공된다.

또한 제네릭 대체조제 또한 시행되었다. 약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 하였으나, 의사가 반대하거나 환자가 대체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지불할 경우는 대체조제 거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네릭 대체조제와 약제군내 참고가격제 실시로 제네릭 제약사간의 경쟁에 따라 약가 평균 40%정도가 인하되는 효과를 보았으며, 스웨덴 정부 추정 약제비 절감액은 약 760백만유로 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보고서, 2010).

〈표 4-5〉 스웨덴 제네릭 대체조제 현황

|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Volume<br>(# of pack per year) | 34%  | 34%  | 35%  | 37%  | 40%  | 41%  | 44%  |
| Value                          | 11%  | 11%  | 12%  | 12%  | 12%  | 13%  | 14%  |

자료: The Sweden Generic Medicines Association(Föreningen för Generiska läkemedel. FGL.) 2006.

특히, 의약품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약국 독점제를 폐지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첫 번째 단계로 국립스웨덴제약회사의 소유의 50%가량을 민영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 선택된 두 통제와 같은 일반의약품(OTC) 생산품의 판매를 약국외의 주유소, 기타 허가받은 시설 등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목적은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더 자유스런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8개 영역의 465개 약품들이 2009년의 과정을 통해 민영화되었고, 추가적으로 150개 약품들이 민영화되었다.

## 제5절 시사점

다보험자방식과 단일보험자 방식이 모두 포함된 외국의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국가의 규제 속에서 제한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건강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이와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건강보장성을 확대를 위해서는 위험분산기능을 통합하고 개별보험자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분산기능은 통합할지라도 내부경쟁체제는 유지시킴으로서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다보험자 방식이든 단일보험자 방식이든 제도의 큰 프레임은 보존하면서 내부적인 기능의 향상과 경쟁유도로 서비스의 질과 재정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경쟁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보험자와 공급자간 서비스 구매에서 또 다시 관리된 경쟁을 도입하여 이중의 효율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당연계약제를 운영하고 있고, 보험자가 자율적이며, 가입자를 대표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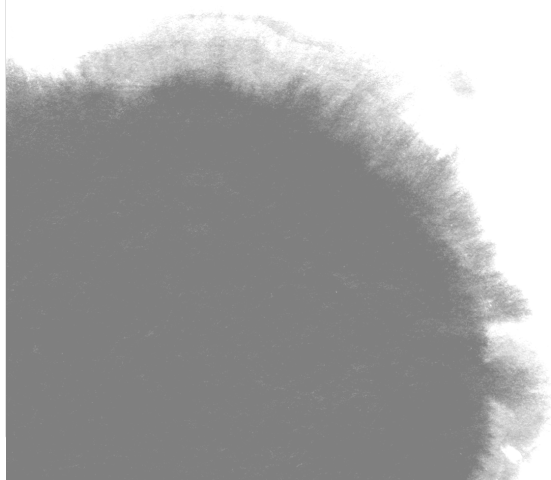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공급자와 수가 계약을 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자가 급여비 관리를 위해 가입자의 건강위해 행위를 규제하고,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방법과 더불어 공급자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경쟁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노력은 수가지불제도 개편, 약가관리제도 개선 등 공급구조 개선의 지난한 과제들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고,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지양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진료비 지출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내부경쟁 도입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5장

## 내부경쟁 필요성 및 적용방안 모색





## 제5장 내부경쟁 필요성 및 적용방안 모색

### 제1 절 내부경쟁 필요성, 경쟁방향 및 적용 방안 모색

#### 1. 내부경쟁의 필요성

현행 건강보험 운영에 있어 경쟁방식의 도입을 모색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경영에 자극을 주어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려는 측면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위기 대처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자방식에서는 재정이전이 사후에 필요한 만큼 지역별, 질병 인구특성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sup>27)</sup>, 단일보험자 내부적으로 경쟁메카니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현행 건강보험 제도운영에서 전체 재정증가추이와 지역별, 지사간 증가 추이를 분석하면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 경쟁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최근 3년간 전체 보험급여비 증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표 5-1>와 같이, 2006년에서 2007년은 전년대비 13.8%가 증가

27) 단일 보험방식의 사후적(ex post) 재정이전 방식으로 사전적 재정이전 방식인 다보험자 방식과는 재정이전의 속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단일보험방식에서는 위험분산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수의 보험자가 경쟁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메카니즘 작동이 미흡한 단점이 있음(최인덕, 2008: 13~14).

28) 최근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료확보가 가능한 2008년, 2009년 지급기준 자료를 활용함.

하였으며, 2007년에서 2008년은 전년대비 8.5%, 2008년에서 2009년에는 12.7%로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각각 2006년에서 2007년이 12.0%, 2007년에서 2008년이 14.3%, 2008년에서 2009년이 5.8%에 그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재정현황에서 2009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나타났고, 2010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적자로 전환되었다. 2009년에서 2010년의 급여비 증가율도 12.1%에 이르고, 2011년에는 조금 주춤한 7.4%의 증가율을 보여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5-1〉 2006~2011년간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추이

| 구 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급여비<br>(억원) | 215,879 | 245,600 | 266,543 | 300,408 | 336,835 | 361,890 |
| 전년대비<br>증가율 | -       | 13.8%   | 8.5%    | 12.7%   | 12.1%   | 7.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연보」, 2012.

다음으로 지역별 진료비 증가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접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현재 공단은 단일보험자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6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관할 지사의 업무 지원, 광역 단위 운용에 적합한 건강보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험 급여비에 대한 지역본부별 외래, 입원 진료비 증가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래와 입원 진료비 합계 증가율에서는 최근 3년간 경인지역본부의 진료비 증가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지역본부가 25.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어 부산지역본부가 23.0%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외래 급여비 증가추이를 지역본부별로 파악하면, 전국 평균 2006년 대비 2008년 증가율이 15.9%인데 반해 경인지역본부는 24.4%, 서울지역본부는 18.9%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광주지역본부는 5.1%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도 2006년 대비 2008년 전체 평균 증가율은 36.0%인데 반해 경인지역본부의 입원비 증가율은 48.3%, 서울지역본부 증가율은 37.1%, 부산지역본부 증가율이 36.3%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해 대구지역본부는 24.2%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지역본부별 진료비 증가추이를 입원, 외래로 분석한 결과 지역본부별로 진료비 지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개 지역본부 중 경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외래, 입원비의 증가율이 다른 지역본부보다 높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석하고, 진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강구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지역별 진료비증가 요인은 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문제와 수가구조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발생함을 인정하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진료비 증가율이 지역별로 높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분석과 종합적인 관리를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 2006~2008년 지역본부별 급여비 분석

(단위: 억원, %)

| 구 분<br>(환자 거주지) | 2006년   |        |         | 2007년   |        |         | 2008년   |         |         | 증가율(06~08년) |      |      |
|-----------------|---------|--------|---------|---------|--------|---------|---------|---------|---------|-------------|------|------|
|                 | 외래      | 입원     | 전체      | 외래      | 입원     | 전체      | 외래      | 입원      | 전체      | 외래          | 입원   | 전체   |
| 서울              | 30,132  | 18,872 | 49,004  | 33,282  | 22,429 | 55,711  | 35,840  | 25,872  | 61,712  | 18.9        | 37.1 | 25.9 |
| 부산              | 20,181  | 14,471 | 34,652  | 21,578  | 17,180 | 38,758  | 22,884  | 19,730  | 42,614  | 13.4        | 36.3 | 23.0 |
| 대구              | 13,431  | 8,748  | 22,179  | 13,885  | 9,791  | 23,676  | 14,474  | 10,869  | 25,343  | 7.8         | 24.2 | 14.3 |
| 광주              | 15,268  | 11,069 | 26,337  | 15,487  | 12,372 | 27,859  | 16,047  | 13,993  | 30,040  | 5.1         | 26.4 | 14.1 |
| 대전              | 13,428  | 8,903  | 22,331  | 14,110  | 10,045 | 24,155  | 14,972  | 11,403  | 26,375  | 11.5        | 28.1 | 18.1 |
| 경인              | 33,434  | 20,258 | 53,692  | 37,845  | 25,234 | 63,079  | 41,597  | 30,044  | 71,641  | 24.4        | 48.3 | 33.4 |
| 기 타             | 4       | 54     | 58      | 4       | 90     | 95      | 52      | 141     | 193     | -           | -    | -    |
| 합 계             | 125,877 | 82,375 | 208,252 | 136,191 | 97,141 | 233,331 | 145,866 | 112,050 | 257,916 | 15.9        | 36.0 | 23.8 |

주: 1) '기타'는 주소지 파악 불가능자

2) <표 5-1>의 전체 급여비와는 약국 경비 등이 제외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9

위에서 제시한 단순 분석결과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지역본부별 급여비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최인덕(2011)의 연구에서는 산출된 지역본부별 급여비와 실제 지출된 급여비를 아래 <표 5-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위에서 제시한 단순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지역본부별로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목표진료비와 실제 지출의료비에는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지역별로 목표진료비 대비 실제지출급여비가 낮은 지역은 대전과 대구지역으로 예상되는 급여비보

29) 최인덕(2011)은 1인당 전국의료비 지출 요인을 분석하여, 요인별 회귀식 베타값을 구한 뒤 회귀식에 지역본부별 지수값을 대입하고, 1인당 지역본부별 연간 진료비를 산출한 뒤, 지역본부별 적용인구를 곱하여 목표진료비를 계산해 냄. 이것은 단순회귀식에 의한 평균적 진료비를 산출할 수 있으나, 지역적 특성이나 공급기관 등의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음.

다 적게 지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지역의 급여비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진료비 절감 노력여부의 효과 및 지출절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3〉 지역별 산출 목표진료비 및 실제지출급여비

|    | 적용인구<br>(명) | 총급여비<br>(백만원) | 1인당월평균급여비(원) |            |
|----|-------------|---------------|--------------|------------|
|    |             |               | 목표진료비(A)     | 실제지출급여비(B) |
| 서울 | 11,691,241  | 5,261,339     | 37,502       | 41,453     |
| 부산 | 7,652,076   | 3,623,870     | 39,465       | 45,648     |
| 대구 | 4,794,396   | 2,935,436     | 51,022       | 45,250     |
| 광주 | 5,227,467   | 2,052,136     | 32,714       | 44,809     |
| 대전 | 4,818,142   | 3,050,924     | 52,768       | 42,357     |
| 경인 | 14,430,212  | 4,724,047     | 27,281       | 41,493     |
| 합계 | 48,613,534  | 21,647,753    |              |            |

자료: 최인덕,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제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2011.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지역별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을 통한 목표진료비 감소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할 경우, 지역별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많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평가항목과 관련된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업무가 소홀해져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우려될 수 있다(최인덕,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기된 진료비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건강보장관련 내부경쟁 도입은 공공기관 효율화 내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내부경쟁 방향

건강보험제도는 2000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이 통합되어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통합의 효과는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질병위험인구 구성 비율에 따른 집단 간 재정이전효과가 높으며, 누진적 소득재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인덕, 2008). 그리고 관리운영 비절감, 보험료 부과 형평성 등에서도 통합이전의 조합방식보다 통합으로 인한 단일보험자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현, 2007; 이상이 외, 2006). 단일보험자의 관리운영방식은 높은 위험분산효과를 통해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보장권 확대와, 사회연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공급자에 대한 구매력과 협상력 등이 확대되어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과 구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일보험자 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양한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약되어 서비스의 질 개선 노력과 효율적인 의료비지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다보험자 방식에서는 가입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다양한 경쟁(보험료인하, 급여서비스 개선, 행정편의 제공 등)을 통해 가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지만, 단일보험자 방식으로는 보험자중심의 서비스가 확대되기 어렵고, 조직의 관료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관리운영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새로운 측면의 경쟁방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Anderson and Hussey, 2004; 최인덕, 2011에서 재인용).

하지만, 단일보험자 방식은 다보험자 방식처럼 경쟁상대가 부재하다는 것일 뿐, 비용절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혁신노력이 부재한 것은 아니다. 단일보험자 방식의 위험분산형태를 가지고 있는 NHS 방식의 국가들은 의료보장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분권화와 내부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지향적인 관리운영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해왔다(Gottert and Schieber, 2006; 최인덕, 2011에서 재인용).



현재 단일보험자 방식인 우리나라에서도 중앙 집중화된 건강보험서비스 체계를 지역별 특성이나 가입자의 특성을 감안 적절한 분권화를 시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 수준은 민영화나 탈집중화 보다는 권위와 책임을 이전하는 이양과 위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분권화의 주체와 대상은 지역별로 구분하는 방안<sup>30)</sup>과 수행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단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Bankauskaite, Dubois and Saltman, 2007;34; 최인덕, 2011에서 재인용).

현 단일보험자방식에서 분권화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되며, 대상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양은 재원 운용과 공급자 계약과 소유등과 관련한 관리권한을 의미하며, 위임은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책임이 될 수 있다.

외국의 분권화 사례의 경우에서도 지방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지만, 중앙은 가이드라인 설정과 지방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통해 전국의 수준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분권에 관한 프랑스의 철학은 정책과 재정에 대한 중앙통제를 축소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분권화의 형태는 주로 탈집중화의 형태로서 받아들여진다.

건강보험에서 관리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환자의 선택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2000년 통합이전 통합논쟁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역별, 직업이나 직종별 조합의 선택권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국민 개개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관리운영을 하여 보험료가 저렴하고, 급여서비스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거였다. 하지만 당시의 우리나라

30) 지역별 분권화의 방법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내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먼저 지역적 특성은 기존 행정구역이나 관리운영체계 구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며, 지역내 가입자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유병율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임(최인덕 외, 2008;47).

조합운영은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불형평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였기 때문에 통합하여 단일보험자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논거에 설득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조합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정한 경쟁 방법 제시와 함께 환자의 조합선택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별 보험료 및 급여서비스 경쟁을 통한 성과에 대해 국민, 즉 환자들이 직접 조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소수 조합 또는 적자 조합이 흑자조합이나 능률적 조합에 흡수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적자조합에 보험료 인상과 재정운영에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경쟁체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종합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보험자 방식에서 국민들의 지역본부, 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그러나 개별 지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타지사와의 비교를 통한 서비스 요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환자선택권이 지역이나 지사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권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궁극적으로 질병치료와 그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적 보험 가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질병과 소득상실이라는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보험수리 방식의 제도이다.

이러한 노력을 추구하는 조직은 가입자인 국민의 질병치료, 소득보전 등에 보다 높은 만족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이다. 공보험 조직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하며, 이를 위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

31) 국가별 자세한 내부경쟁 또는 경쟁메카니즘에 대해서는 국외 사례에서 자세히 제시함.

직관리라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에 만족하도록 조직과 구성원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경쟁이라는 수단적 도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내부경쟁 적용방안

단일보험자 방식인 국민건강보험체계 내부에 도입하고자 하는 내부경쟁체계의 방향은 기업경쟁과 같이 시장경쟁에서 제시되는 외부경쟁을 목적으로 내부경쟁을 강조하기보다 경쟁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직 내부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질병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를 배제하는 역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와의 외부경쟁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경쟁체제도입은 내부적으로 먼저 경쟁하여 도출된 최선의 수단으로 외부업체와 경쟁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인 완전 시장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적인 경쟁을 통해 지사별, 지역본부별로 다양한 진료비 관리기술, 인센티브 제공 전략을 개발하여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그 경쟁의 성과를 제공하는데 그 본래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경쟁방법으로 Enthoven(1993)은 규제된 또는 관리된 경쟁(regulated or managed competition) 개념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나 교육 분야 등 공공정책분야에서 시장에서 무한경쟁은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서구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분야, 특히 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운영방식의 경직성, 비효율과 비효과성 등의 한계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규제된 또는 관리된 경쟁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시장실패를 사회보장제도로 대응했지만, 그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를 완전시장경쟁방식이 아닌 규제된, 관리된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해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Morone, 2000; 최인덕, 2011에서 재인용).

Enthoven은 관리된 경쟁이 보건의료 시스템에 경쟁과 규제 전략을 혼합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리된 경쟁의 주체에 경쟁기전을 도입되 제도의 형평성 강화, 가입자 참여 확대, 가격탄력적 수요 관리, 위험의 역선택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Enthoven, 1993: 25; 최인덕,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Enthoven의 논거는 미국 보건의료정책의 지나친 시장경쟁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언급된다. 미국보장체계는 의료비용증가 억제, 의료서비스의 환경변화와 전달체계 유연화 추구, 의료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의료소비자 선택을 통한 보건의료 이용의 비용인식 고취를 강조하였다(Enthoven, 1993: 40~41). 서구 복지국가에서 도입한 경쟁방식인 관리된 경쟁 또는 규제된 경쟁방식은 완전 시장경쟁의 개념 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관리와 규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경쟁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관리된 경쟁 또는 규제된 경쟁이 지나친 시장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리고 관료화된 보건의료제도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관리되고 제한적인 경쟁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연대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단일 보험자방식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경쟁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다보험자가 가지는 위험분산의 한계, 재정불균형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일보험자로 통합되었고 조합방식의 일련의 문제점을 극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방식의 경쟁조건을 위해서 조합방식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이나 회귀비용 등 따

른 이점을 감안할 때 제도 자체를 조합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에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진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위해 단일보험자 내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관리된 또는 규제된 경쟁방식을 통합 건강보험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경쟁방식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내부경쟁방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제2절 내부경쟁 적용모형 검토

본 절에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운영에서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경쟁 적용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사별 목표급여비 설정의 기본적인 개념은 최인덕(2011)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사별 특성을 고려한 지사별 가입자 1인당 평균급여비를 추정하고, 이를 가입인구에 적용하여 지사별 총 목표급여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sup>32)</sup>.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일반적인 회귀모형의 경우, 지역이 가지는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급여비 지출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사별 목표진료비 추정을

32) 목표급여비 추정의 배경은 다보험자 방식에서 위험분산 또는 재정이전 방식으로 활용되는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의 위험요인과 같음.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에서도 각 보험자의 가입자 분포, 연령, 성별, 질병중증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재정을 재분배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벨기에 등 다보험자 방식의 운영국가에서도 모두 활용하는 방법임.

위해, 기본적인 현황분석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지역본부별 급여비 증가 추이, 지사들의 다양한 특성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급여비 추정방법 및 추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분석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사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급여비 추정을 위해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는 모형인 지리적 가중회귀분석(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단위의 자료분석에서는 회귀분석이 흔히 사용되는데, 일반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되는 전통적 회귀분석은 관찰들간의 독립성과 오차의 동분산성(homoscedasticity)을 가정하기 때문에 공간적 변이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sup>33)</sup>. 전통적 회귀분석에서는 표집 위치에 상관없이 관찰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종속 변수의 관찰값과 추정값의 차이인 오차(errors)가 상호독립적이며 분산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김두섭&강남준, 2008; Berry & Feldman, 1985; Fox 1991). 그러나 공간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표집된 사례일수록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이 충족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간적 이질성 또는 의존성이라는 하는 특성들이 존재하는 현상을 OLS 회귀모형으로 분석하게 되면 모수 추정치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조동기, 2009).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최소자승법(OLS)의 경우는 독립변수의 효과가 연구대상지역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남을 가정하므로 건강보험과 같이 지사간 다양한 특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간적 변이가 더

33) 일반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회귀분석은 공간적으로 안정되어(Stationary), 위치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함.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일반최소자승법(OLS)와 같은 기존의 통계적 모형들은 연구 지역 전체에 걸쳐 평균적이며 전역적인 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전체 연구대상 범위에 대해서 변수별로 하나의 계수(coefficient)만을 제시하므로 지역적 특성에 관계없이 그 변수의 영향은 연구지역 전체에서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의 경우, 지역별로 각각 다른 계수를 추정함으로써 변수들의 국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의 회귀분석에서 고려할 수 없는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다. 다시 언급하면 회귀구조에 지역적 공간 관계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Fotheringham 외, 2002).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은 다른 예측모형과 마찬가지로 회귀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형들의 장점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 모형들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공간적으로 이질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결과를 GIS 맵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들의 본질과 정확성에 대해 통찰할 수 있고, 공간적 비정상성을 무시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을 해결할 수 있다(강승모, 2011).

다음은 전역적 통계량(OLS)과 국지적 통계량(GWR)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5-4〉 전역적 통계량(OLS)과 국지적 통계량(GWR) 비교

| 전역적 통계 방법        | 국지적 통계 방법       |
|------------------|-----------------|
| 전체 연구지역의 자료요약    | 전역적 통계량의 국지적 분해 |
| 한 가지 결과만 도출      | 서로 다른 결과들이 도출   |
| 지도화할 수 없음        | 지도화할 수 있음       |
| GIS에 부적합         | GIS에 적합         |
| 비공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제약 | 공간적             |
| 공간적 동질성을 강조      | 공간적 이질성을 강조     |
| 규칙성 혹은 법칙탐색      | 예외 혹은 지역적 특징 탐색 |

자료: Fotheringham, A. S., Brunsdon, C. and Charlton, M. 2002.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 the analysis of spatially varying relationships, John Wiley & Sons Ltd. Chichester.

이러한 의미에서 공간적 변이를 고려하는 공간통계분석기법이 발전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의 핵심은 회귀계수를 상수가 아니라 위치의 함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회귀계수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공간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도록 모형화 하는 것인데 알려진 어떤 위치  $\mu$ 에 대해 종속변수  $y$ 와  $m$ 개의 독립변수  $x$ 가 있고, 회귀계수와 오차항이 각각  $\beta$ ,  $\epsilon$ 인 경우 회귀식은 아래 (1)과 같이 표현된다.

$$y_i(\mu_i) = \beta_{0i}(\mu_i) + \beta_{1i}(\mu_i)x_{1i} + \beta_{2i}(\mu_i)x_{2i} + \cdots + \beta_{mi}(\mu_i)x_{mi} + \epsilon_i(\mu_i) \cdots \cdots (1)$$

$y_i$  = 지점  $i$ 에서의 종속변수( $i = 1, 2, \cdots, n$ ),  $n$ 은 관측치

$x_{mi}$  = 지점  $i$ 에서의  $m$ 번째 독립변수

$\beta_{mi}$  = 모형에서 추정된 지점  $i$ 에서의  $m$ 번째 회귀계수(파라미터)

$\epsilon_i$  = 지점  $i$ 에서의 오차항

$\mu_i$  = 지점  $i$ 를 나타내는 공간좌표

식 (1)이 일반적인 회귀모형과 다른 점은 각 항에 ( $\mu$ )가 붙는 것인데, 이는 모수의 추정이 주어진 위치  $\mu$ 에 대해 이루어지고 그 위치에 대해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sup>34)</sup>

## 2. 분석자료

지사 특성을 고려한 지사별 급여비 추정 그리고 추정결과에 따른 지사별 목표 급여비 편차를 분석하기 위해 <표 5-4>와 같은 형태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을 기준으로 발췌된

34)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별로 다른 회귀계수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지역별로 어떤 변수가 진료비와 관련해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함.



자료이며, 제한된 자료수급 상황에서 확보된 자료<sup>35)</sup>임에 따라 분석결과에 대한 한계가 일부 존재하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내부경쟁 도입체계를 위한 향상된 지사별 목표급여비 산출 방법론을 제시인 것을 감안하면 최종 연구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자료는 연구분석의 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사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목표급여비를 추정하고 결과의 정책적 활용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의 일반적 특성, 행정관리, 자격관리, 급여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의료자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해당 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인인구 비율, 여성인구 비율, 남성인구 비율, 지역가입자 비율 그리고 직장가입자 비율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특정 지역에게 이미 주어진 상황임에 따라 추후 목표급여비와 관련된 경쟁체제 도입방안과 연결시킬 수는 없겠으나, 목표급여비 산정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다. 단,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의 특성 상 공간좌표를 포함한 지역의 특성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제외되는 상황은 배제하였다.

행정관리 부분은 해당지사가 관리하는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총직원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3급 이상 직원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4급 이하 직원수, 4급 이하 직원 인건비 비율 그리고 3급 이상 직원 인건비 비율로 구성하였고, 자격관리는 1인당 건강보험료, 지역 장기체납자수 비율, 직장 장기체납자수 비율, 급여관리는 고액환자 비율, 건강관리는 1, 2차 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의료자원은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총의료기관수, 지역 인구 1,000명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35)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최인덕, 2011, “국민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제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제 27권 제 4호에서 활용된 분석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공공의료기관수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1,000명당 약국수로 구성하였다.

### 3. 분석내용 및 방법

내부경쟁 체제를 위한 지사별 목표급여비 산출을 위해, 구성된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지사별 특성을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지사별 목표급여비를 추정하였다. 또한, 각 지사별로 추정된 목표급여비에 지사별 적용인구를 적용하여 지사별 총 목표급여비를 설정하였다.

모형에 활용된 변수는 앞서 제시된 분석자료를 활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및 해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각 변수를 로그로 변환하여 목표급여비를 추정하였다. 또한, 향상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우수성을 나타내기 위해 OLS를 통한 모형적합도도 함께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본적인 자료 분석은 SAS 9.2를 활용하였으며, 목표급여비 추정을 위한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및 분석결과를 GIS맵에 지역분부 및 지사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ArcGIS 10.0을 활용하였다.

〈표 5-5〉 분석자료의 구조

| 구분         | 변수                       | 설명                                                            | 비고    |
|------------|--------------------------|---------------------------------------------------------------|-------|
| 지역의 일반적 특성 | 시군구                      |                                                               | 독립 변수 |
|            | 지역본부                     |                                                               |       |
|            | 지사                       | 178개 지사                                                       |       |
|            | 노인인구 비율                  | 지사별 65세 이상 적용인구/지사별 적용인구                                      |       |
|            | 여성인구 비율                  | 지사별 여성 적용인구/지사별 적용인구                                          |       |
|            | 남성인구 비율                  | 지사별 남성 적용인구/지사별 적용인구                                          |       |
|            | 지역가입자 비율                 | 지사별 지역가입자/지사별 적용인구                                            |       |
|            | 직장가입자 비율                 | 지사별 직장가입자/지사별 적용인구                                            |       |
| 행정 관리      | 지역인구1,000명당 총직원수         | (지사별 총직원수/지사별 적용인구)×1000                                      |       |
|            | 지역인구1,000명당 3급 이상 직원수    | (지사별 3급 이상 직원수 /지사별 적용인구)×1000                                |       |
|            | 지역인구1,000명당 4급 이하 직원수    | (지사별 4급 이하 직원수 /지사별 적용인구)×1000                                |       |
|            | 3급 이상 인건비 비율             | 지사별 3급 이상 인건비/지사별 전체 인건비                                      |       |
|            | 4급 이하 인건비 비율             | 지사별 4급 이하 인건비/지사별 전체 인건비                                      |       |
| 자격 관리      | 1인당 건강보험료                | 지사별 전체 보험료/지사별 적용인구                                           |       |
|            | 지역 장기 체납자수 비율            | 지사별 6개월 이상 지역체납자 /지사별 전체 지역 체납자                               |       |
|            | 직장 장기 체납자수 비율            | 지사별 6개월 이상 직장체납자 /지사별 전체 직장 체납자                               |       |
| 급여 관리      | 고액환자 비율                  | 지사별 500만원이상 고액급여비 지출자수 /지사별 적용인구                              |       |
| 건강 관리      | 건강검진 수검률(1차)             | 지사별 1차 건강검진자 /지사별 1차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       |
|            | 건강검진 수검률(2차)             | 지사별 2차 건강검진자 /지사별 2차 건강검진 수검대상자                               |       |
| 의료 자원 분포   | 지역인구1,000명당 총 의료기관수      | (지사별 총의료기관수/지사별 적용인구)×1000<br>※ 약국 제외                         |       |
|            | 지역인구1,000명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 | (지사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 /지사별 적용인구) ×1000                            |       |
|            | 지역인구1,000명당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 | (지사별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 /지사별 적용인구) ×1000                            |       |
|            | 지역인구1,000명당 공공 의료기관수     | (지사별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관수/지사별 적용인구)×1000<br>※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
|            | 지역인구1,000명당 약국수          | (지사별 약국수/지사별 적용인구)×1000                                       |       |
| 1인당 급여비    |                          | 총급여비/전체 적용인구수                                                 | 종속 변수 |

#### 4. 분석결과

목표급여비 추정을 위해 고려되었던, 지역의 일반적 특성, 행정관리, 자격관리, 급여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의료자원 분포에 대해 지역본부 및 지사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 가. 지역본부 및 지사별 특성분석

###### 1) 지역의 일반적 특성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대비 노인인구수 비율,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대비 여성인구수 비율,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대비 남성인구수 비율,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대비 지역가입자 비율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대비 직장가입자 비율로서 살펴보았다.

노인인구수 비율은 서울지역본부 10.5%, 부산지역본부 10.1%, 대전지역본부 11.5%, 대구지역본부 11.5%, 광주지역본부 12.3% 그리고 경인지역본부 9.1%로서 광주지역본부가 6개 지역본부 중 가장 높았으며, 경인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해당 지역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구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본부는 광주지역본부(53.8%)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인지역본부로 50.5%였다. 직장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지역본부로서 서울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64.8%가 직장가입자였다.

각 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사별 지역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본부는 전체 39개(서울 30개/강원도 9개)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건강보

험 적용인구수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평창영월지사(13.9%)였으며, 가장 낮은 지사는 8.4%로 강동지사였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수 대비 여성인구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노원지사(55.6%)이며, 가장 낮은 지사는 금천지사(49.4%),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대비 지역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행정구역 상 강원도에 위치한 강북지사(65%)이며, 가장 낮은 지사는 영등포북부지사로서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수의 1.2%만이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하동남해지사의 노인인구비율이 17.5%로 부산 지역본부 관할 지사 중 가장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나타냈으며, 여성인구 비율은 부산서부지사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비율은 울산광역시 동구가 관할 지역인 울산동부지사가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 중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여청영지사(16.0%)이며, 여성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대전중부지사(54.0%), 직장가입자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대전유성지사(75.9%)였다.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 중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성군위지사로 17.8%, 여성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진영덕지사(57.1%), 직장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남부지사(7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인 고흥보성지사의 노인인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6%를 나타냈다. 경인지역본부의 경우, 양평지사의 노인인구비율이 13.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인구비율은 의정부지사(53%), 직장가입자 비율은 과천시지가 84.0%로 가장 높았다.

〈표 5-6〉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지사명     | 노인인구<br>비율 | 여성인구<br>비율 | 남성인구<br>비율 | 지역가입<br>자비율 | 직장가입<br>자비율 |
|---------|------------|------------|------------|-------------|-------------|
| 서울지역본부  | 10.5       | 51.8       | 48.2       | 35.2        | 64.8        |
| 강남동부지사  | 10.5       | 51.1       | 48.9       | 7.5         | 92.5        |
| 강남북부지사  | 9.3        | 52.3       | 47.7       | 10.7        | 89.3        |
| 강남서부지사  | 9.9        | 50.8       | 49.2       | 7.4         | 92.6        |
| 강동지사    | 8.4        | 51.8       | 48.2       | 49.9        | 50.1        |
| 강릉지사    | 11.2       | 52.9       | 47.1       | 45.5        | 54.5        |
| 강북지사    | 10.0       | 53.2       | 46.8       | 65.0        | 35.0        |
| 강서지사    | 9.8        | 53.0       | 47.0       | 36.9        | 63.1        |
| 강원동부지사  | 11.9       | 53.0       | 47.0       | 48.6        | 51.4        |
| 강원서부지사  | 11.5       | 53.4       | 46.6       | 40.4        | 59.6        |
| 강원중부지사  | 12.9       | 50.7       | 49.3       | 41.9        | 58.1        |
| 관악지사    | 9.0        | 51.7       | 48.3       | 58.6        | 41.4        |
| 광진지사    | 9.0        | 51.5       | 48.5       | 45.6        | 54.4        |
| 구로지사    | 8.7        | 49.7       | 50.3       | 29.8        | 70.2        |
| 금천지사    | 8.6        | 49.4       | 50.6       | 23.7        | 76.3        |
| 노원지사    | 9.1        | 55.6       | 44.4       | 57.2        | 42.8        |
| 도봉지사    | 9.3        | 51.9       | 48.1       | 63.4        | 36.6        |
| 동대문지사   | 10.2       | 51.6       | 48.4       | 42.6        | 57.4        |
| 동작지사    | 9.8        | 52.1       | 47.9       | 37.6        | 62.4        |
| 동해지사    | 10.6       | 51.8       | 48.2       | 40.0        | 60.0        |
| 마포지사    | 11.0       | 51.6       | 48.4       | 24.0        | 76.0        |
| 삼척지사    | 12.7       | 52.5       | 47.5       | 36.4        | 63.6        |
| 서대문지사   | 11.0       | 53.3       | 46.7       | 47.0        | 53.0        |
| 서초남부지사  | 12.3       | 49.5       | 50.5       | 4.7         | 95.3        |
| 서초북부지사  | 10.4       | 52.2       | 47.8       | 18.6        | 81.4        |
| 성동지사    | 10.0       | 50.8       | 49.2       | 31.3        | 68.7        |
| 성북지사    | 10.1       | 52.8       | 47.2       | 59.2        | 40.8        |
| 송파지사    | 9.3        | 51.2       | 48.8       | 30.1        | 69.9        |
| 양천지사    | 9.2        | 51.9       | 48.1       | 48.3        | 51.7        |
| 영등포남부지사 | 9.5        | 51.0       | 49.0       | 26.1        | 73.9        |
| 영등포북부지사 | 12.3       | 50.0       | 50.1       | 1.2         | 98.8        |
| 용산지사    | 10.9       | 51.4       | 48.6       | 22.9        | 77.1        |
| 원주황성지사  | 10.5       | 52.1       | 47.9       | 42.9        | 57.1        |
| 은평지사    | 9.7        | 53.6       | 46.4       | 63.6        | 36.4        |
| 종로지사    | 11.7       | 51.4       | 48.6       | 10.2        | 89.8        |
| 중구동부지사  | 12.1       | 52.7       | 47.3       | 6.8         | 93.2        |
| 중구서부지사  | 12.0       | 51.7       | 48.3       | 1.5         | 98.5        |
| 중랑지사    | 8.4        | 51.9       | 48.1       | 64.2        | 35.8        |
| 태백정선지사  | 12.6       | 50.6       | 49.4       | 38.3        | 61.7        |
| 평창영월지사  | 13.9       | 51.0       | 49.0       | 44.4        | 55.6        |

〈표 5-7〉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노인인구<br>비율 | 여성인구<br>비율 | 남성인구<br>비율 | 지역가입자<br>비율 | 직장가입자<br>비율 |
|--------|------------|------------|------------|-------------|-------------|
| 부산지역본부 | 10.1       | 51.8       | 48.2       | 39.5        | 60.5        |
| 거제지사   | 8.7        | 47.8       | 52.2       | 23.7        | 76.3        |
| 경남북부지사 | 15.5       | 54.9       | 45.1       | 49.5        | 50.5        |
| 기장지사   | 10.4       | 51.6       | 48.4       | 39.9        | 60.1        |
| 김해지사   | 7.3        | 50.3       | 49.7       | 34.4        | 65.6        |
| 마산지사   | 8.9        | 52.8       | 47.2       | 46.9        | 53.1        |
| 밀양창녕지사 | 12.6       | 53.5       | 46.5       | 48.6        | 51.4        |
| 부산금정지사 | 9.8        | 53.4       | 46.6       | 43.8        | 56.2        |
| 부산남부지사 | 9.9        | 52.9       | 47.1       | 50.1        | 49.9        |
| 부산동래지사 | 9.4        | 53.5       | 46.5       | 53.4        | 46.6        |
| 부산북부지사 | 8.5        | 51.7       | 48.3       | 36.0        | 64.0        |
| 부산사상지사 | 8.1        | 51.0       | 49.1       | 29.9        | 70.1        |
| 부산사하지사 | 8.7        | 52.5       | 47.5       | 40.6        | 59.4        |
| 부산서부지사 | 11.7       | 55.8       | 44.2       | 47.6        | 52.4        |
| 부산연제지사 | 10.5       | 53.6       | 46.4       | 40.0        | 60.0        |
| 부산중부지사 | 11.2       | 51.9       | 48.1       | 29.2        | 70.8        |
| 부산진구지사 | 10.3       | 53.5       | 46.5       | 45.6        | 54.4        |
| 사천지사   | 11.3       | 51.0       | 49.0       | 36.3        | 63.7        |
| 양산지사   | 8.5        | 50.3       | 49.7       | 32.6        | 67.4        |
| 울산남부지사 | 8.3        | 50.1       | 49.9       | 30.1        | 69.9        |
| 울산동부지사 | 10.9       | 48.6       | 51.4       | 15.6        | 84.4        |
| 울산중부지사 | 7.1        | 51.2       | 48.8       | 44.5        | 55.5        |
| 울주지사   | 8.4        | 48.4       | 51.6       | 30.6        | 69.4        |
| 진주산청지사 | 9.9        | 52.7       | 47.3       | 44.2        | 55.8        |
| 진해지사   | 9.3        | 50.0       | 50.0       | 35.6        | 64.4        |
| 창원지사   | 8.6        | 49.3       | 50.7       | 24.8        | 75.2        |
| 통영고성지사 | 10.6       | 50.4       | 49.6       | 47.0        | 53.0        |
| 하동남해지사 | 17.5       | 55.5       | 44.5       | 57.0        | 43.0        |
| 함안의령지사 | 11.3       | 50.1       | 49.9       | 33.2        | 66.8        |
| 해운대지사  | 8.6        | 55.4       | 44.6       | 56.0        | 44.0        |

〈표 5-8〉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노인인구<br>비율 | 여성인구<br>비율 | 남성인구<br>비율 | 지역가입자<br>비율 | 직장가입자<br>비율 |
|--------|------------|------------|------------|-------------|-------------|
| 대전지역본부 | 11.5       | 51.5       | 48.5       | 39.5        | 60.5        |
| 공주지사   | 12.8       | 52.2       | 47.8       | 41.3        | 58.7        |
| 괴산증평지사 | 12.9       | 51.9       | 48.1       | 40.1        | 59.9        |
| 당진지사   | 12.1       | 48.6       | 51.4       | 37.8        | 62.2        |
| 대전동부지사 | 10.7       | 50.8       | 49.2       | 30.5        | 69.5        |
| 대전서부지사 | 8.6        | 53.7       | 46.3       | 40.8        | 59.2        |
| 대전유성지사 | 9.6        | 50.2       | 49.8       | 24.1        | 75.9        |
| 대전중부지사 | 9.5        | 54.0       | 46.0       | 46.7        | 53.3        |
| 보령서천지사 | 13.8       | 53.7       | 46.3       | 50.9        | 49.1        |
| 부여청양지사 | 16.0       | 53.0       | 47.0       | 49.9        | 50.1        |
| 서산태안지사 | 12.5       | 50.8       | 49.2       | 43.7        | 56.3        |
| 아산지사   | 9.8        | 49.7       | 50.3       | 32.9        | 67.1        |
| 연기지사   | 11.1       | 50.7       | 49.3       | 36.1        | 63.9        |
| 예산지사   | 14.3       | 51.6       | 48.4       | 48.1        | 51.9        |
| 음성지사   | 10.2       | 49.1       | 50.9       | 26.2        | 73.8        |
| 제천단양지사 | 11.6       | 53.8       | 46.2       | 48.0        | 52.0        |
| 진천지사   | 10.0       | 48.6       | 51.4       | 24.4        | 75.6        |
| 천안지사   | 8.6        | 50.3       | 49.7       | 35.3        | 64.7        |
| 청주동부지사 | 9.4        | 50.8       | 49.2       | 35.2        | 64.8        |
| 청주서부지사 | 7.9        | 53.0       | 47.0       | 41.2        | 58.8        |
| 충남남동지사 | 11.7       | 50.2       | 49.8       | 36.1        | 63.9        |
| 충북남부지사 | 14.7       | 52.8       | 47.2       | 44.8        | 55.2        |
| 충주지사   | 11.1       | 52.0       | 48.1       | 43.7        | 56.3        |
| 홍성지사   | 14.4       | 52.0       | 48.0       | 50.1        | 49.9        |



〈표 5-9〉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노인인구<br>비율 | 여성인구<br>비율 | 남성인구<br>비율 | 지역가입자<br>비율 | 직장가입자<br>비율 |
|--------|------------|------------|------------|-------------|-------------|
| 대구지역본부 | 11.5       | 53.0       | 47.0       | 43.0        | 57.1        |
| 경북북부지사 | 13.2       | 54.7       | 45.3       | 45.9        | 54.1        |
| 경북서부지사 | 10.4       | 50.6       | 49.4       | 35.5        | 64.5        |
| 경산청도지사 | 10.1       | 52.0       | 48.0       | 38.5        | 61.5        |
| 경주지사   | 10.5       | 50.9       | 49.1       | 35.4        | 64.6        |
| 구미지사   | 8.2        | 49.9       | 50.1       | 30.0        | 70.0        |
| 김천지사   | 12.4       | 53.3       | 46.7       | 44.0        | 56.0        |
| 달성지사   | 9.6        | 50.5       | 49.5       | 34.9        | 65.1        |
| 대구남부지사 | 10.2       | 55.7       | 44.3       | 53.9        | 46.1        |
| 대구달서지사 | 7.8        | 52.6       | 47.4       | 40.3        | 59.7        |
| 대구동부지사 | 9.6        | 53.6       | 46.4       | 51.5        | 48.6        |
| 대구북부지사 | 8.4        | 51.9       | 48.1       | 42.8        | 57.2        |
| 대구수성지사 | 9.3        | 55.1       | 44.9       | 47.9        | 52.1        |
| 대구중부지사 | 9.9        | 52.4       | 47.6       | 39.1        | 60.9        |
| 문경예천지사 | 15.7       | 54.7       | 45.3       | 49.7        | 50.3        |
| 상주지사   | 15.5       | 53.3       | 46.7       | 51.7        | 48.3        |
| 영주봉화지사 | 13.8       | 54.4       | 45.6       | 49.6        | 50.4        |
| 영천지사   | 12.2       | 52.4       | 47.6       | 37.6        | 62.4        |
| 울진영덕지사 | 16.3       | 57.1       | 42.9       | 54.7        | 45.3        |
| 의성군위지사 | 17.8       | 53.3       | 46.7       | 48.6        | 51.4        |
| 포항남부지사 | 11.2       | 49.2       | 50.8       | 22.4        | 77.6        |
| 포항북부지사 | 9.6        | 54.8       | 45.2       | 48.0        | 52.0        |

〈표 5-10〉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노인인구<br>비율 | 여성인구<br>비율 | 남성인구<br>비율 | 지역가입자<br>비율 | 직장가입자<br>비율 |
|--------|------------|------------|------------|-------------|-------------|
| 광주지역본부 | 12.3       | 53.8       | 46.2       | 44.5        | 55.5        |
| 고흥보성지사 | 19.6       | 55.6       | 44.4       | 55.6        | 44.4        |
| 광양구례지사 | 10.7       | 50.8       | 49.2       | 33.8        | 66.2        |
| 광주동부지사 | 9.8        | 55.9       | 44.1       | 44.6        | 55.4        |
| 광주북부지사 | 7.6        | 54.6       | 45.4       | 47.5        | 52.5        |
| 광주서부지사 | 8.5        | 52.6       | 47.4       | 35.1        | 64.9        |
| 군산지사   | 10.0       | 52.5       | 47.5       | 39.3        | 60.7        |
| 김제지사   | 12.8       | 56.2       | 43.8       | 43.6        | 56.4        |
| 나주지사   | 13.2       | 53.1       | 46.9       | 37.0        | 63.0        |
| 남원순창지사 | 14.2       | 56.1       | 43.9       | 46.5        | 53.5        |
| 목포지사   | 9.6        | 53.8       | 46.2       | 43.1        | 56.9        |
| 무안신안지사 | 16.2       | 52.6       | 47.4       | 52.7        | 47.3        |
| 부안고창지사 | 16.2       | 55.5       | 44.5       | 55.5        | 44.5        |
| 서귀포지사  | 10.6       | 52.7       | 47.3       | 52.5        | 47.5        |
| 순천지사   | 9.5        | 54.0       | 46.0       | 46.9        | 53.1        |
| 여수지사   | 10.4       | 52.5       | 47.5       | 43.2        | 56.8        |
| 영광함평지사 | 15.8       | 55.3       | 44.7       | 48.8        | 51.2        |
| 영암장흥지사 | 12.4       | 49.8       | 50.2       | 32.7        | 67.3        |
| 완도강진지사 | 17.2       | 55.5       | 44.5       | 56.7        | 43.3        |
| 익산지사   | 9.2        | 52.3       | 47.7       | 39.5        | 60.5        |
| 전남북부지사 | 13.7       | 52.2       | 47.8       | 35.7        | 64.3        |
| 전북동부지사 | 16.1       | 54.2       | 45.8       | 46.5        | 53.5        |
| 전주남부지사 | 8.9        | 55.3       | 44.7       | 45.8        | 54.2        |
| 전주북부지사 | 9.5        | 52.4       | 47.6       | 38.3        | 61.7        |
| 정읍지사   | 13.3       | 56.1       | 43.9       | 48.6        | 51.4        |
| 제주지사   | 9.5        | 52.4       | 47.6       | 42.2        | 57.8        |
| 해남진도지사 | 16.4       | 55.2       | 44.8       | 54.7        | 45.3        |
| 화순지사   | 12.3       | 52.9       | 47.1       | 35.8        | 64.2        |

〈표 5-11〉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노인인구<br>비율 | 여성인구<br>비율 | 남성인구<br>비율 | 지역가입자<br>비율 | 직장가입자<br>비율 |
|---------|------------|------------|------------|-------------|-------------|
| 경인지역본부  | 9.1        | 50.5       | 49.5       | 40.7        | 59.3        |
| 경기광주지사  | 8.1        | 48.3       | 51.7       | 34.9        | 65.1        |
| 고양지사    | 8.8        | 52.0       | 48.0       | 48.6        | 51.4        |
| 과천지사    | 12.3       | 50.1       | 49.9       | 16.0        | 84.0        |
| 광명지사    | 9.3        | 52.0       | 48.0       | 51.7        | 48.3        |
| 구리지사    | 7.9        | 52.3       | 47.7       | 54.0        | 46.0        |
| 군포지사    | 8.4        | 51.1       | 48.9       | 37.8        | 62.2        |
| 김포지사    | 8.7        | 48.4       | 51.6       | 33.1        | 66.9        |
| 남양주가평지사 | 8.8        | 51.0       | 49.0       | 57.4        | 42.6        |
| 동두천연천지사 | 11.4       | 51.8       | 48.2       | 51.5        | 48.5        |
| 부천남부지사  | 7.7        | 52.4       | 47.6       | 62.2        | 37.8        |
| 부천북부지사  | 7.3        | 51.1       | 48.9       | 43.7        | 56.3        |
| 성남남부지사  | 11.8       | 50.5       | 49.5       | 18.3        | 81.7        |
| 성남북부지사  | 8.5        | 50.1       | 49.9       | 45.0        | 55.0        |
| 수원동부지사  | 8.8        | 51.1       | 48.9       | 21.6        | 78.4        |
| 수원서부지사  | 8.3        | 51.6       | 48.4       | 49.2        | 50.8        |
| 시흥지사    | 7.2        | 48.1       | 51.9       | 33.5        | 66.5        |
| 안산지사    | 7.5        | 49.7       | 50.3       | 37.2        | 62.8        |
| 안성지사    | 9.8        | 49.9       | 50.1       | 32.2        | 67.8        |
| 안양동안지사  | 9.9        | 50.4       | 49.6       | 26.6        | 73.4        |
| 안양만안지사  | 8.8        | 51.0       | 49.0       | 47.1        | 52.9        |
| 양주지사    | 8.4        | 48.6       | 51.4       | 38.5        | 61.5        |
| 양평지사    | 13.1       | 51.4       | 48.6       | 56.6        | 43.4        |
| 여주지사    | 11.4       | 51.3       | 48.7       | 45.6        | 54.4        |
| 오산지사    | 7.6        | 51.4       | 48.6       | 47.2        | 52.8        |
| 용인지사    | 9.2        | 50.8       | 49.2       | 41.1        | 58.9        |
| 의왕지사    | 8.9        | 50.6       | 49.4       | 44.4        | 55.6        |
| 의정부지사   | 8.7        | 53.0       | 47.0       | 58.5        | 41.5        |
| 이천지사    | 9.4        | 51.1       | 48.9       | 29.3        | 70.7        |
| 인천계양지사  | 7.2        | 51.7       | 48.3       | 55.8        | 44.2        |
| 인천남동지사  | 8.4        | 50.2       | 49.8       | 32.4        | 67.6        |
| 인천남부지사  | 8.9        | 52.2       | 47.8       | 51.8        | 48.2        |
| 인천부평지사  | 9.2        | 51.8       | 48.2       | 43.6        | 56.4        |
| 인천서부지사  | 8.5        | 49.5       | 50.5       | 37.2        | 62.8        |
| 인천중부지사  | 11.3       | 50.0       | 50.0       | 27.5        | 72.5        |
| 파주지사    | 9.4        | 50.1       | 50.0       | 38.0        | 62.0        |
| 평택지사    | 9.5        | 49.7       | 50.3       | 32.3        | 67.7        |
| 포천지사    | 9.4        | 48.3       | 51.7       | 36.9        | 63.1        |
| 하남지사    | 8.1        | 49.6       | 50.4       | 46.3        | 53.7        |
| 화성지사    | 8.8        | 47.3       | 52.7       | 24.1        | 75.9        |

## 2) 행정관리

지역본부별 행정관리 특성은 직원수 및 그 직원들의 인건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사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직원수 및 인건비 비율을 3급 이상의 관리직과 4급 이하의 일반직원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광주지역본부의 경우,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역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총직원수는 0.25명으로, 6개의 지역본부 중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지역본부 0.23명, 대전지역본부 0.21명, 부산지역본부 0.19명, 서울지역본부 0.17명, 경인지역본부 0.15명 순이었다.

경인지역본부 3급 이상의 관리직들의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26.4% 수준으로 6개 지역본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광주지역본부 25.9%, 서울지역본부 25.8%, 대전지역본부 25.3%, 대구지역본부 23.6% 그리고 부산지역본부 23.1%순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본부별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전체 직원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강원동부지사(0.33명)였으며, 가장 적은 지사는 영등포북부지사(0.0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급 이상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영등포북부지사(33.2%), 가장 낮은 지사는 송파지사(18.9%)였다.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전체 직원수 및 그들의 인건비 분포를 살펴보면, 하동남해지사가 0.38명으로 가장 많으며, 울산동부지사가 0.09명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인건비 중 3급 이상 관리직 직원들의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하동남해지사(25.9%)이며, 가장 낮은 지사는 부산사하지사(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전체 직원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괴산증평지사(0.35명), 가장 적은 지사는 대전동부지사(0.12명)이었다. 전체 인건비 중 3급 이상 직원들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당진지사(30.1%)이며, 가장 낮은 지사는

대전중부지사(21.2%)였다.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건강보험 적용 인구 1,000명당 전체 직원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울진영덕지사(0.37명), 가장 적은 지사는 구미지사(0.12명)이었다. 전체 인건비 중 3급 이상 직원들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울진영덕지사(28.6%)이며, 가장 낮은 지사는 대구중부지사(19.4%)였다.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전체 직원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전북 동부지사로 전국 178개 지사 중 가장 많은 0.40명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사는 광주서부지사(0.13명)이었다. 전체 인건비 중 3급 이상 직원들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전남북부지사(31.0%)이며, 가장 낮은 지사는 전주북부지사(20.4%)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전체 직원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동두천연천지사로 0.23명이었다. 전체 인건비 중 3급 이상 직원들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과천시사로 경인지역본부 평균보다 10%p정도 높은 36.0%였고, 가장 낮은 지사는 고양지사(19.2%)으로 조사되었다.

〈표 5-12〉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구분     | 인구 1,000명당 직원수 |       |       | 인건비 비율 |       |
|--------|----------------|-------|-------|--------|-------|
|        | 전체             | 3급 이상 | 4급 이하 | 3급 이상  | 4급 이하 |
| 서울지역본부 | 0.17           | 0.04  | 0.13  | 25.8   | 74.2  |
| 강남동부지사 | 0.07           | 0.01  | 0.06  | 21.7   | 78.3  |
| 강남북부지사 | 0.11           | 0.02  | 0.08  | 26.5   | 73.5  |
| 강남서부지사 | 0.08           | 0.02  | 0.06  | 26.0   | 74.0  |
| 강동지사   | 0.15           | 0.03  | 0.12  | 26.9   | 73.1  |
| 강릉지사   | 0.25           | 0.06  | 0.19  | 30.6   | 69.4  |
| 강북지사   | 0.19           | 0.04  | 0.15  | 25.7   | 74.3  |
| 강서지사   | 0.14           | 0.03  | 0.11  | 24.7   | 75.3  |

| 구분      | 인구 1,000명당 직원수 |       |       | 인건비 비율 |       |
|---------|----------------|-------|-------|--------|-------|
|         | 전체             | 3급 이상 | 4급 이하 | 3급 이상  | 4급 이하 |
| 강원동부지사  | 0.33           | 0.07  | 0.26  | 26.1   | 73.9  |
| 강원서부지사  | 0.24           | 0.04  | 0.19  | 22.1   | 77.9  |
| 강원중부지사  | 0.32           | 0.08  | 0.25  | 26.9   | 73.1  |
| 관악지사    | 0.18           | 0.03  | 0.14  | 24.8   | 75.2  |
| 광진지사    | 0.15           | 0.03  | 0.12  | 26.9   | 73.1  |
| 구로지사    | 0.12           | 0.02  | 0.10  | 25.1   | 74.9  |
| 금천지사    | 0.11           | 0.03  | 0.09  | 28.7   | 71.3  |
| 노원지사    | 0.19           | 0.04  | 0.15  | 26.7   | 73.3  |
| 도봉지사    | 0.20           | 0.05  | 0.15  | 26.9   | 73.1  |
| 동대문지사   | 0.16           | 0.03  | 0.13  | 24.3   | 75.7  |
| 동작지사    | 0.14           | 0.03  | 0.12  | 23.5   | 76.5  |
| 동해지사    | 0.28           | 0.07  | 0.21  | 28.0   | 72.0  |
| 마포지사    | 0.12           | 0.02  | 0.09  | 24.7   | 75.3  |
| 삼척지사    | 0.29           | 0.07  | 0.22  | 27.2   | 72.8  |
| 서대문지사   | 0.18           | 0.03  | 0.14  | 23.2   | 76.8  |
| 서초남부지사  | 0.07           | 0.01  | 0.05  | 26.8   | 73.2  |
| 서초북부지사  | 0.11           | 0.03  | 0.09  | 27.7   | 72.3  |
| 성동지사    | 0.14           | 0.03  | 0.11  | 26.0   | 74.0  |
| 성북지사    | 0.16           | 0.03  | 0.13  | 22.1   | 77.9  |
| 송파지사    | 0.12           | 0.02  | 0.10  | 18.9   | 81.1  |
| 양천지사    | 0.16           | 0.04  | 0.12  | 27.0   | 73.0  |
| 영등포남부지사 | 0.12           | 0.03  | 0.10  | 25.9   | 74.1  |
| 영등포북부지사 | 0.06           | 0.02  | 0.04  | 33.2   | 66.8  |
| 용산지사    | 0.12           | 0.02  | 0.09  | 26.4   | 73.6  |
| 원주황성지사  | 0.19           | 0.04  | 0.15  | 24.4   | 75.6  |
| 은평지사    | 0.18           | 0.03  | 0.15  | 21.8   | 78.2  |
| 종로지사    | 0.09           | 0.02  | 0.07  | 24.0   | 76.0  |
| 중구동부지사  | 0.08           | 0.02  | 0.06  | 25.6   | 74.4  |
| 중구서부지사  | 0.07           | 0.02  | 0.05  | 29.5   | 70.5  |
| 중랑지사    | 0.18           | 0.04  | 0.14  | 24.9   | 75.1  |
| 태백정선지사  | 0.33           | 0.08  | 0.24  | 29.8   | 70.2  |
| 평창영월지사  | 0.31           | 0.06  | 0.24  | 24.5   | 75.5  |

〈표 5-13〉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구분     | 인구 1,000명당 직원수 |       |       | 인건비 비율 |       |
|--------|----------------|-------|-------|--------|-------|
|        | 전체             | 3급 이상 | 4급 이하 | 3급 이상  | 4급 이하 |
| 부산지역본부 | 0.19           | 0.04  | 0.16  | 23.1   | 76.9  |
| 거제지사   | 0.12           | 0.02  | 0.10  | 20.1   | 79.9  |
| 경남북부지사 | 0.34           | 0.08  | 0.27  | 25.4   | 74.6  |
| 기장지사   | 0.19           | 0.05  | 0.14  | 29.3   | 70.7  |
| 김해지사   | 0.14           | 0.03  | 0.11  | 23.4   | 76.6  |
| 마산지사   | 0.20           | 0.04  | 0.17  | 21.8   | 78.2  |
| 밀양창녕지사 | 0.26           | 0.04  | 0.22  | 20.1   | 79.9  |
| 부산금정지사 | 0.20           | 0.04  | 0.17  | 20.2   | 79.8  |
| 부산남부지사 | 0.18           | 0.03  | 0.15  | 19.9   | 80.1  |
| 부산동래지사 | 0.21           | 0.03  | 0.17  | 18.9   | 81.1  |
| 부산북부지사 | 0.15           | 0.03  | 0.13  | 21.1   | 78.9  |
| 부산사상지사 | 0.17           | 0.03  | 0.14  | 22.8   | 77.2  |
| 부산사하지사 | 0.16           | 0.02  | 0.14  | 17.9   | 82.1  |
| 부산서부지사 | 0.29           | 0.06  | 0.23  | 23.4   | 76.6  |
| 부산연제지사 | 0.19           | 0.03  | 0.16  | 20.7   | 79.3  |
| 부산중부지사 | 0.16           | 0.03  | 0.13  | 21.3   | 78.7  |
| 부산진구지사 | 0.19           | 0.04  | 0.15  | 22.6   | 77.4  |
| 사천지사   | 0.19           | 0.05  | 0.14  | 27.5   | 72.5  |
| 양산지사   | 0.15           | 0.03  | 0.12  | 22.6   | 77.4  |
| 울산남부지사 | 0.14           | 0.03  | 0.11  | 24.3   | 75.7  |
| 울산동부지사 | 0.09           | 0.02  | 0.08  | 22.9   | 77.1  |
| 울산중부지사 | 0.17           | 0.04  | 0.13  | 26.5   | 73.5  |
| 울주지사   | 0.13           | 0.03  | 0.10  | 28.0   | 72.0  |
| 진주산청지사 | 0.22           | 0.04  | 0.18  | 22.0   | 78.0  |
| 진해지사   | 0.19           | 0.04  | 0.15  | 24.1   | 75.9  |
| 창원지사   | 0.13           | 0.02  | 0.11  | 21.0   | 79.0  |
| 통영고성지사 | 0.21           | 0.05  | 0.17  | 24.5   | 75.5  |
| 하동남해지사 | 0.38           | 0.10  | 0.28  | 29.5   | 70.5  |
| 함안의령지사 | 0.26           | 0.06  | 0.21  | 25.9   | 74.1  |
| 해운대지사  | 0.20           | 0.04  | 0.16  | 22.2   | 77.8  |

〈표 5-14〉 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구분     | 인구 1,000명당 직원수 |       |       | 인건비 비율 |       |
|--------|----------------|-------|-------|--------|-------|
|        | 전체             | 3급 이상 | 4급 이하 | 3급 이상  | 4급 이하 |
| 대전지역본부 | 0.21           | 0.05  | 0.16  | 25.3   | 74.7  |
| 공주지사   | 0.20           | 0.04  | 0.15  | 26.8   | 73.2  |
| 괴산증평지사 | 0.35           | 0.08  | 0.27  | 25.9   | 74.1  |
| 당진지사   | 0.14           | 0.04  | 0.10  | 30.1   | 69.9  |
| 대전동부지사 | 0.12           | 0.02  | 0.10  | 23.0   | 77.0  |
| 대전서부지사 | 0.17           | 0.03  | 0.14  | 23.8   | 76.2  |
| 대전유성지사 | 0.13           | 0.02  | 0.10  | 22.1   | 77.9  |
| 대전중부지사 | 0.25           | 0.04  | 0.21  | 21.2   | 78.8  |
| 보령서천지사 | 0.27           | 0.06  | 0.21  | 25.2   | 74.8  |
| 부여청양지사 | 0.31           | 0.07  | 0.24  | 26.7   | 73.3  |
| 서산태안지사 | 0.18           | 0.04  | 0.14  | 27.8   | 72.2  |
| 아산지사   | 0.12           | 0.02  | 0.10  | 23.5   | 76.5  |
| 연기지사   | 0.24           | 0.05  | 0.18  | 25.8   | 74.2  |
| 예산지사   | 0.28           | 0.07  | 0.21  | 29.0   | 71.0  |
| 음성지사   | 0.16           | 0.04  | 0.12  | 28.7   | 71.3  |
| 제천단양지사 | 0.27           | 0.06  | 0.21  | 24.5   | 75.5  |
| 진천지사   | 0.21           | 0.05  | 0.17  | 25.6   | 74.4  |
| 천안지사   | 0.13           | 0.02  | 0.11  | 23.2   | 76.8  |
| 청주동부지사 | 0.15           | 0.03  | 0.12  | 22.0   | 78.0  |
| 청주서부지사 | 0.17           | 0.03  | 0.14  | 22.6   | 77.4  |
| 충남남동지사 | 0.19           | 0.04  | 0.15  | 24.4   | 75.6  |
| 충북남부지사 | 0.28           | 0.06  | 0.22  | 24.9   | 75.1  |
| 충주지사   | 0.20           | 0.04  | 0.16  | 24.1   | 75.9  |
| 홍성지사   | 0.26           | 0.07  | 0.19  | 30.2   | 69.8  |



〈표 5-15〉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구분     | 인구 1,000명당 직원수 |       |       | 인건비 비율 |       |
|--------|----------------|-------|-------|--------|-------|
|        | 전체             | 3급 이상 | 4급 이하 | 3급 이상  | 4급 이하 |
| 대구지역본부 | 0.23           | 0.05  | 0.18  | 23.6   | 76.4  |
| 경북북부지사 | 0.29           | 0.07  | 0.22  | 27.4   | 72.6  |
| 경북서부지사 | 0.19           | 0.04  | 0.15  | 23.8   | 76.2  |
| 경산청도지사 | 0.19           | 0.04  | 0.15  | 25.6   | 74.4  |
| 경주지사   | 0.16           | 0.04  | 0.13  | 25.8   | 74.2  |
| 구미지사   | 0.12           | 0.03  | 0.10  | 26.1   | 73.9  |
| 김천지사   | 0.24           | 0.05  | 0.19  | 23.8   | 76.2  |
| 달성지사   | 0.18           | 0.03  | 0.15  | 19.9   | 80.1  |
| 대구남부지사 | 0.26           | 0.05  | 0.22  | 21.7   | 78.3  |
| 대구달서지사 | 0.16           | 0.03  | 0.14  | 20.1   | 79.9  |
| 대구동부지사 | 0.22           | 0.04  | 0.18  | 21.3   | 78.7  |
| 대구북부지사 | 0.18           | 0.03  | 0.14  | 21.4   | 78.6  |
| 대구수성지사 | 0.20           | 0.03  | 0.17  | 21.1   | 78.9  |
| 대구중부지사 | 0.19           | 0.03  | 0.16  | 19.4   | 80.6  |
| 문경예천지사 | 0.32           | 0.07  | 0.25  | 24.5   | 75.5  |
| 상주지사   | 0.29           | 0.06  | 0.23  | 26.3   | 73.7  |
| 영주봉화지사 | 0.26           | 0.05  | 0.21  | 21.0   | 79.0  |
| 영천지사   | 0.22           | 0.04  | 0.18  | 22.4   | 77.6  |
| 울진영덕지사 | 0.37           | 0.09  | 0.28  | 28.6   | 71.4  |
| 의성군위지사 | 0.37           | 0.08  | 0.29  | 24.4   | 75.6  |
| 포항남부지사 | 0.13           | 0.03  | 0.10  | 25.1   | 74.9  |
| 포항북부지사 | 0.20           | 0.04  | 0.15  | 25.2   | 74.8  |

〈표 5-16〉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구분     | 인구 1,000명당 직원수 |       |       | 인건비 비율 |       |
|--------|----------------|-------|-------|--------|-------|
|        | 전체             | 3급 이상 | 4급 이하 | 3급 이상  | 4급 이하 |
| 광주지역본부 | 0.25           | 0.06  | 0.19  | 25.9   | 74.1  |
| 고흥보성지사 | 0.31           | 0.06  | 0.24  | 24.2   | 75.8  |
| 광양구례지사 | 0.19           | 0.05  | 0.15  | 28.5   | 71.5  |
| 광주동부지사 | 0.19           | 0.04  | 0.15  | 25.0   | 75.0  |
| 광주북부지사 | 0.18           | 0.04  | 0.14  | 24.8   | 75.2  |
| 광주서부지사 | 0.13           | 0.03  | 0.10  | 25.2   | 74.8  |
| 군산지사   | 0.24           | 0.05  | 0.19  | 22.8   | 77.2  |
| 김제지사   | 0.27           | 0.06  | 0.21  | 27.6   | 72.4  |
| 나주지사   | 0.23           | 0.05  | 0.18  | 26.1   | 73.9  |
| 남원순창지사 | 0.34           | 0.08  | 0.26  | 25.7   | 74.3  |
| 목포지사   | 0.19           | 0.03  | 0.15  | 22.4   | 77.6  |
| 무안신안지사 | 0.29           | 0.06  | 0.23  | 25.3   | 74.7  |
| 부안고창지사 | 0.35           | 0.08  | 0.27  | 25.5   | 74.5  |
| 서귀포지사  | 0.25           | 0.05  | 0.20  | 23.4   | 76.6  |
| 순천지사   | 0.21           | 0.05  | 0.16  | 30.0   | 70.0  |
| 여수지사   | 0.19           | 0.05  | 0.14  | 29.5   | 70.5  |
| 영광함평지사 | 0.30           | 0.08  | 0.22  | 30.2   | 69.8  |
| 영암장흥지사 | 0.22           | 0.05  | 0.16  | 27.3   | 72.7  |
| 완도강진지사 | 0.34           | 0.08  | 0.26  | 27.3   | 72.7  |
| 익산지사   | 0.20           | 0.04  | 0.16  | 24.2   | 75.8  |
| 전남북부지사 | 0.27           | 0.07  | 0.19  | 31.0   | 69.0  |
| 전북동부지사 | 0.40           | 0.09  | 0.31  | 26.3   | 73.7  |
| 전주남부지사 | 0.21           | 0.04  | 0.17  | 23.3   | 76.7  |
| 전주북부지사 | 0.19           | 0.03  | 0.16  | 20.4   | 79.6  |
| 정읍지사   | 0.27           | 0.05  | 0.21  | 23.7   | 76.3  |
| 제주지사   | 0.17           | 0.03  | 0.14  | 22.9   | 77.1  |
| 해남진도지사 | 0.31           | 0.07  | 0.24  | 25.0   | 75.0  |
| 화순지사   | 0.28           | 0.07  | 0.21  | 30.6   | 69.4  |

〈표 5-17〉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행정관리 특성

| 구분      | 인구 1,000명당 직원수 |       |       | 인건비 비율 |       |
|---------|----------------|-------|-------|--------|-------|
|         | 전체             | 3급 이상 | 4급 이하 | 3급 이상  | 4급 이하 |
| 경인지역본부  | 0.15           | 0.03  | 0.12  | 26.4   | 73.6  |
| 경기광주지사  | 0.14           | 0.03  | 0.11  | 27.2   | 72.8  |
| 고양지사    | 0.14           | 0.02  | 0.12  | 19.2   | 80.8  |
| 과천지사    | 0.14           | 0.04  | 0.10  | 36.0   | 64.0  |
| 광명지사    | 0.19           | 0.05  | 0.14  | 30.6   | 69.4  |
| 구리지사    | 0.20           | 0.04  | 0.16  | 25.6   | 74.4  |
| 군포지사    | 0.16           | 0.03  | 0.13  | 22.8   | 77.2  |
| 김포지사    | 0.14           | 0.03  | 0.11  | 24.7   | 75.3  |
| 남양주가평지사 | 0.15           | 0.03  | 0.12  | 26.4   | 73.6  |
| 동두천연천지사 | 0.23           | 0.06  | 0.17  | 32.0   | 68.0  |
| 부천남부지사  | 0.23           | 0.05  | 0.18  | 25.1   | 74.9  |
| 부천북부지사  | 0.13           | 0.02  | 0.11  | 23.9   | 76.1  |
| 성남남부지사  | 0.09           | 0.02  | 0.07  | 24.3   | 75.7  |
| 성남북부지사  | 0.14           | 0.03  | 0.11  | 27.1   | 72.9  |
| 수원동부지사  | 0.09           | 0.02  | 0.07  | 23.4   | 76.6  |
| 수원서부지사  | 0.13           | 0.03  | 0.10  | 25.2   | 74.8  |
| 시흥지사    | 0.12           | 0.02  | 0.10  | 24.7   | 75.3  |
| 안산지사    | 0.12           | 0.02  | 0.10  | 21.5   | 78.5  |
| 안성지사    | 0.14           | 0.03  | 0.11  | 30.0   | 70.0  |
| 안양동안지사  | 0.12           | 0.02  | 0.10  | 24.5   | 75.5  |
| 안양단안지사  | 0.17           | 0.04  | 0.14  | 25.6   | 74.4  |
| 양주지사    | 0.14           | 0.03  | 0.11  | 27.7   | 72.3  |
| 양평지사    | 0.21           | 0.06  | 0.15  | 32.4   | 67.6  |
| 여주지사    | 0.20           | 0.05  | 0.15  | 31.4   | 68.6  |
| 오산지사    | 0.17           | 0.04  | 0.13  | 28.6   | 71.4  |
| 용인지사    | 0.12           | 0.02  | 0.09  | 25.9   | 74.1  |
| 의왕지사    | 0.19           | 0.04  | 0.15  | 26.8   | 73.2  |
| 의정부지사   | 0.15           | 0.03  | 0.12  | 27.3   | 72.7  |
| 이천지사    | 0.12           | 0.03  | 0.10  | 25.0   | 75.0  |
| 인천계양지사  | 0.17           | 0.04  | 0.13  | 28.7   | 71.3  |
| 인천남동지사  | 0.12           | 0.02  | 0.09  | 23.6   | 76.4  |
| 인천남부지사  | 0.15           | 0.03  | 0.12  | 24.3   | 75.7  |
| 인천부평지사  | 0.14           | 0.03  | 0.11  | 25.4   | 74.6  |
| 인천서부지사  | 0.14           | 0.03  | 0.11  | 26.8   | 73.2  |
| 인천중부지사  | 0.13           | 0.02  | 0.11  | 20.1   | 79.9  |
| 파주지사    | 0.13           | 0.03  | 0.10  | 30.3   | 69.7  |
| 평택지사    | 0.11           | 0.02  | 0.09  | 22.6   | 77.4  |
| 포천지사    | 0.15           | 0.04  | 0.11  | 29.6   | 70.4  |
| 하남지사    | 0.17           | 0.04  | 0.14  | 25.7   | 74.3  |
| 화성지사    | 0.08           | 0.02  | 0.06  | 27.2   | 72.8  |

### 3) 자격 및 급여관리

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별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에 대한 분석은 자격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료, 지역/직장 장기 체납자 비율 그리고 급여관리 측면에서는 고액환자 비율(연간 급여비 5 백만원 이상 지출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료는 서울지역본부가 약 3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경인지역본부로서 약 3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 장기 체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본부는 광주 지역본부로서 52.9%였으며, 직장 장기 체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본부는 서울지역본부로서 타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큰 20.3%로 나타났다. 고액환자비율은 광주지역본부가 1.8%로 가장 높았다.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을 지역본부 관할 지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동작지사에 소속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인당 연평균 보험료가 약 5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사는 강원중부지사로 연평균 1인당 보험료가 약 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체납자 비율은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지역 장기 체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중구서부지사(58.3%), 최저인 지사는 영등포북부지사(40.3%)로 나타났다. 직장 장기 체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태백정선지사(34.4%)이며, 최저인 지사는 노원지사(8.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관리 측면에 있어, 전체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연간 급여비가 500만원 이상인 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태백정산지사가 1.6%로 가장 높았고, 금천지사가 1.2%로 가장 낮았다.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을 살펴보면, 울산 동부지사가 1인당 연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약 44만원 정도였으며, 최저는 하동남해지사 약 2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장기체납자 비

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부산서부지사(58.2%), 직장 장기채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부산금정지사(21.4%), 고액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함안의령지사(2.2%)였다.

대전지역본부의 경우, 1인당 연평균 보험료는 대전유성지사가 353,016원으로 가장 높았고, 장기 채납자 비율은 지역은 천안지사(54.1%), 직장은 대전유성지사가 26.8%로 가장 높았다. 고액환자 비율 및 부여청양지사가 각각 2.0%, 3.3으로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 중 가장 높았다.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1인당 연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사는 대구수성지사, 채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지역은 대구남부지사(57.5%), 직장은 대구동부지사(24.8%), 고액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울진영덕지사(2.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 중 1인당 연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사는 성남남부지사, 가장 낮은 지사는 동두천연천지사였으며, 지역 장기채납자 비율은 안산지사, 직장 장기채납자 비율은 부천북부지사가 가장 높았다. 급여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액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사는 양평지사, 가장 낮은 지사는 오산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구분     | 1인당 연평균<br>보험료(원) | 장기 채납자 비율(%) |      | 고액환자 비율<br>(%) |
|--------|-------------------|--------------|------|----------------|
|        |                   | 지역           | 직장   |                |
| 서울지역본부 | 359,074           | 51.2         | 20.3 | 1.4            |
| 강남동부지사 | 432,086           | 48.7         | 33.0 | 1.4            |
| 강남북부지사 | 423,738           | 56.8         | 23.6 | 1.2            |
| 강남서부지사 | 407,738           | 54.5         | 25.1 | 1.3            |
| 강동지사   | 376,722           | 51.9         | 21.0 | 1.3            |
| 강릉지사   | 274,758           | 52.4         | 26.6 | 1.5            |
| 강북지사   | 337,426           | 52.4         | 16.6 | 1.4            |

| 구분      | 1인당 연평균<br>보험료(원) | 장기 체납자 비율(%) |      | 고액환자 비율<br>(%) |
|---------|-------------------|--------------|------|----------------|
|         |                   | 지역           | 직장   |                |
| 강서지사    | 380,442           | 47.9         | 14.2 | 1.4            |
| 강원동부지사  | 252,332           | 55.1         | 15.3 | 1.5            |
| 강원서부지사  | 269,023           | 48.4         | 21.2 | 1.4            |
| 강원중부지사  | 198,043           | 48.0         | 20.5 | 1.5            |
| 관악지사    | 353,564           | 50.6         | 11.6 | 1.3            |
| 광진지사    | 365,371           | 52.3         | 22.3 | 1.3            |
| 구로지사    | 350,040           | 50.0         | 20.1 | 1.2            |
| 금천지사    | 309,965           | 53.5         | 11.4 | 1.2            |
| 노원지사    | 392,309           | 43.3         | 8.5  | 1.3            |
| 도봉지사    | 367,198           | 46.6         | 16.2 | 1.3            |
| 동대문지사   | 380,490           | 54.0         | 21.7 | 1.4            |
| 동작지사    | 564,134           | 46.1         | 18.4 | 1.4            |
| 동해지사    | 249,545           | 56.7         | 16.3 | 1.5            |
| 마포지사    | 362,847           | 49.9         | 20.9 | 1.4            |
| 삼척지사    | 242,637           | 53.6         | 26.6 | 1.5            |
| 서대문지사   | 387,678           | 49.6         | 14.5 | 1.5            |
| 서초남부지사  | 457,471           | 49.3         | 30.5 | 1.6            |
| 서초북부지사  | 375,616           | 50.9         | 25.8 | 1.4            |
| 성동지사    | 352,045           | 51.9         | 15.1 | 1.4            |
| 성북지사    | 380,680           | 50.1         | 14.5 | 1.4            |
| 송파지사    | 389,211           | 50.1         | 25.2 | 1.3            |
| 양천지사    | 389,847           | 49.2         | 14.3 | 1.3            |
| 영등포남부지사 | 329,990           | 53.3         | 25.9 | 1.3            |
| 영등포북부지사 | 477,585           | 40.3         | 20.0 | 1.6            |
| 용산지사    | 361,550           | 53.8         | 21.7 | 1.4            |
| 원주횡성지사  | 288,733           | 50.2         | 11.9 | 1.3            |
| 은평지사    | 351,217           | 50.5         | 20.3 | 1.4            |
| 종로지사    | 436,402           | 52.9         | 23.5 | 1.5            |
| 중구동부지사  | 443,392           | 52.2         | 22.5 | 1.5            |
| 중구서부지사  | 454,085           | 58.3         | 19.1 | 1.5            |
| 중랑지사    | 331,272           | 52.5         | 23.3 | 1.3            |
| 태백정선지사  | 267,755           | 55.8         | 34.4 | 1.6            |
| 평창영월지사  | 238,948           | 51.2         | 18.1 | 1.6            |

〈표 5-19〉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구분     | 1인당 연평균<br>보험료(원) | 장기 체납자 비율(%) |      | 고액환자 비율<br>(%) |
|--------|-------------------|--------------|------|----------------|
|        |                   | 지역           | 직장   |                |
| 부산지역본부 | 310,571           | 51.8         | 13.9 | 1.6            |
| 거제지사   | 365,259           | 50.5         | 16.5 | 1.6            |
| 경남북부지사 | 217,799           | 48.3         | 13.3 | 1.8            |
| 기장지사   | 277,221           | 49.9         | 11.8 | 1.6            |
| 김해지사   | 295,088           | 49.4         | 16.8 | 1.4            |
| 마산지사   | 320,699           | 54.2         | 12.7 | 1.7            |
| 밀양창녕지사 | 257,987           | 52.5         | 10.4 | 1.9            |
| 부산금정지사 | 310,187           | 51.4         | 21.4 | 1.6            |
| 부산남부지사 | 316,113           | 51.0         | 12.5 | 1.6            |
| 부산동래지사 | 335,463           | 50.4         | 19.6 | 1.5            |
| 부산북부지사 | 322,837           | 48.7         | 8.2  | 1.5            |
| 부산사상지사 | 299,711           | 51.8         | 18.7 | 1.4            |
| 부산사하지사 | 311,040           | 50.5         | 10.4 | 1.5            |
| 부산서부지사 | 320,384           | 58.2         | 20.8 | 1.9            |
| 부산연제지사 | 330,565           | 51.8         | 14.1 | 1.6            |
| 부산중부지사 | 352,365           | 56.7         | 15.5 | 1.8            |
| 부산진구지사 | 327,849           | 53.9         | 14.2 | 1.6            |
| 사천지사   | 280,431           | 52.7         | 12.5 | 1.6            |
| 양산지사   | 290,804           | 51.0         | 8.2  | 1.4            |
| 울산남부지사 | 367,869           | 55.5         | 18.9 | 1.4            |
| 울산동부지사 | 443,221           | 52.1         | 6.6  | 1.8            |
| 울산중부지사 | 352,537           | 53.0         | 15.3 | 1.3            |
| 울주지사   | 305,453           | 48.8         | 12.0 | 1.4            |
| 진주산청지사 | 285,368           | 50.2         | 17.0 | 1.4            |
| 진해지사   | 288,290           | 52.9         | 9.6  | 1.5            |
| 창원지사   | 332,833           | 53.3         | 13.6 | 1.4            |
| 통영고성지사 | 278,821           | 50.9         | 7.5  | 1.6            |
| 하동남해지사 | 212,803           | 48.5         | 13.7 | 2.2            |
| 함안의령지사 | 262,751           | 51.5         | 17.9 | 1.7            |
| 해운대지사  | 344,819           | 52.6         | 13.7 | 1.5            |

〈표 5-20〉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구분     | 1인당 연평균<br>보험료(원) | 장기 체납자 비율(%) |      | 고액환자 비율<br>(%) |
|--------|-------------------|--------------|------|----------------|
|        |                   | 지역           | 직장   |                |
| 대전지역본부 | 278,137           | 49.4         | 17.6 | 1.6            |
| 공주지사   | 273,385           | 50.4         | 15.9 | 1.8            |
| 괴산증평지사 | 220,457           | 47.7         | 17.1 | 1.5            |
| 당진지사   | 290,460           | 48.5         | 14.2 | 1.5            |
| 대전동부지사 | 264,895           | 52.3         | 15.3 | 1.5            |
| 대전서부지사 | 330,982           | 50.5         | 19.9 | 1.3            |
| 대전유성지사 | 353,016           | 47.0         | 26.8 | 1.4            |
| 대전중부지사 | 321,522           | 51.3         | 12.6 | 1.5            |
| 보령서천지사 | 252,078           | 47.8         | 10.8 | 1.8            |
| 부여청양지사 | 225,227           | 48.2         | 26.1 | 2.0            |
| 서산태안지사 | 288,236           | 49.0         | 17.6 | 1.6            |
| 아산지사   | 306,507           | 51.6         | 18.7 | 1.4            |
| 연기지사   | 271,815           | 49.4         | 18.2 | 1.6            |
| 예산지사   | 254,929           | 49.2         | 13.2 | 1.9            |
| 음성지사   | 268,388           | 48.9         | 14.6 | 1.3            |
| 제천단양지사 | 287,811           | 48.0         | 19.5 | 1.6            |
| 진천지사   | 299,314           | 49.6         | 19.3 | 1.4            |
| 천안지사   | 324,061           | 54.1         | 25.2 | 1.3            |
| 청주동부지사 | 288,515           | 50.2         | 21.4 | 1.3            |
| 청주서부지사 | 318,728           | 49.3         | 16.9 | 1.1            |
| 충남남동지사 | 203,212           | 50.8         | 14.6 | 1.7            |
| 충북남부지사 | 223,968           | 46.9         | 19.5 | 1.9            |
| 충주지사   | 277,939           | 48.0         | 15.4 | 1.5            |
| 홍성지사   | 251,703           | 46.9         | 11.6 | 1.8            |



〈표 5-21〉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구분     | 1인당 연평균<br>보험료(원) | 장기 체납자 비율(%) |      | 고액환자 비율<br>(%) |
|--------|-------------------|--------------|------|----------------|
|        |                   | 지역           | 직장   |                |
| 대구지역본부 | 280,144           | 50.5         | 14.8 | 1.5            |
| 경북북부지사 | 268,200           | 51.5         | 20.9 | 1.8            |
| 경북서부지사 | 240,187           | 49.9         | 17.5 | 1.5            |
| 경산청도지사 | 272,858           | 53.5         | 18.1 | 1.4            |
| 경주지사   | 293,157           | 51.6         | 11.1 | 1.5            |
| 구미지사   | 302,936           | 52.0         | 24.3 | 1.1            |
| 김천지사   | 271,341           | 47.9         | 10.5 | 1.5            |
| 달성지사   | 279,840           | 45.3         | 15.7 | 1.3            |
| 대구남부지사 | 313,858           | 57.5         | 16.8 | 1.4            |
| 대구달서지사 | 316,610           | 48.8         | 14.7 | 1.2            |
| 대구동부지사 | 295,489           | 52.3         | 24.8 | 1.4            |
| 대구북부지사 | 296,213           | 47.9         | 15.8 | 1.2            |
| 대구수성지사 | 356,763           | 49.2         | 18.2 | 1.3            |
| 대구중부지사 | 285,854           | 56.2         | 18.8 | 1.4            |
| 문경예천지사 | 225,924           | 48.8         | 7.5  | 1.9            |
| 상주지사   | 243,783           | 45.6         | 5.8  | 1.7            |
| 영주봉화지사 | 262,503           | 48.2         | 9.1  | 1.6            |
| 영천지사   | 245,047           | 52.2         | 15.2 | 1.6            |
| 울진영덕지사 | 225,762           | 50.4         | 9.3  | 2.0            |
| 의성군위지사 | 216,196           | 45.9         | 9.0  | 1.9            |
| 포항남부지사 | 340,261           | 53.8         | 13.2 | 1.5            |
| 포항북부지사 | 330,246           | 51.6         | 14.5 | 1.5            |

〈표 5-22〉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구분     | 1인당 연평균<br>보험료(원) | 장기 체납자 비율(%) |      | 고액환자 비율<br>(%) |
|--------|-------------------|--------------|------|----------------|
|        |                   | 지역           | 직장   |                |
| 광주지역본부 | 246,898           | 52.9         | 16.4 | 1.8            |
| 고흥보성지사 | 191,451           | 52.0         | 14.7 | 2.4            |
| 광양구례지사 | 259,131           | 47.8         | 8.7  | 1.5            |
| 광주동부지사 | 320,754           | 57.8         | 17.7 | 1.5            |
| 광주북부지사 | 299,237           | 54.6         | 9.0  | 1.3            |
| 광주서부지사 | 298,755           | 52.7         | 20.8 | 1.4            |
| 군산지사   | 276,287           | 54.4         | 15.4 | 1.5            |
| 김제지사   | 232,892           | 53.5         | 16.6 | 2.0            |
| 나주지사   | 250,440           | 52.9         | 23.6 | 1.8            |
| 남원순창지사 | 223,676           | 50.4         | 19.6 | 1.9            |
| 목포지사   | 292,162           | 57.2         | 15.5 | 1.9            |
| 무안신안지사 | 218,121           | 53.7         | 25.2 | 2.3            |
| 부안고창지사 | 220,746           | 50.5         | 14.1 | 2.4            |
| 서귀포지사  | 253,150           | 58.0         | 18.9 | 1.5            |
| 순천지사   | 285,409           | 49.7         | 11.6 | 1.5            |
| 여수지사   | 275,902           | 50.6         | 7.5  | 1.6            |
| 영광함평지사 | 205,044           | 52.7         | 19.9 | 2.2            |
| 영암장흥지사 | 205,707           | 52.3         | 21.7 | 1.7            |
| 완도강진지사 | 190,590           | 50.9         | 20.9 | 1.9            |
| 익산지사   | 246,516           | 54.9         | 16.5 | 1.5            |
| 전남북부지사 | 198,816           | 51.7         | 3.5  | 1.8            |
| 전북동부지사 | 211,648           | 45.8         | 16.9 | 2.1            |
| 전주남부지사 | 293,454           | 50.5         | 14.1 | 1.5            |
| 전주북부지사 | 274,600           | 51.4         | 13.8 | 1.5            |
| 정읍지사   | 246,928           | 55.5         | 15.9 | 2.0            |
| 제주지사   | 256,409           | 60.3         | 23.7 | 1.3            |
| 해남진도지사 | 207,625           | 54.7         | 11.4 | 2.1            |
| 화순지사   | 230,806           | 52.0         | 25.1 | 1.7            |

〈표 5-23〉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자격 및 급여관리 특성

| 구분      | 1인당 연평균<br>보험료(원) | 장기 체납자 비율(%) |      | 고액환자 비율<br>(%) |
|---------|-------------------|--------------|------|----------------|
|         |                   | 지역           | 직장   |                |
| 경인지역본부  | 332,665           | 50.2         | 16.7 | 1.3            |
| 경기광주지사  | 317,950           | 51.2         | 19.6 | 1.2            |
| 고양지사    | 378,750           | 51.1         | 17.0 | 1.3            |
| 과천지사    | 363,704           | 42.6         | 16.2 | 1.5            |
| 광명지사    | 350,168           | 44.9         | 10.6 | 1.4            |
| 구리지사    | 354,027           | 51.2         | 17.6 | 1.3            |
| 군포지사    | 355,946           | 45.4         | 21.6 | 1.2            |
| 김포지사    | 329,552           | 50.8         | 16.5 | 1.4            |
| 남양주가평지사 | 302,191           | 49.3         | 20.7 | 1.3            |
| 동두천연천지사 | 257,755           | 51.8         | 20.3 | 1.5            |
| 부천남부지사  | 351,175           | 51.3         | 5.1  | 1.3            |
| 부천북부지사  | 332,983           | 51.6         | 25.0 | 1.2            |
| 성남남부지사  | 436,105           | 41.8         | 22.4 | 1.5            |
| 성남북부지사  | 313,325           | 54.5         | 19.3 | 1.3            |
| 수원동부지사  | 364,237           | 52.7         | 12.0 | 1.2            |
| 수원서부지사  | 340,393           | 50.5         | 8.2  | 1.2            |
| 시흥지사    | 324,781           | 55.5         | 15.5 | 1.2            |
| 안산지사    | 321,510           | 57.9         | 12.3 | 1.2            |
| 안성지사    | 297,393           | 51.3         | 14.8 | 1.4            |
| 안양동안지사  | 367,424           | 44.8         | 24.0 | 1.3            |
| 안양만안지사  | 348,331           | 52.2         | 15.7 | 1.3            |
| 양주지사    | 272,266           | 50.0         | 20.7 | 1.2            |
| 양평지사    | 304,167           | 50.1         | 21.8 | 1.7            |
| 여주지사    | 276,901           | 50.7         | 20.9 | 1.4            |
| 오산지사    | 337,579           | 51.4         | 18.0 | 1.1            |
| 용인지사    | 391,833           | 46.9         | 11.9 | 1.3            |
| 의왕지사    | 370,816           | 44.2         | 14.8 | 1.4            |
| 의정부지사   | 332,337           | 50.5         | 17.0 | 1.3            |
| 이천지사    | 329,203           | 49.6         | 14.0 | 1.3            |
| 인천계양지사  | 332,256           | 50.0         | 7.5  | 1.2            |
| 인천남동지사  | 315,202           | 50.6         | 14.0 | 1.2            |
| 인천남부지사  | 354,687           | 54.1         | 14.4 | 1.3            |
| 인천부평지사  | 339,038           | 51.9         | 8.1  | 1.4            |
| 인천서부지사  | 312,607           | 49.1         | 15.9 | 1.3            |
| 인천중부지사  | 345,401           | 52.5         | 17.8 | 1.5            |
| 파주지사    | 303,600           | 50.2         | 19.1 | 1.4            |
| 평택지사    | 318,539           | 52.2         | 16.0 | 1.3            |
| 포천지사    | 264,694           | 54.4         | 22.6 | 1.3            |
| 하남지사    | 343,271           | 50.5         | 22.9 | 1.4            |
| 화성지사    | 321,851           | 46.4         | 18.6 | 1.3            |

### 5)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별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에 대한 분석은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1차 및 2차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의료자원 분포 측면에서는 지역본부 및 지사별 건강보험적용인구 1,000명당 요양기관수(전체 의료기관수<sup>36)</sup>,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sup>37)</sup>,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sup>38)</sup>, 공공의료기관수<sup>39)</sup>, 약국수)를 살펴보았다.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부산지역본부가 6개 지역본부 중 1차 및 2차 수검률이 가장 높은 67.4%, 39.4%로 나타났고, 1차 수검률이 가장 낮은 지역본부는 경인지역본부(63.1%), 2차 수검률이 가장 낮은 지역본부는 대구지역본부로 3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본부별 건강보험적용인구 1,000명당 전체 의료기관수가 가장 높은 지역본부는 광주지역본부로 1.51개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본부는 서울지역본부(1.10개)였다.

각 지역본부에 속해 있는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1차 및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사는 각각 중구서부지사(73.7%), 도봉지사(49.9%)였으며, 전체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강남북부지사(2.31개), 가장 적은 지사는 중구서부지사(0.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1차 및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사는 각각 울산동부지사(77.2%), 창원지사(55.6%)였으며, 전체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부산동래지사(2.12개), 가장 적은 지사는 울산동부지사(0.73개)였다.

36) 전체 의료기관수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38) 의원급 이하 의료기관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9) 공공의료기관수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1차 및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사는 각각 음성지사(73.0%), 진천지사(44.3%)였으며, 전체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대전중부지사(1.93개), 가장 적은 지사는 진천지사(0.76개)였다.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1차 및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사는 각각 구미지사(71.1%), 포항남부지사(45.5%)였으며, 가장 낮은 지사는 울산영덕지사였다. 전체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대구수성지사(2.09개), 가장 적은 지사는 포항남부지사(0.59개)였다.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1차 및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사는 광양구례지사(70.9%, 48.2%)였으며, 가장 낮은 지사는 1차 건강검진 수검률은 제주지사,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은 완도강진지사였다. 전체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대구수성지사(2.09개), 가장 적은 지사는 포항남부지사(0.59개)였다.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 중 1차 및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사는 각각 수원동부지사(73.4%), 인천남동지사(46.9%)였으며, 가장 낮은 지사는 1차 및 2차 건강검진 수검률 모두 양평지사였다. 전체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은 지사는 구리지사(1.74개), 가장 적은 지사는 양주지사(0.63개)였다.

〈표 5-24〉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구분      | 수검률(%)     |            | 인구1,000명당 요양기관수 |           |           |      |      |
|---------|------------|------------|-----------------|-----------|-----------|------|------|
|         | 1차<br>건강검진 | 2차<br>건강검진 | 전체<br>의료기관      | 병원급<br>이상 | 의원급<br>이하 | 공공   | 약국   |
| 서울지역본부  | 64.3       | 34.9       | 1.10            | 0.03      | 1.05      | 0.02 | 0.39 |
| 강남동부지사  | 73.2       | 35.2       | 0.73            | 0.02      | 0.71      | 0.00 | 0.17 |
| 강남북부지사  | 71.2       | 35.5       | 2.31            | 0.06      | 2.25      | 0.00 | 0.26 |
| 강남서부지사  | 73.0       | 40.4       | 0.70            | 0.02      | 0.68      | 0.00 | 0.15 |
| 강동지사    | 62.2       | 36.1       | 1.98            | 0.05      | 1.92      | 0.00 | 0.71 |
| 강릉지사    | 64.7       | 30.8       | 1.26            | 0.06      | 1.10      | 0.10 | 0.49 |
| 강북지사    | 52.1       | 37.1       | 1.92            | 0.07      | 1.85      | 0.00 | 0.82 |
| 강서지사    | 66.1       | 38.9       | 1.25            | 0.05      | 1.20      | 0.00 | 0.48 |
| 강원동부지사  | 61.7       | 20.4       | 1.29            | 0.03      | 1.04      | 0.22 | 0.55 |
| 강원서부지사  | 64.1       | 23.1       | 1.24            | 0.06      | 1.01      | 0.17 | 0.49 |
| 강원중부지사  | 66.7       | 26.3       | 1.11            | 0.08      | 0.63      | 0.39 | 0.43 |
| 관악지사    | 55.1       | 36.8       | 1.95            | 0.03      | 1.91      | 0.00 | 0.67 |
| 광진지사    | 58.8       | 27.8       | 1.59            | 0.03      | 1.56      | 0.00 | 0.64 |
| 구로지사    | 64.8       | 35.4       | 1.02            | 0.02      | 1.00      | 0.00 | 0.39 |
| 금천지사    | 66.8       | 43.7       | 0.68            | 0.01      | 0.66      | 0.00 | 0.32 |
| 노원지사    | 58.1       | 36.0       | 1.94            | 0.04      | 1.89      | 0.01 | 0.68 |
| 도봉지사    | 55.4       | 49.9       | 1.54            | 0.06      | 1.48      | 0.00 | 0.61 |
| 동대문지사   | 60.9       | 36.5       | 1.69            | 0.07      | 1.62      | 0.00 | 0.81 |
| 동작지사    | 64.5       | 33.6       | 1.50            | 0.03      | 1.47      | 0.00 | 0.53 |
| 동해지사    | 66.5       | 32.2       | 1.18            | 0.08      | 1.08      | 0.03 | 0.59 |
| 마포지사    | 68.1       | 38.8       | 1.03            | 0.01      | 1.01      | 0.00 | 0.35 |
| 삼척지사    | 66.4       | 45.6       | 1.13            | 0.05      | 0.82      | 0.26 | 0.43 |
| 서대문지사   | 55.9       | 32.5       | 1.56            | 0.04      | 1.52      | 0.00 | 0.61 |
| 서초남부지사  | 72.3       | 36.4       | 0.56            | 0.01      | 0.55      | 0.00 | 0.11 |
| 서초북부지사  | 68.8       | 34.1       | 1.23            | 0.04      | 1.20      | 0.00 | 0.35 |
| 성동지사    | 66.9       | 35.3       | 0.95            | 0.03      | 0.92      | 0.00 | 0.44 |
| 성북지사    | 52.3       | 34.6       | 1.74            | 0.04      | 1.70      | 0.00 | 0.81 |
| 송파지사    | 66.7       | 32.7       | 1.32            | 0.03      | 1.29      | 0.00 | 0.45 |
| 양천지사    | 58.7       | 32.8       | 1.78            | 0.04      | 1.74      | 0.00 | 0.56 |
| 영등포남부지사 | 67.9       | 37.1       | 1.04            | 0.04      | 1.00      | 0.00 | 0.45 |
| 영등포북부지사 | 74.0       | 37.1       | 0.19            | 0.00      | 0.19      | 0.00 | 0.06 |
| 용산지사    | 67.7       | 38.4       | 0.71            | 0.01      | 0.69      | 0.00 | 0.34 |
| 원주형성지사  | 66.3       | 40.5       | 1.39            | 0.06      | 1.21      | 0.12 | 0.50 |
| 은평지사    | 54.4       | 35.3       | 1.85            | 0.06      | 1.78      | 0.00 | 0.72 |
| 종로지사    | 69.4       | 35.1       | 0.69            | 0.01      | 0.68      | 0.00 | 0.27 |
| 중구동부지사  | 69.3       | 34.3       | 0.51            | 0.01      | 0.49      | 0.00 | 0.18 |
| 중구서부지사  | 73.7       | 34.2       | 0.22            | 0.00      | 0.22      | 0.00 | 0.07 |
| 종랑지사    | 56.2       | 40.3       | 1.58            | 0.05      | 1.52      | 0.00 | 0.65 |
| 태백정선지사  | 65.5       | 28.4       | 1.05            | 0.06      | 0.74      | 0.25 | 0.42 |
| 평창영월지사  | 62.0       | 22.3       | 1.20            | 0.05      | 0.68      | 0.47 | 0.47 |

〈표 5-25〉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구분     | 수검률(%)     |            | 인구1,000명당 요양기관수 |           |           |      |      |
|--------|------------|------------|-----------------|-----------|-----------|------|------|
|        | 1차<br>건강검진 | 2차<br>건강검진 | 전체<br>의료기관      | 병원급<br>이상 | 의원급<br>이하 | 공공   | 약국   |
| 부산지역본부 | 67.4       | 39.4       | 1.30            | 0.08      | 1.15      | 0.07 | 0.44 |
| 거제지사   | 76.4       | 49.1       | 0.85            | 0.05      | 0.71      | 0.10 | 0.23 |
| 경남북부지사 | 62.6       | 27.0       | 1.78            | 0.06      | 1.03      | 0.69 | 0.55 |
| 기장지사   | 70.4       | 47.2       | 0.97            | 0.07      | 0.82      | 0.08 | 0.38 |
| 김해지사   | 66.1       | 40.1       | 0.98            | 0.10      | 0.86      | 0.02 | 0.33 |
| 마산지사   | 63.1       | 37.6       | 1.59            | 0.10      | 1.46      | 0.03 | 0.52 |
| 밀양창녕지사 | 62.1       | 31.9       | 1.63            | 0.14      | 1.05      | 0.43 | 0.54 |
| 부산금정지사 | 64.3       | 39.1       | 1.54            | 0.13      | 1.41      | 0.01 | 0.54 |
| 부산남부지사 | 61.5       | 37.7       | 1.63            | 0.07      | 1.56      | 0.01 | 0.56 |
| 부산동래지사 | 63.2       | 36.2       | 2.12            | 0.13      | 1.98      | 0.01 | 0.71 |
| 부산북부지사 | 71.3       | 47.5       | 0.95            | 0.05      | 0.87      | 0.03 | 0.34 |
| 부산사상지사 | 71.7       | 42.7       | 0.78            | 0.08      | 0.70      | 0.00 | 0.29 |
| 부산사하지사 | 69.0       | 44.3       | 1.33            | 0.11      | 1.21      | 0.00 | 0.49 |
| 부산서부지사 | 66.4       | 45.2       | 1.37            | 0.08      | 1.28      | 0.01 | 0.92 |
| 부산연제지사 | 66.7       | 40.7       | 1.70            | 0.10      | 1.59      | 0.01 | 0.55 |
| 부산중부지사 | 72.3       | 40.5       | 1.22            | 0.06      | 1.15      | 0.01 | 0.52 |
| 부산진구지사 | 66.9       | 44.0       | 2.10            | 0.07      | 2.03      | 0.00 | 0.60 |
| 사천지사   | 64.9       | 32.9       | 1.14            | 0.08      | 0.87      | 0.19 | 0.45 |
| 양산지사   | 70.6       | 43.8       | 0.90            | 0.08      | 0.79      | 0.03 | 0.38 |
| 울산남부지사 | 70.2       | 35.1       | 1.55            | 0.12      | 1.43      | 0.01 | 0.42 |
| 울산동부지사 | 77.2       | 24.3       | 0.73            | 0.02      | 0.71      | 0.00 | 0.28 |
| 울산중부지사 | 64.0       | 38.7       | 1.44            | 0.07      | 1.35      | 0.02 | 0.45 |
| 울주지사   | 71.7       | 42.7       | 0.76            | 0.06      | 0.61      | 0.09 | 0.27 |
| 진주산청지사 | 61.5       | 27.6       | 1.44            | 0.09      | 1.17      | 0.17 | 0.44 |
| 진해지사   | 69.1       | 53.6       | 1.29            | 0.10      | 1.16      | 0.03 | 0.51 |
| 창원지사   | 71.7       | 55.6       | 0.87            | 0.06      | 0.80      | 0.01 | 0.27 |
| 통영고성지사 | 64.6       | 38.0       | 1.20            | 0.06      | 0.87      | 0.27 | 0.38 |
| 하동남해지사 | 60.1       | 17.2       | 1.85            | 0.06      | 1.03      | 0.77 | 0.52 |
| 함안의령지사 | 72.6       | 39.1       | 1.07            | 0.06      | 0.65      | 0.36 | 0.30 |
| 해운대지사  | 63.1       | 42.2       | 1.99            | 0.10      | 1.89      | 0.01 | 0.60 |

〈표 5-26〉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구분     | 수검률(%)     |            | 인구1,000명당 요양기관수 |           |           |      |      |
|--------|------------|------------|-----------------|-----------|-----------|------|------|
|        | 1차<br>건강검진 | 2차<br>건강검진 | 전체<br>의료기관      | 병원급<br>이상 | 의원급<br>이하 | 공공   | 약국   |
| 대전지역본부 | 65.4       | 34.8       | 1.32            | 0.06      | 1.10      | 0.15 | 0.47 |
| 공주시사   | 65.7       | 32.9       | 1.47            | 0.08      | 1.12      | 0.27 | 0.49 |
| 괴산증평지사 | 64.3       | 30.7       | 1.46            | 0.08      | 0.85      | 0.53 | 0.53 |
| 당진지사   | 62.6       | 32.0       | 1.10            | 0.04      | 0.84      | 0.21 | 0.41 |
| 대전동부지사 | 72.9       | 42.5       | 0.93            | 0.03      | 0.88      | 0.01 | 0.38 |
| 대전서부지사 | 63.7       | 31.2       | 1.93            | 0.08      | 1.84      | 0.01 | 0.56 |
| 대전유성지사 | 71.0       | 35.1       | 1.09            | 0.05      | 1.02      | 0.03 | 0.40 |
| 대전중부지사 | 62.6       | 35.6       | 1.93            | 0.12      | 1.79      | 0.01 | 0.70 |
| 보령서천지사 | 60.0       | 28.7       | 1.80            | 0.12      | 1.21      | 0.46 | 0.57 |
| 부여청양지사 | 65.6       | 30.1       | 1.72            | 0.11      | 0.92      | 0.70 | 0.57 |
| 서산태안지사 | 60.5       | 32.1       | 1.23            | 0.03      | 0.95      | 0.26 | 0.46 |
| 아산지사   | 65.0       | 42.0       | 0.95            | 0.05      | 0.79      | 0.12 | 0.35 |
| 연기지사   | 69.1       | 36.6       | 1.29            | 0.05      | 1.05      | 0.18 | 0.57 |
| 예산지사   | 61.2       | 32.1       | 1.45            | 0.06      | 1.01      | 0.39 | 0.55 |
| 음성지사   | 73.0       | 37.1       | 0.85            | 0.05      | 0.58      | 0.22 | 0.34 |
| 제천단양지사 | 63.4       | 43.9       | 1.64            | 0.08      | 1.22      | 0.34 | 0.46 |
| 진천지사   | 72.0       | 44.3       | 0.76            | 0.04      | 0.56      | 0.17 | 0.30 |
| 천안지사   | 62.5       | 38.0       | 1.20            | 0.06      | 1.08      | 0.06 | 0.41 |
| 청주동부지사 | 66.9       | 37.5       | 1.20            | 0.04      | 1.05      | 0.12 | 0.47 |
| 청주서부지사 | 66.5       | 41.2       | 1.43            | 0.07      | 1.35      | 0.00 | 0.55 |
| 충남남동지사 | 65.8       | 33.0       | 1.34            | 0.07      | 0.99      | 0.27 | 0.48 |
| 충북남부지사 | 64.9       | 35.3       | 1.79            | 0.09      | 1.02      | 0.69 | 0.50 |
| 충주지사   | 62.7       | 31.0       | 1.27            | 0.06      | 1.03      | 0.18 | 0.49 |
| 홍성지사   | 62.3       | 18.3       | 1.46            | 0.10      | 1.02      | 0.34 | 0.49 |



〈표 5-27〉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구분     | 수검률(%)     |            | 인구1,000명당 요양기관수 |           |           |      |      |
|--------|------------|------------|-----------------|-----------|-----------|------|------|
|        | 1차<br>건강검진 | 2차<br>건강검진 | 전체<br>의료기관      | 병원급<br>이상 | 의원급<br>이하 | 공공   | 약국   |
| 대구지역본부 | 64.9       | 33.3       | 1.37            | 0.08      | 1.16      | 0.13 | 0.50 |
| 경북북부지사 | 66.5       | 38.4       | 1.60            | 0.10      | 1.03      | 0.47 | 0.53 |
| 경북서부지사 | 67.2       | 34.6       | 1.03            | 0.06      | 0.68      | 0.28 | 0.37 |
| 경산청도지사 | 63.9       | 34.6       | 1.21            | 0.09      | 0.97      | 0.15 | 0.46 |
| 경주지사   | 68.6       | 45.2       | 1.02            | 0.09      | 0.82      | 0.11 | 0.45 |
| 구미지사   | 71.1       | 43.5       | 1.00            | 0.04      | 0.90      | 0.05 | 0.34 |
| 김천지사   | 66.8       | 19.6       | 1.42            | 0.09      | 1.02      | 0.32 | 0.51 |
| 달성지사   | 70.5       | 40.9       | 0.96            | 0.05      | 0.80      | 0.11 | 0.38 |
| 대구남부지사 | 56.5       | 35.9       | 1.78            | 0.15      | 1.63      | 0.01 | 0.86 |
| 대구달서지사 | 66.1       | 39.2       | 1.37            | 0.10      | 1.27      | 0.00 | 0.48 |
| 대구동부지사 | 62.4       | 32.2       | 1.51            | 0.07      | 1.44      | 0.00 | 0.67 |
| 대구북부지사 | 65.2       | 37.5       | 1.29            | 0.06      | 1.22      | 0.01 | 0.50 |
| 대구수성지사 | 60.8       | 23.5       | 2.09            | 0.09      | 2.00      | 0.00 | 0.58 |
| 대구중부지사 | 63.9       | 29.9       | 1.87            | 0.10      | 1.76      | 0.01 | 0.77 |
| 문경예천지사 | 65.5       | 26.7       | 1.76            | 0.08      | 1.12      | 0.57 | 0.55 |
| 상주지사   | 66.2       | 31.1       | 1.63            | 0.06      | 1.01      | 0.56 | 0.56 |
| 영주봉화지사 | 65.4       | 33.9       | 1.51            | 0.09      | 1.04      | 0.39 | 0.50 |
| 영천지사   | 66.5       | 40.5       | 1.45            | 0.08      | 1.11      | 0.26 | 0.50 |
| 울진영덕지사 | 54.8       | 18.1       | 1.74            | 0.09      | 1.00      | 0.65 | 0.50 |
| 의성군위지사 | 65.9       | 23.8       | 1.85            | 0.15      | 0.83      | 0.87 | 0.52 |
| 포항남부지사 | 70.8       | 45.5       | 0.59            | 0.02      | 0.50      | 0.07 | 0.25 |
| 포항북부지사 | 58.3       | 25.1       | 1.96            | 0.19      | 1.65      | 0.12 | 0.68 |

〈표 5-28〉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구분     | 수검률(%)     |            | 인구1,000명당 요양기관수 |           |           |      |      |
|--------|------------|------------|-----------------|-----------|-----------|------|------|
|        | 1차<br>건강검진 | 2차<br>건강검진 | 전체<br>의료기관      | 병원급<br>이상 | 의원급<br>이하 | 공공   | 약국   |
| 광주지역본부 | 64.5       | 36.5       | 1.51            | 0.09      | 1.19      | 0.22 | 0.54 |
| 고흥보성지사 | 60.0       | 31.9       | 1.83            | 0.10      | 1.02      | 0.72 | 0.69 |
| 광양구례지사 | 70.9       | 48.2       | 1.12            | 0.05      | 0.78      | 0.28 | 0.32 |
| 광주동부지사 | 64.0       | 35.7       | 1.94            | 0.13      | 1.80      | 0.02 | 0.85 |
| 광주북부지사 | 64.3       | 31.7       | 1.64            | 0.11      | 1.52      | 0.00 | 0.62 |
| 광주서부지사 | 66.7       | 42.8       | 1.36            | 0.08      | 1.26      | 0.02 | 0.45 |
| 군산지사   | 67.5       | 46.1       | 1.41            | 0.08      | 1.17      | 0.16 | 0.55 |
| 김제지사   | 64.4       | 38.3       | 1.68            | 0.15      | 1.01      | 0.52 | 0.54 |
| 나주지사   | 69.1       | 32.3       | 1.32            | 0.13      | 0.89      | 0.31 | 0.45 |
| 남원순창지사 | 61.4       | 39.1       | 2.08            | 0.11      | 1.23      | 0.74 | 0.66 |
| 목포지사   | 65.8       | 37.4       | 1.30            | 0.14      | 1.15      | 0.01 | 0.60 |
| 무안신안지사 | 61.1       | 32.6       | 1.37            | 0.05      | 0.71      | 0.60 | 0.41 |
| 부안고창지사 | 61.2       | 30.5       | 1.84            | 0.11      | 1.12      | 0.61 | 0.66 |
| 서귀포지사  | 57.7       | 40.1       | 1.31            | 0.04      | 1.03      | 0.24 | 0.47 |
| 순천지사   | 67.1       | 29.1       | 1.48            | 0.10      | 1.21      | 0.17 | 0.52 |
| 여수지사   | 67.5       | 42.1       | 1.29            | 0.06      | 1.03      | 0.19 | 0.46 |
| 영광함평지사 | 62.5       | 32.9       | 1.82            | 0.09      | 1.13      | 0.60 | 0.67 |
| 영암장흥지사 | 69.1       | 29.6       | 1.14            | 0.04      | 0.73      | 0.37 | 0.38 |
| 완도강진지사 | 59.5       | 27.1       | 1.52            | 0.04      | 0.83      | 0.65 | 0.60 |
| 익산지사   | 67.6       | 43.0       | 1.41            | 0.08      | 1.17      | 0.15 | 0.51 |
| 전남북부지사 | 67.8       | 35.1       | 1.44            | 0.11      | 0.79      | 0.54 | 0.53 |
| 전북동부지사 | 62.5       | 29.7       | 1.98            | 0.03      | 0.94      | 1.01 | 0.52 |
| 전주남부지사 | 64.7       | 35.2       | 2.01            | 0.14      | 1.86      | 0.01 | 0.75 |
| 전주북부지사 | 66.7       | 44.4       | 1.43            | 0.11      | 1.21      | 0.11 | 0.50 |
| 정읍지사   | 64.5       | 44.7       | 1.80            | 0.11      | 1.25      | 0.45 | 0.65 |
| 제주지사   | 57.7       | 39.8       | 1.32            | 0.04      | 1.20      | 0.09 | 0.46 |
| 해남진도지사 | 61.6       | 35.3       | 1.59            | 0.10      | 0.90      | 0.59 | 0.49 |
| 화순지사   | 68.3       | 31.4       | 1.43            | 0.16      | 0.87      | 0.40 | 0.47 |

〈표 5-29〉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들의 건강관리 및 의료자원 분포 특성

| 구분      | 수검률(%)     |            | 인구1,000명당 요양기관수 |           |           |      |      |
|---------|------------|------------|-----------------|-----------|-----------|------|------|
|         | 1차<br>건강검진 | 2차<br>건강검진 | 전체<br>의료기관      | 병원급<br>이상 | 의원급<br>이하 | 공공   | 약국   |
| 경인지역본부  | 63.1       | 35.3       | 1.12            | 0.05      | 1.04      | 0.03 | 0.41 |
| 경기광주지사  | 63.9       | 34.1       | 0.70            | 0.01      | 0.62      | 0.06 | 0.29 |
| 고양지사    | 56.7       | 33.4       | 1.52            | 0.09      | 1.43      | 0.00 | 0.53 |
| 과천시사    | 67.9       | 31.2       | 0.54            | 0.00      | 0.54      | 0.01 | 0.18 |
| 광명지사    | 59.6       | 43.9       | 1.56            | 0.02      | 1.53      | 0.00 | 0.56 |
| 구리지사    | 56.7       | 34.2       | 1.74            | 0.06      | 1.67      | 0.01 | 0.53 |
| 군포지사    | 65.2       | 35.6       | 1.29            | 0.04      | 1.24      | 0.00 | 0.50 |
| 김포지사    | 66.0       | 29.4       | 0.97            | 0.06      | 0.85      | 0.06 | 0.33 |
| 남양주가평지사 | 57.6       | 29.5       | 1.21            | 0.06      | 1.06      | 0.08 | 0.46 |
| 동두천연천지사 | 57.7       | 28.8       | 1.08            | 0.09      | 0.85      | 0.14 | 0.57 |
| 부천남부지사  | 56.7       | 39.2       | 1.66            | 0.05      | 1.60      | 0.01 | 0.65 |
| 부천북부지사  | 61.4       | 40.4       | 1.38            | 0.08      | 1.30      | 0.00 | 0.47 |
| 성남남부지사  | 71.7       | 30.3       | 1.09            | 0.04      | 1.05      | 0.00 | 0.29 |
| 성남북부지사  | 60.8       | 41.0       | 1.27            | 0.01      | 1.26      | 0.00 | 0.47 |
| 수원동부지사  | 73.4       | 34.9       | 0.97            | 0.03      | 0.94      | 0.00 | 0.33 |
| 수원서부지사  | 58.1       | 31.4       | 1.40            | 0.04      | 1.35      | 0.01 | 0.55 |
| 시흥지사    | 66.1       | 37.7       | 0.76            | 0.04      | 0.71      | 0.02 | 0.29 |
| 안산지사    | 67.6       | 43.7       | 0.97            | 0.07      | 0.89      | 0.01 | 0.37 |
| 안성지사    | 70.5       | 37.5       | 0.94            | 0.09      | 0.70      | 0.15 | 0.38 |
| 안양동안지사  | 67.9       | 33.8       | 1.22            | 0.03      | 1.19      | 0.00 | 0.39 |
| 안양만안지사  | 63.1       | 45.7       | 1.43            | 0.05      | 1.37      | 0.01 | 0.61 |
| 양주지사    | 65.5       | 39.6       | 0.63            | 0.04      | 0.56      | 0.04 | 0.30 |
| 양평지사    | 53.4       | 15.0       | 1.34            | 0.11      | 0.90      | 0.33 | 0.49 |
| 여주지사    | 61.6       | 27.5       | 1.26            | 0.08      | 0.94      | 0.24 | 0.50 |
| 오산지사    | 62.2       | 28.4       | 1.40            | 0.05      | 1.34      | 0.01 | 0.56 |
| 용인지사    | 64.3       | 29.4       | 1.32            | 0.05      | 1.24      | 0.03 | 0.42 |
| 의왕지사    | 61.8       | 39.5       | 1.24            | 0.06      | 1.17      | 0.01 | 0.47 |
| 의정부지사   | 56.6       | 37.0       | 1.52            | 0.07      | 1.45      | 0.00 | 0.54 |
| 이천지사    | 70.5       | 34.2       | 0.83            | 0.04      | 0.69      | 0.10 | 0.33 |
| 인천계양지사  | 55.8       | 32.2       | 1.40            | 0.07      | 1.32      | 0.01 | 0.42 |
| 인천남동지사  | 66.5       | 46.9       | 0.98            | 0.03      | 0.95      | 0.00 | 0.37 |
| 인천남부지사  | 57.2       | 32.2       | 1.40            | 0.06      | 1.33      | 0.00 | 0.54 |
| 인천부평지사  | 63.0       | 43.7       | 1.26            | 0.05      | 1.21      | 0.00 | 0.46 |
| 인천서부지사  | 64.8       | 38.5       | 0.90            | 0.05      | 0.79      | 0.06 | 0.31 |
| 인천중부지사  | 64.1       | 46.1       | 0.80            | 0.04      | 0.67      | 0.09 | 0.36 |
| 파주지사    | 64.8       | 32.3       | 0.89            | 0.04      | 0.79      | 0.06 | 0.36 |
| 평택지사    | 69.4       | 41.8       | 0.97            | 0.04      | 0.87      | 0.05 | 0.40 |
| 포천지사    | 62.2       | 28.6       | 0.69            | 0.05      | 0.52      | 0.12 | 0.30 |
| 하남지사    | 57.8       | 32.1       | 1.13            | 0.04      | 1.08      | 0.01 | 0.44 |
| 화성지사    | 71.2       | 34.3       | 0.68            | 0.02      | 0.62      | 0.04 | 0.24 |

## 나. 지사별 목표급여비 추정결과

내부경쟁 체제를 위한 지사별 목표급여비 산출을 위해, 앞서 분석된 각 지사별 특성들을 중심으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지사별 목표급여비를 추정하였다. 일반적인 회귀모형보다 모형자체에 대한 설명력 등도 우수함을 나타내기 위해 로그선형회귀모형의 결과도 함께 비교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의 향상, 각 독립변수들을 구성하는 값의 형태가 서로 상이함에서 오는 모형해석상의 편의성도도 및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선형성<sup>40)</sup>을 얻기 위해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모두를 로그변환한 후 지리적 가중회귀분석 및 로그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에서는 최초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했던 지역의 일반적 특성 5개, 행정관리 5개, 자격관리 3개, 급여관리 1개, 건강관리 2개, 의료자원 분포 4개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로 최종 4개의 변수(지사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당 총직원수, 직장 장기체납자수 비율, 2차 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지사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당 총의료기관수)가 채택되었다.

또한, 목표급여비 추정에 있어 일반적인 로그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내기 위해,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에서 사용되었던 동일한 독립변수로 로그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설명력 등이 지리적 가중회귀분석결과에 비해 떨어졌으며( $R^2 = 0.3641$ )이며, 모형의 적합도 또한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IC = -913.9186$ )<sup>41)</sup>.

40) 로그변환을 하기 전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잔차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비임의형태를 나타냄.

41)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은 0에 가까울수록 모형적합도가 높음(김계수, 2001)

지리적 가중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1,000명당 총 직원수가 증가하고, 2차 건강검진 수검률이 감소하고, 인구 1000명당 총의료기관수가 증가할수록<sup>42)</sup> 1인당 연평균 급여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직장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직장 체납자 비율은 지사에 따라 1인당 연평균 급여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에 따른 목표급여비는 지도상에 실제 총급여비와의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되었으며, 분석표를 통한 값으로도 제시하였다. 단, 분석표에서의 지사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목표급여비값이 자료 수급이 용이한 제한된 자료만으로서 추정함에 따라 익명으로 표시하였다.

지도상에 표시된 목표 총급여비는 색깔이 진할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며, 실제 총급여비와 목표총급여비와의 명암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날수록 실제 총급여비와 목표 총급여비 값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정지역의 경우, 실제 총급여비를 나타낸 지도의 명암이 어둡고, 목표 총 급여비를 나타내는 지도의 명암이 밝을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사특성을 반영한 내부경쟁제도의 도입에 따라 특정크기만큼 급여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사별 실제 급여비의 차이가 지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만, 지사의 특성을 고려한 후에도 급여비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관할 지사들의 실제 급여비와 추정된 목표 급여비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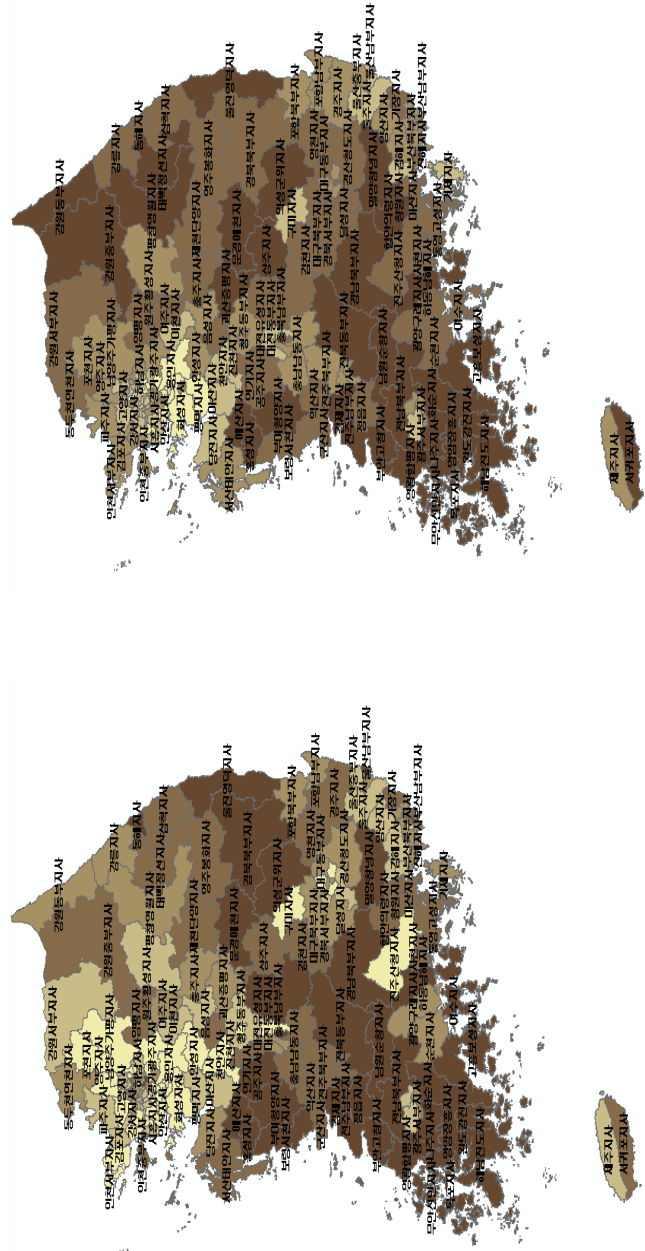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인 서울1지사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는 702,514원이나 목표 급여비는 550,546원으로 1인당 연평균

42) 일부 지역 중 총의료기관수는 증가하나 급여비가 1인당 연평균 급여비가 감소하는 지역도 존재함.

151,967원의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 총급여비로는 약 1,512억원의 급여비가 절감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본부 전체로는 연간 3,743억원의 급여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인 부산1지사의 경우는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는 687,439원이나 목표 급여비는 596,94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간급여비로 환산할 경우, 그 차액은 355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지역본부에 속한 지사 중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와 목표 급여비의 차이가 가장 큰 지사는 대구 1지사였으며 그 크기는 약 2만7천원 정도였다. 대전지역본부의 경우는 대전1지사가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와 목표진료비의 차이 약 6만8천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인지역본부는 경인1지사의 차액이 약 4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주지역본부에서는 광주1지사의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와 목표진료비 차이 약 14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 총 27개 중 7개를 제외한 20개의 지사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사특성을 반영한 내부경쟁제도의 도입에 따라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GIS를 이용한 지시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GWR 전제)



〈실제 급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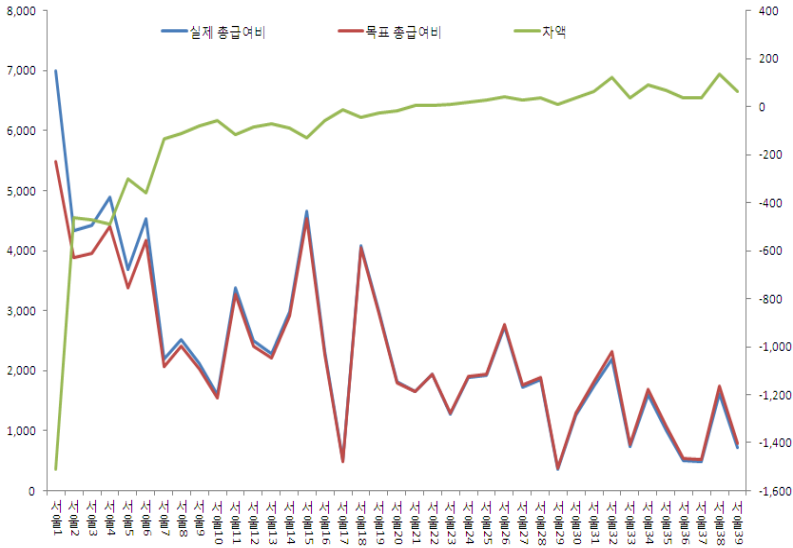
〈목표 총급여비〉

〈표 5-30〉 서울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지사명  | 1인당 연평균 급여비(원) |         |          | 연간 총 급여비(억원) |       |        |
|------|----------------|---------|----------|--------------|-------|--------|
|      | 실제             | 목표      | 차액       | 실제           | 목표    | 차액     |
| 01지사 | 702,514        | 550,546 | -151,967 | 6,991        | 5,479 | -1,512 |
| 02지사 | 636,349        | 568,250 | -68,098  | 4,341        | 3,876 | -465   |
| 03지사 | 629,941        | 562,967 | -66,974  | 4,420        | 3,950 | -470   |
| 04지사 | 624,626        | 562,274 | -62,351  | 4,885        | 4,397 | -488   |
| 05지사 | 631,472        | 579,890 | -51,582  | 3,684        | 3,383 | -301   |
| 06지사 | 597,463        | 550,156 | -47,307  | 4,526        | 4,168 | -358   |
| 07지사 | 620,998        | 583,105 | -37,893  | 2,199        | 2,065 | -134   |
| 08지사 | 612,014        | 584,548 | -27,466  | 2,519        | 2,406 | -113   |
| 09지사 | 602,661        | 579,459 | -23,202  | 2,122        | 2,040 | -82    |
| 10지사 | 612,907        | 591,313 | -21,595  | 1,606        | 1,550 | -57    |
| 11지사 | 593,148        | 572,635 | -20,513  | 3,384        | 3,267 | -117   |
| 12지사 | 561,734        | 542,641 | -19,093  | 2,504        | 2,418 | -85    |
| 13지사 | 604,043        | 585,540 | -18,503  | 2,286        | 2,216 | -70    |
| 14지사 | 593,122        | 575,602 | -17,520  | 2,994        | 2,905 | -88    |
| 15지사 | 571,243        | 555,411 | -15,831  | 4,656        | 4,527 | -129   |
| 16지사 | 583,887        | 569,551 | -14,336  | 2,315        | 2,258 | -57    |
| 17지사 | 651,075        | 637,128 | -13,946  | 495          | 484   | -11    |
| 18지사 | 577,778        | 571,569 | -6,209   | 4,089        | 4,045 | -44    |
| 19지사 | 584,405        | 578,990 | -5,415   | 2,983        | 2,955 | -28    |
| 20지사 | 584,389        | 579,164 | -5,224   | 1,816        | 1,800 | -16    |
| 21지사 | 588,337        | 589,773 | 1,435    | 1,657        | 1,661 | 4      |
| 22지사 | 578,587        | 580,184 | 1,597    | 1,941        | 1,947 | 5      |
| 23지사 | 586,158        | 590,784 | 4,626    | 1,283        | 1,293 | 10     |
| 24지사 | 573,494        | 579,635 | 6,141    | 1,890        | 1,910 | 20     |
| 25지사 | 566,094        | 574,028 | 7,934    | 1,919        | 1,945 | 27     |
| 26지사 | 569,115        | 578,131 | 9,016    | 2,732        | 2,776 | 43     |
| 27지사 | 585,831        | 595,736 | 9,905    | 1,731        | 1,760 | 29     |
| 28지사 | 567,332        | 578,844 | 11,512   | 1,846        | 1,884 | 37     |
| 29지사 | 619,256        | 635,564 | 16,307   | 363          | 373   | 10     |
| 30지사 | 574,899        | 592,690 | 17,791   | 1,257        | 1,296 | 39     |
| 31지사 | 567,199        | 588,453 | 21,253   | 1,748        | 1,814 | 65     |
| 32지사 | 541,394        | 571,832 | 30,438   | 2,190        | 2,313 | 123    |
| 33지사 | 622,164        | 653,513 | 31,349   | 736          | 773   | 37     |
| 34지사 | 560,037        | 592,438 | 32,401   | 1,599        | 1,691 | 93     |
| 35지사 | 587,297        | 626,607 | 39,310   | 1,010        | 1,078 | 68     |
| 36지사 | 616,916        | 659,349 | 42,434   | 511          | 547   | 35     |
| 37지사 | 611,764        | 656,806 | 45,042   | 479          | 514   | 35     |
| 38지사 | 581,634        | 630,378 | 48,744   | 1,615        | 1,750 | 135    |
| 39지사 | 597,060        | 650,077 | 53,017   | 721          | 785   | 64     |



[그림 5-2]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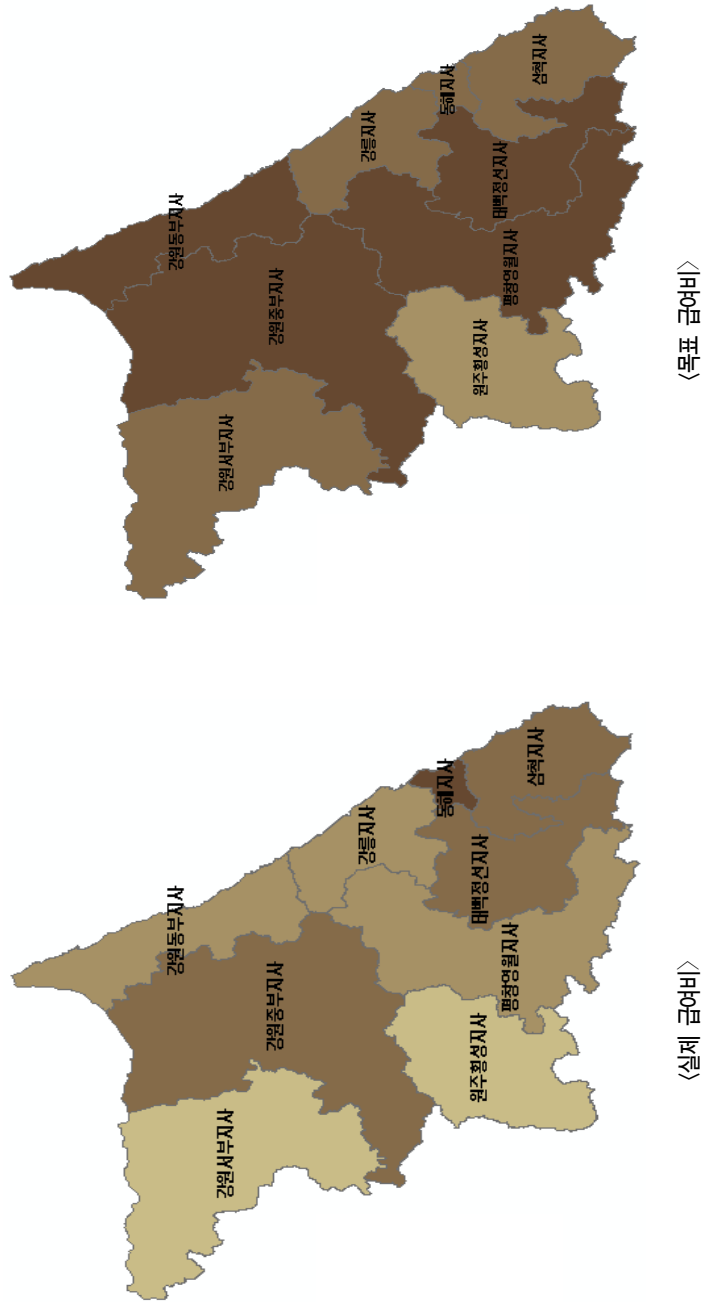


[그림 5-2]는 서울지역본부 관할 지사별로 실제 연간 총급여비와 목표 연간 총급여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실제 급여비와 목표 급여비의 차액이 “0” 이하일 경우는 본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직원수, 2차 건강검진을, 장기체납자 비율, 의료기관수 등)<sup>43)</sup>들의 개선노력을 통해 그 차액만큼 연 평균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43) 자료의 한계로 인해 결과해석이 일부한계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기존의 목표급여비 추정방법론에 비해 다양한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번 연구의 목적에 비취볼 때 본 연구에서 활용된 GWR은 목표급여비 추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가 검토되고, 구축된다면 기존의 추정방법보다 더 나은 추정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4] GIS를 이용한 지시별 1인당 연평균 실제 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서울지역본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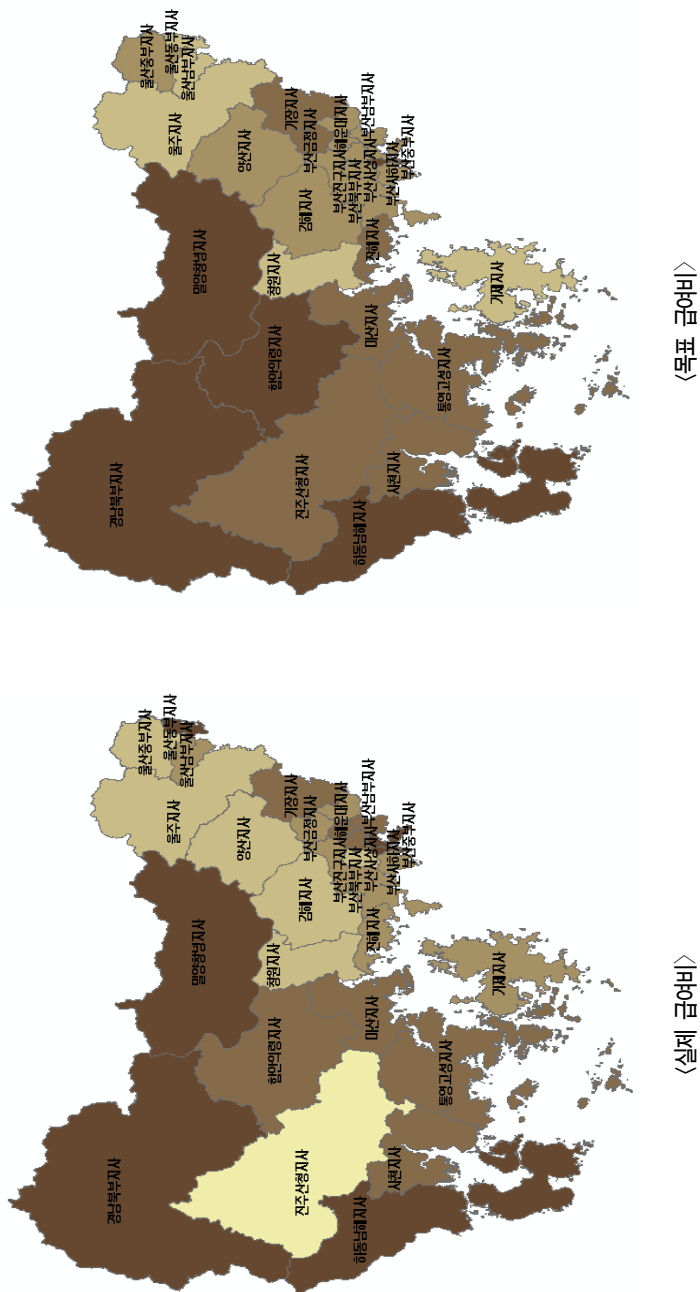
〈표 5-31〉 부산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지사명  | 1인당 연평균 급여비(원) |         |         | 연간 총 급여비(억원) |       |      |
|------|----------------|---------|---------|--------------|-------|------|
|      | 실제             | 목표      | 차액      | 실제           | 목표    | 차액   |
| 01지사 | 687,439        | 596,940 | -90,499 | 2,698        | 2,343 | -355 |
| 02지사 | 662,691        | 574,752 | -87,940 | 1,465        | 1,271 | -194 |
| 03지사 | 639,447        | 601,157 | -38,291 | 2,005        | 1,885 | -120 |
| 04지사 | 610,679        | 573,802 | -36,877 | 1,468        | 1,380 | -89  |
| 05지사 | 746,271        | 714,918 | -31,353 | 535          | 513   | -22  |
| 06지사 | 680,490        | 649,842 | -30,649 | 913          | 872   | -41  |
| 07지사 | 638,188        | 609,216 | -28,972 | 1,133        | 1,081 | -51  |
| 08지사 | 676,326        | 657,978 | -18,349 | 694          | 675   | -19  |
| 09지사 | 618,830        | 604,483 | -14,346 | 2,096        | 2,047 | -49  |
| 10지사 | 612,700        | 599,851 | -12,849 | 1,717        | 1,681 | -36  |
| 11지사 | 631,703        | 620,720 | -10,983 | 1,884        | 1,851 | -33  |
| 12지사 | 588,909        | 578,018 | -10,891 | 1,923        | 1,888 | -36  |
| 13지사 | 620,702        | 611,377 | -9,325  | 1,135        | 1,118 | -17  |
| 14지사 | 580,011        | 576,957 | -3,054  | 3,238        | 3,221 | -17  |
| 15지사 | 621,476        | 624,130 | 2,654   | 686          | 689   | 3    |
| 16지사 | 633,045        | 635,784 | 2,739   | 1,111        | 1,116 | 5    |
| 17지사 | 611,637        | 614,556 | 2,919   | 1,196        | 1,202 | 6    |
| 18지사 | 613,588        | 618,102 | 4,513   | 527          | 530   | 4    |
| 19지사 | 608,635        | 614,393 | 5,758   | 766          | 773   | 7    |
| 20지사 | 577,748        | 584,279 | 6,531   | 1,188        | 1,201 | 13   |
| 21지사 | 577,870        | 586,471 | 8,601   | 2,729        | 2,770 | 41   |
| 22지사 | 590,588        | 599,635 | 9,048   | 2,023        | 2,054 | 31   |
| 23지사 | 641,688        | 660,184 | 18,496  | 656          | 675   | 19   |
| 24지사 | 589,230        | 609,876 | 20,647  | 1,474        | 1,526 | 52   |
| 25지사 | 571,248        | 596,686 | 25,438  | 1,407        | 1,470 | 63   |
| 26지사 | 582,421        | 610,068 | 27,647  | 1,689        | 1,769 | 80   |
| 27지사 | 574,432        | 604,104 | 29,671  | 1,487        | 1,563 | 77   |
| 28지사 | 651,735        | 684,910 | 33,176  | 756          | 795   | 38   |
| 29지사 | 562,986        | 638,289 | 75,303  | 1,596        | 1,809 | 213  |

[그림 5-5] 부산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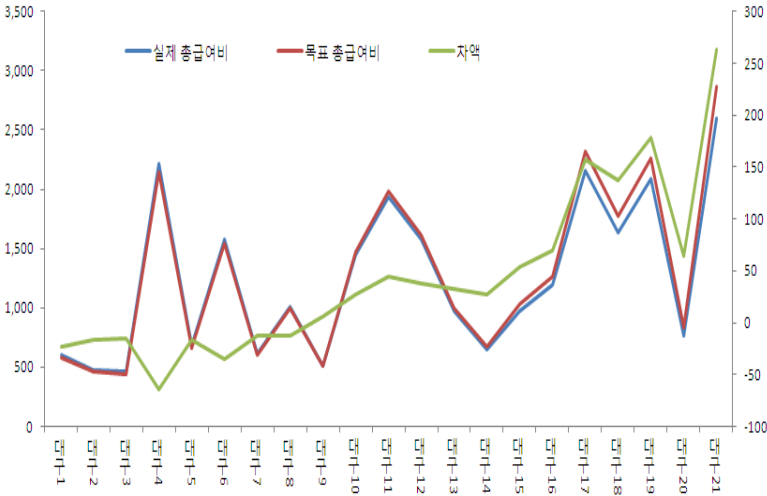
[그림 5-6] GIS를 이용한 지시별 1인당 연평균 소득에 따른 취업비율과 취업자여부(부사지연보)



〈표 5-32〉 대구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지사명  | 1인당 연평균 급여비(원) |         |         | 연간 총 급여비(억원) |       |     |
|------|----------------|---------|---------|--------------|-------|-----|
|      | 실제             | 목표      | 차액      | 실제           | 목표    | 차액  |
| 01지사 | 681,683        | 655,106 | -26,576 | 603          | 579   | -24 |
| 02지사 | 704,015        | 678,720 | -25,294 | 478          | 461   | -17 |
| 03지사 | 702,651        | 679,304 | -23,348 | 458          | 443   | -15 |
| 04지사 | 606,862        | 589,118 | -17,744 | 2,213        | 2,148 | -65 |
| 05지사 | 648,347        | 632,199 | -16,148 | 682          | 665   | -17 |
| 06지사 | 617,177        | 603,377 | -13,800 | 1,576        | 1,541 | -35 |
| 07지사 | 633,451        | 620,637 | -12,814 | 613          | 600   | -12 |
| 08지사 | 649,804        | 641,763 | -8,041  | 1,013        | 1,001 | -13 |
| 09지사 | 641,856        | 648,623 | 6,767   | 509          | 514   | 5   |
| 10지사 | 612,335        | 623,833 | 11,498  | 1,445        | 1,472 | 27  |
| 11지사 | 593,970        | 607,465 | 13,494  | 1,940        | 1,984 | 44  |
| 12지사 | 603,272        | 617,636 | 14,364  | 1,580        | 1,618 | 38  |
| 13지사 | 590,674        | 610,411 | 19,737  | 968          | 1,001 | 32  |
| 14지사 | 621,294        | 646,995 | 25,701  | 648          | 675   | 27  |
| 15지사 | 581,174        | 612,968 | 31,794  | 979          | 1,033 | 54  |
| 16지사 | 587,391        | 621,846 | 34,455  | 1,192        | 1,262 | 70  |
| 17지사 | 533,332        | 572,114 | 38,781  | 2,160        | 2,317 | 157 |
| 18지사 | 565,557        | 612,682 | 47,125  | 1,640        | 1,777 | 137 |
| 19지사 | 556,797        | 604,568 | 47,770  | 2,084        | 2,262 | 179 |
| 20지사 | 589,940        | 639,446 | 49,505  | 766          | 830   | 64  |
| 21지사 | 540,782        | 595,568 | 54,786  | 2,598        | 2,861 | 263 |

[그림 5-7] 대구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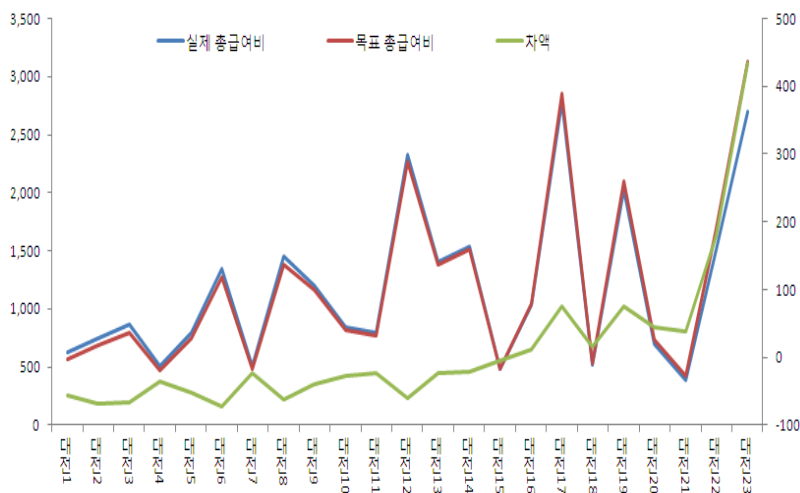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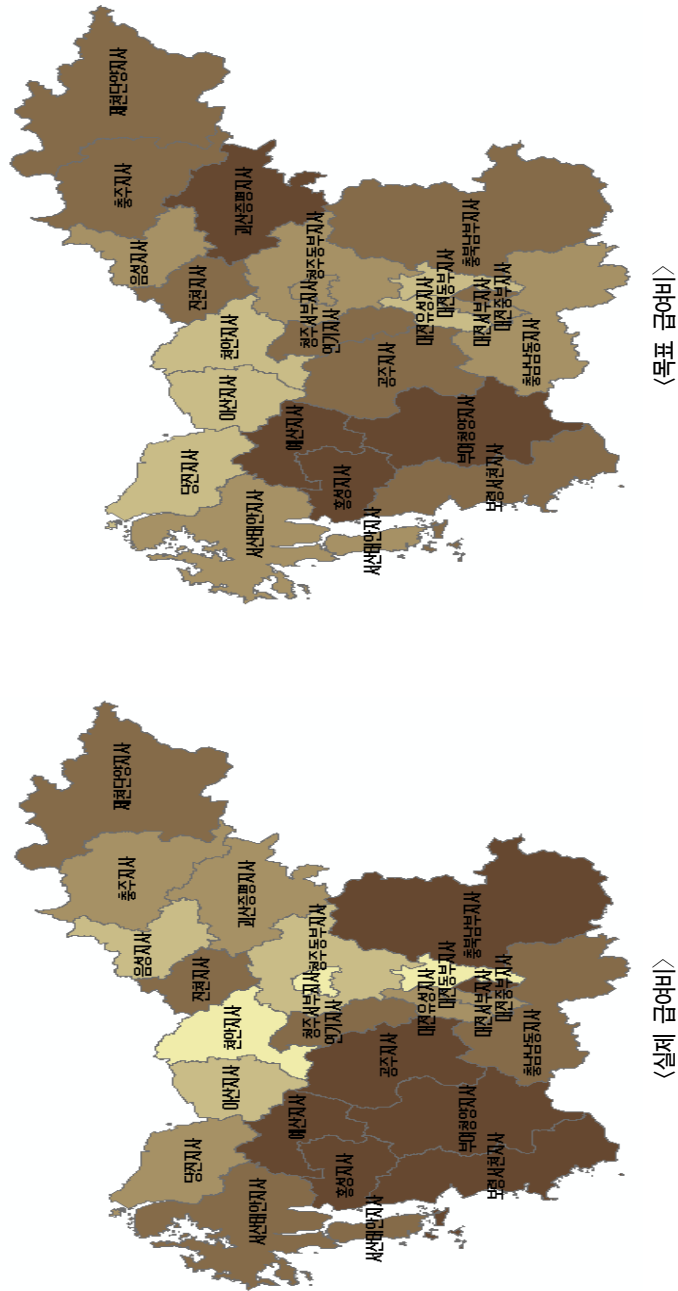
〈표 5-33〉 대전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지사명  | 1인당 연평균 급여비(원) |         |         | 연간 총 급여비(억원) |       |     |
|------|----------------|---------|---------|--------------|-------|-----|
|      | 실제             | 목표      | 차액      | 실제           | 목표    | 차액  |
| 01지사 | 738,957        | 671,387 | -67,571 | 626          | 569   | -57 |
| 02지사 | 674,971        | 613,818 | -61,153 | 751          | 683   | -68 |
| 03지사 | 696,562        | 643,007 | -53,555 | 860          | 794   | -66 |
| 04지사 | 697,564        | 648,473 | -49,092 | 506          | 471   | -36 |
| 05지사 | 690,864        | 645,013 | -45,850 | 795          | 742   | -53 |
| 06지사 | 664,401        | 629,126 | -35,275 | 1,350        | 1,279 | -72 |
| 07지사 | 685,786        | 653,581 | -32,205 | 503          | 480   | -24 |
| 08지사 | 637,976        | 610,906 | -27,070 | 1,448        | 1,386 | -61 |
| 09지사 | 631,536        | 610,514 | -21,022 | 1,202        | 1,162 | -40 |
| 10지사 | 601,998        | 581,719 | -20,278 | 843          | 815   | -28 |
| 11지사 | 645,204        | 626,400 | -18,804 | 799          | 776   | -23 |
| 12지사 | 605,329        | 589,704 | -15,625 | 2,329        | 2,269 | -60 |
| 13지사 | 582,749        | 572,857 | -9,892  | 1,406        | 1,382 | -24 |
| 14지사 | 587,162        | 578,812 | -8,351  | 1,540        | 1,518 | -22 |
| 15지사 | 641,873        | 636,270 | -5,603  | 487          | 483   | -4  |
| 16지사 | 609,567        | 615,765 | 6,199   | 1,029        | 1,040 | 10  |
| 17지사 | 562,520        | 577,551 | 15,032  | 2,782        | 2,857 | 74  |
| 18지사 | 616,394        | 635,806 | 19,412  | 517          | 534   | 16  |
| 19지사 | 570,872        | 591,805 | 20,933  | 2,021        | 2,096 | 74  |
| 20지사 | 569,506        | 605,909 | 36,403  | 693          | 738   | 44  |
| 21지사 | 612,242        | 672,146 | 59,904  | 381          | 418   | 37  |
| 22지사 | 529,298        | 592,323 | 63,025  | 1,513        | 1,693 | 180 |
| 23지사 | 495,341        | 575,194 | 79,854  | 2,697        | 3,131 | 435 |

[그림 5-9] 대전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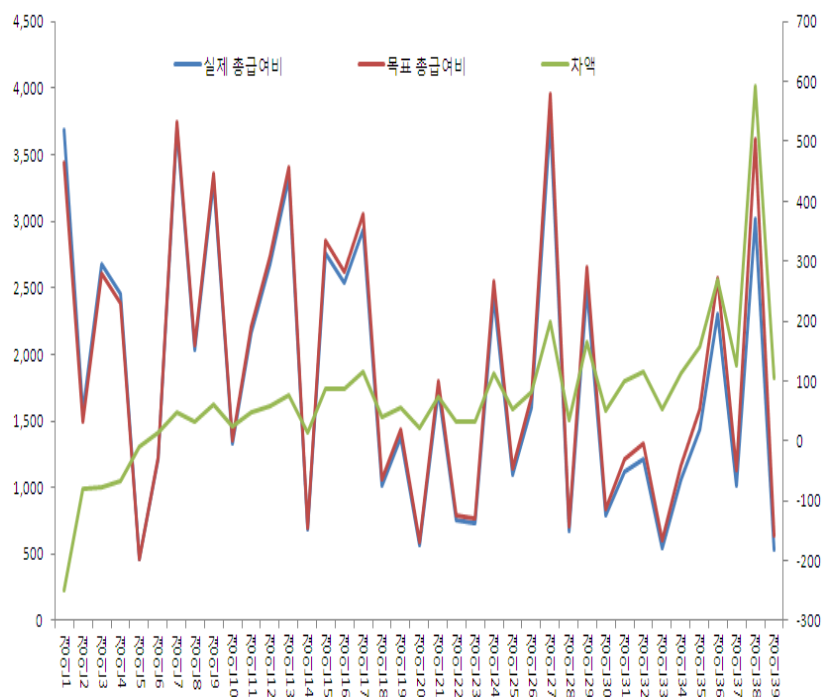
[그림 5-10] GIS를 이용한 지사별 1인당 연평균 시제 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대전지역본부)



〈표 5-34〉 경인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지사명  | 1인당 연평균 급여비(원) |         |         | 연간 총 급여비(억원) |       |      |
|------|----------------|---------|---------|--------------|-------|------|
|      | 실제             | 목표      | 차액      | 실제           | 목표    | 차액   |
| 01지사 | 596,393        | 556,130 | -40,263 | 3,686        | 3,438 | -249 |
| 02지사 | 617,517        | 586,493 | -31,025 | 1,570        | 1,491 | -79  |
| 03지사 | 580,804        | 564,293 | -16,511 | 2,679        | 2,603 | -76  |
| 04지사 | 579,193        | 563,440 | -15,752 | 2,452        | 2,386 | -67  |
| 05지사 | 646,064        | 632,556 | -13,508 | 466          | 456   | -10  |
| 06지사 | 580,579        | 586,688 | 6,109   | 1,207        | 1,220 | 13   |
| 07지사 | 566,485        | 573,628 | 7,143   | 3,699        | 3,745 | 47   |
| 08지사 | 566,266        | 575,057 | 8,791   | 2,039        | 2,071 | 32   |
| 09지사 | 544,538        | 554,387 | 9,849   | 3,302        | 3,362 | 60   |
| 10지사 | 571,505        | 581,706 | 10,202  | 1,335        | 1,359 | 24   |
| 11지사 | 551,524        | 563,362 | 11,837  | 2,165        | 2,211 | 46   |
| 12지사 | 570,671        | 582,855 | 12,185  | 2,676        | 2,733 | 57   |
| 13지사 | 549,408        | 562,045 | 12,638  | 3,327        | 3,403 | 77   |
| 14지사 | 596,804        | 609,886 | 13,082  | 680          | 695   | 15   |
| 15지사 | 545,858        | 563,063 | 17,205  | 2,763        | 2,850 | 87   |
| 16지사 | 559,637        | 578,903 | 19,266  | 2,534        | 2,621 | 87   |
| 17지사 | 551,511        | 573,132 | 21,621  | 2,939        | 3,054 | 115  |
| 18지사 | 564,964        | 586,588 | 21,623  | 1,019        | 1,058 | 39   |
| 19지사 | 569,513        | 592,034 | 22,521  | 1,378        | 1,432 | 54   |
| 20지사 | 595,025        | 617,715 | 22,690  | 571          | 593   | 22   |
| 21지사 | 566,674        | 590,905 | 24,232  | 1,728        | 1,802 | 74   |
| 22지사 | 566,751        | 591,709 | 24,959  | 753          | 786   | 33   |
| 23지사 | 581,887        | 608,061 | 26,174  | 732          | 765   | 33   |
| 24지사 | 565,510        | 591,935 | 26,425  | 2,432        | 2,546 | 114  |
| 25지사 | 561,716        | 588,555 | 26,839  | 1,092        | 1,145 | 52   |
| 26지사 | 550,885        | 579,028 | 28,143  | 1,597        | 1,679 | 82   |
| 27지사 | 534,007        | 562,176 | 28,169  | 3,758        | 3,956 | 198  |
| 28지사 | 598,109        | 629,311 | 31,202  | 668          | 703   | 35   |
| 29지사 | 553,756        | 590,081 | 36,324  | 2,496        | 2,660 | 164  |
| 30지사 | 563,529        | 600,063 | 36,534  | 791          | 843   | 51   |
| 31지사 | 543,666        | 592,174 | 48,508  | 1,114        | 1,214 | 99   |
| 32지사 | 531,489        | 582,208 | 50,719  | 1,216        | 1,332 | 116  |
| 33지사 | 551,443        | 604,032 | 52,589  | 548          | 601   | 52   |
| 34지사 | 551,251        | 609,437 | 58,185  | 1,058        | 1,169 | 112  |
| 35지사 | 538,945        | 598,241 | 59,296  | 1,432        | 1,590 | 158  |
| 36지사 | 522,419        | 583,438 | 61,019  | 2,307        | 2,576 | 269  |
| 37지사 | 532,971        | 599,887 | 66,916  | 1,008        | 1,135 | 127  |
| 38지사 | 457,367        | 546,987 | 89,620  | 3,022        | 3,615 | 592  |
| 39지사 | 501,090        | 600,332 | 99,241  | 531          | 636   | 105  |

[그림 5-11] 경인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실제 총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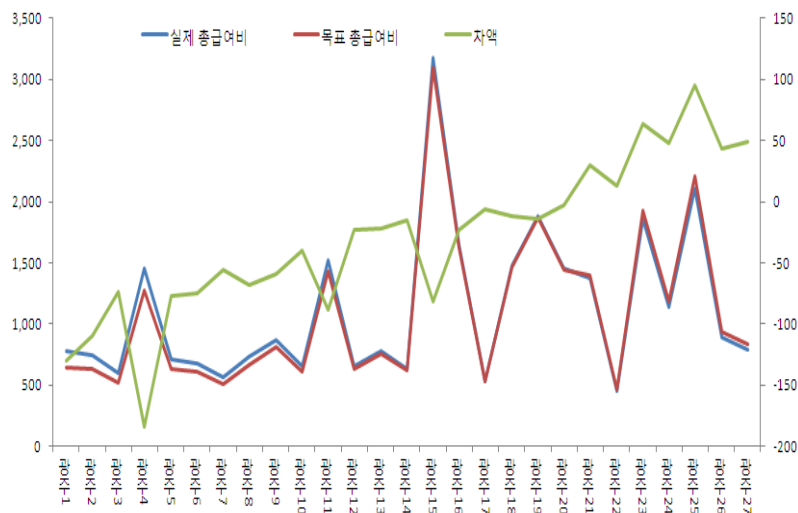


〈표 5-35〉 광주지역본부의 실제 급여비 및 추정된 목표 급여비 결과 비교

| 지사명  | 1인당 연평균 급여비(원) |         |          | 연간 총 급여비(억원) |       |      |
|------|----------------|---------|----------|--------------|-------|------|
|      | 실제             | 목표      | 차액       | 실제           | 목표    | 차액   |
| 01지사 | 821,516        | 683,950 | -137,566 | 775          | 645   | -130 |
| 02지사 | 815,628        | 695,428 | -120,200 | 743          | 633   | -109 |
| 03지사 | 778,074        | 682,267 | -95,807  | 594          | 520   | -73  |
| 04지사 | 709,206        | 619,738 | -89,468  | 1,455        | 1,271 | -184 |
| 05지사 | 778,804        | 694,648 | -84,156  | 708          | 632   | -77  |
| 06지사 | 727,347        | 647,995 | -79,353  | 682          | 608   | -74  |
| 07지사 | 725,155        | 653,328 | -71,826  | 562          | 507   | -56  |
| 08지사 | 772,746        | 701,563 | -71,183  | 735          | 668   | -68  |
| 09지사 | 699,090        | 651,821 | -47,269  | 867          | 808   | -59  |
| 10지사 | 747,450        | 701,722 | -45,728  | 652          | 612   | -40  |
| 11지사 | 657,508        | 619,129 | -38,379  | 1,519        | 1,431 | -89  |
| 12지사 | 678,622        | 654,961 | -23,661  | 651          | 628   | -23  |
| 13지사 | 670,632        | 651,838 | -18,795  | 779          | 757   | -22  |
| 14지사 | 698,167        | 681,496 | -16,671  | 634          | 619   | -15  |
| 15지사 | 583,128        | 568,263 | -14,866  | 3,182        | 3,101 | -81  |
| 16지사 | 625,040        | 616,410 | -8,630   | 1,650        | 1,627 | -23  |
| 17지사 | 727,276        | 719,231 | -8,046   | 536          | 530   | -6   |
| 18지사 | 617,254        | 612,540 | -4,714   | 1,477        | 1,465 | -11  |
| 19지사 | 613,167        | 608,602 | -4,565   | 1,886        | 1,871 | -14  |
| 20지사 | 612,075        | 610,781 | -1,294   | 1,452        | 1,449 | -3   |
| 21지사 | 622,437        | 636,056 | 13,618   | 1,373        | 1,403 | 30   |
| 22지사 | 661,768        | 680,594 | 18,826   | 448          | 461   | 13   |
| 23지사 | 584,307        | 604,248 | 19,941   | 1,859        | 1,923 | 63   |
| 24지사 | 608,744        | 634,233 | 25,489   | 1,141        | 1,188 | 48   |
| 25지사 | 585,237        | 611,691 | 26,454   | 2,109        | 2,205 | 95   |
| 26지사 | 591,256        | 619,993 | 28,737   | 891          | 934   | 43   |
| 27지사 | 633,506        | 673,541 | 40,035   | 786          | 835   | 50   |



[그림 5-13] 광주지역본부 관할 지사별 연간 실제 총급여비 및 목표 총급여비 비교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회귀모형의 경우, 지역이 가지는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 지사에 걸쳐 평균적이며 전역적인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지사가 가지는 특성에 관계없이 특정 목표진료비에 미치는 영향변수가 전체 지사에서 동일하게 작용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경우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이 가지는 장점과 더불어, 기존의 일반적 회귀모형들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적으로 이질적인 부분까지 함께 고려됨에 따라 지역 간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에서는 매우 적합한 통계적 접근방법론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결과는 GIS와도 연계되어 제시될 수 있음에 따라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도 매우 탁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가 급여비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추정된 목표급여비에 대한 해석의 정확도 및 모형의 적합도가 다소 떨어지는<sup>44)</sup> 일부 문제가 존재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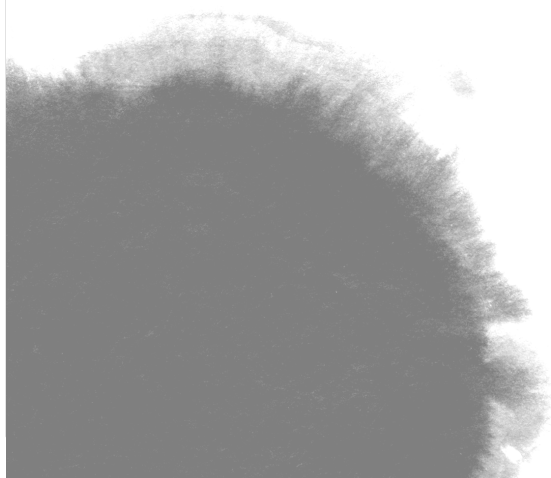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향후 목표급여비 추정에 있어서는 지사별로 네덜란드 사례에서와 같이 보건복지부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지역본부별 혹은 지사별로 가입자(국민)의 성별, 연령, 질병 및 장애정도, 직업 유무, 소득수준, 지역 등을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동기금을 가입자가 속해 있는 보험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선진국사례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자원 등을 감안한 질환별 지역 내 의료이용 자체 충족율 및 지역의 건강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목표급여비를 추정한다면 현재의 추정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며, 이를 이용한 내부경쟁 지표로서의 목표급여비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4) 단, 동일한 독립변수를 사용했을 경우의 일반적인 회귀모형 적합도 보다는 높음.



# 6장

## 결론 및 정책제언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우선 지역본부별, 지사별 진료비 편차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관리측면의 비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한 내부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내부경쟁의 방법은 완전시장경쟁보다는 관리된 또는 규제된 조건하에서 경쟁을 의미하며, 단일보험자내에서 다보험자의 진료비 효율화 장점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진료비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주요국의 경쟁체계 운영방법과 다보험자 방식의 국가에서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 위험조정프로그램의 적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된다.

셋째 내부경쟁 적용방안으로는 자료를 보정하여 진료비의 지사 간 차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목표진료비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로 통합하면서 사후적 위험분산 방식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위험분산방식에서 소득재분배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지만 재정이 전체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나 지역 간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합방식의 단일 보험자의 위험분산 효과는 극대화하되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에 유도할 수 없는 지역간, 지사별 경쟁시스템을 다보험자 방식의 사전적 위험분산 기전으로부터 차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그리고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험조정프로그램이고, 과거 우리 역시 통합 전 조합 간 재정균등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던 내용이다.

다보험자 방식의 사전적 위험분산을 위해 활용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은 조합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의 기금을 일정배율에 따라 조성하고, 조합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건강상태, 소득, 연령, 성별, 장애여부, 질병이환율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재배분함으로써 재정적자로 인한 조합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전이다.

그러므로 현행 단일보험자 방식에서도 재정을 전국단위로 배분하되, 사전적으로 위험분산 방식의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응용하면 적자 재정을 사후에 다시 배분하더라도 그 책임에 따라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평가를 통해 공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목표진료비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사전에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을 통해 배분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지사별, 지역본부별 경쟁메카니즘은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내부경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관리 운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을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 최병호(2007)는 향후 건강보장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건강보장재정 보호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원이 모두 요구받게 될 중요한 과제로 예상하고 있다. 최병호(2007)는 건강보장 집행



체계 개편방안을 첫째, 공단과 심평원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각 조직의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와 가입자 건강관리 기능 전환과 건강보장 정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심사평가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심사와 질 평가 업무를 담당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가칭 ‘건강보험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관리원은 가입자의 건강관리, 진료비심사지급, 건강보장정책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존에 심평원이 담당하던 평가 기능은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평가전문기관(가칭 ‘의료평가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리원과 의료평가원 간의 의료정보공유와 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건강보험정보관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최병호, 2007; 84~85)<sup>45)</sup>.

이러한 제안에 대해 최병호(2007)의 주장은 지불보상제도의 변화를 선행과제로 보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 기능이 축소되고 질병의 사전예방 또는 목표진료비 제도의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지출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내부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목표진료비 설정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험자의 역할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방안이 적정하지 다양한 대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sup>46)</sup>

45) 첫째 방안은 4대보험의 자격관리 및 지원 기능만 남겨놓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도입하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4대보험 통합 이전에 심사평가원이 확대되면서 급여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심사평가원이 실질적인 보험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격이나 업무지원 기능의 공단이 축소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둘째 방안은 제도자체와 보험자 역할 측면에서는 그 기능을 강화하여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의료평가원과 건강보험정보관리센터의 기능이나 역할 등이 모호해지고, 공급자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음.

끝으로 선진국 사례에서 시사점으로 언급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보험자가 공급자와의 계약에서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다보험자 방식에서는 공급자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나 단일보험자에서는 다소 공급자와의 경쟁유도 또는 구매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임을 감안 보다 발전적이고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지사별 경쟁을 강화하는 방법은 객관적 지표 설정이나 가입자 입장에서 만족도나 서비스 질적 향상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의 활용, 목표진료비의 적용 등을 통해 보험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별 경쟁체계가 도입된다면 자구적으로 진료비 절감 노력을 지사별 또는 지역본부별로 추구 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중앙에서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별, 지사별로 아래에서부터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분권화와 개별 지사나 지역본부의 동기유발 등의 차원에서도 스스로 진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나 방법을 고안하고, 평가척도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론과 정책제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에서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제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우선 관

---

46) 대만은 총액계약제 방식에서 지역별로 총액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보험자와 공급자간 계약에서 보험자가 공급자보다 우위에서 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진료비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물론 두 나라 모두 총액계약제 방식의 지불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최병호(2007)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내부경쟁 도입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는 사안임.

리운영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이다. 관리운영 측면에서 무엇보다 과거 20여 년전 전국민 건강보험 확대 시에 설계한 업무 설계에 따라 구성된 인력 배치와 업무분배는 전산화와 정보화가 가속화된 시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 효율적 조직구조로 가기 위해서 업무를 재설계하고, 필수 인원 이외의 인력을 위한 업무 개발 또는 급여서비스 강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분야로 이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보험료 징수업무가 효율화 되었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중심의 정보 집중과 4대 사회보험의 관리업무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관장자로서 향후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징수업무와 연계하여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공단의 업무재설계와 관리운영 효율화에도 연계되는 사안이지만 보다 거시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사항이다<sup>47)</sup>.

셋째, 법적 또는 제도적 측면에서 장애요인의 개선이 요구되는데 먼저, 관장자인 보건복지부, 실행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관장자인 복지부와 의 입장차이 때문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으로 보험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법적 규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사간 경쟁체계도입과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보험자는 관리 및 재정운영 방식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정범위 내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최인덕(2011)은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2

47) 한편, 남찬섭·백인립(2010)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이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징수업무 뿐만 아니라 적용업무도 같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는 기존 건강보험업무에 다른 사회보험공단의 업무가 추가됨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음.

조 관장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추가될 것과 동법령 제16조의 정관내용에서 재정관리와 보험급여 관리 항목이 삽입 그리고 제50조에서 급여 확인 조항을 급여의 확인 및 관리 조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6조의 개정은 분권화를 통한 지역본부와 지사의 재정관리 측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급여확인 및 관리의 지역본부와 지사의 업무권한의 명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 도입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자료 이용의 한계로 인한 문제도 제기 될 수 있지만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경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승모(2011).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사고취약구간 선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2010). 현행 평가지표 적용가능성 검토 및 개선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0년 11월 회의자료 (2011년 재정추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2010). 영국,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계수(2001).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 김두섭·강남준(2008). 회귀분석 : 기초와 응용 (개정판). 나남출판사.
- 김성희(2012). 특혜와 비리의 특급열차, KTX 민영화 추진의 허구성. 참여연대.
- 김진수(2012). 독일, 네덜란드출장조사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현(2007). 건강보험 관리운영조직의 평가와 발전방향, 건강보험도입 30년 평가와 발전방향.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후가학술대회자료집, pp.5-25.
- 김창엽(2009).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
- 남찬섭·백인립(2010).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의 합의와 전망. 복지동향. 참여연대.
- 민인순(2011). ‘국내외 진료비 정보 공개현황 및 공개모형 개발’,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연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박일수 외(2011).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박종덕(2010). 독일의 질병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개혁동향. 건강보장정책, 9(2), pp.170-179.
- 사공진(2007).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역사와 개혁방안. 대한병원협회지, 5. 6월호, pp.12-18.
- 신선경(2010).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승일 사장에게 듣는다’ 인터뷰. Electric Power, 전력문화사, 제42호
- 신의철, 김진경 외(201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 모형 제안(분산 경쟁형). 대한 의사협회.
- 안명옥(2006). 경쟁과 효율을 통한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편방향,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시리즈 #3. 국회의원 안명옥.
- 이규식(2008). 의료선진화와 규제개혁, 건강연대토론회 자료집.
- 이상이, 이용갑 전창배, 서남규 최인덕(2006).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개념정립과 발전모델에 관한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용갑(2009). ‘독일건강보험 제도의 현황과 특성’,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정기택(2004).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혁신방안 연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동기(2009). 지역 단위 조사연구와 공간정보의 활용 : 지리정보시스템과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0(3).
- 철도연구원(2007).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과 기업가치. 철도연구원.
- 최병호(2007). 건강보험 미래전략.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인덕(2008). 의료보험통합의 위험분산 효과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인덕(2009). ‘대만건강보험 제도의 현황과 특성’,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최인덕(2011).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부경쟁체제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27(4), pp.27-54
- 황라일 외(2008).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시사점. *건강보험포럼*, 7(2), pp. 15-30
- 황성철 외(2011).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 Anderson and Hussey(2004). *Special Issues with single-payer health insurance system*, HNP Discussion paper.
- Bankauskaite & Saltman(2007). *Central issues in the decentralization debate, Decentralization in Health Care*, Open University Press.
- Bankauskaite, Dubois and Saltman(2007). *Patterns of decentralization across European, Decentralization in Health Care*, Open University Press.
- Berry W.D. and Feldman, S(1985). *"Multiple Regression in Practice."*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050*. Sage Publication.
- BNHI(2012).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file*, 2011.
- Enthoven(1993). *Managed Competition; An Agenda for Action*, Health Affairs.
- Fox, J(1991). *Regression Diagnostics. Sage University Pap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 in the Social Sciences 07-079*. Sage Publication.
- Gottert and Schieber(2006). *Health Financing Revisited*, The World Bank.
- Guardian(2012). *NHS reforms: seven in 10 hospital doctors reject bill*, 2012, Friday 16 March 2012 13.37 GMT.
- Julian Birkinshaw(2001). *Strategies for Managing Internal Competi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3(1).

Morone(2000). History of Managed competition "citizen or shoppers? solidarity under siege".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Vol. 25, pp.958-968

Rondinelli(1983). Decentr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Staff Working paper 581*, Washington D.C, World Bank.

Saltman et al(2007). *Decentralization in Health care*, Open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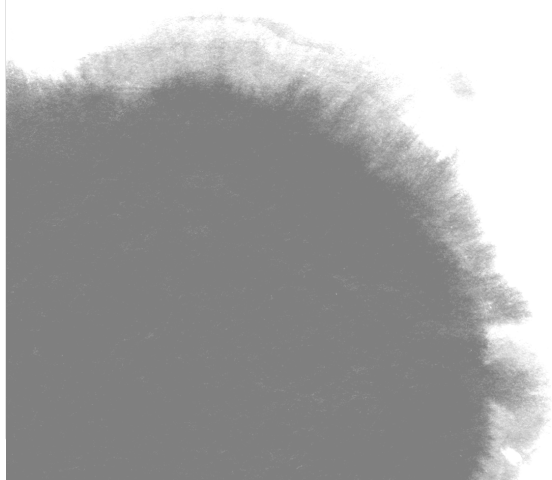
OECD(2007). *OECD Health Data 2007*.

WHO(2008). *Dutch Health Care Authority*

WHO(2010).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 The Netherlands*



100





# 부 록

## 부록 1. 지역본부별 관할지사(2009년 기준)

| 지역<br>본부       | 지 사 명   | 사무소 위치     | 관 할 구 역               |
|----------------|---------|------------|-----------------------|
| 서울<br>지역<br>본부 | 종로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종로구                   |
|                | 중구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 중구(중구서부지사 관할구역 제외)    |
|                | 중구서부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 중구 소공동, 중림동, 회현동      |
|                | 용산지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용산구                   |
|                | 성동지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동구                   |
|                | 광진지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구                   |
|                | 동대문지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동대문구                  |
|                | 중랑지사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중랑구                   |
|                | 성북지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                   |
|                | 강북지사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강북구                   |
|                | 도봉지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도봉구                   |
|                | 노원지사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노원구                   |
|                | 은평지사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은평구                   |
|                | 서대문지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대문구                  |
|                | 마포지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마포구                   |
|                | 양천지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양천구                   |
|                | 강서지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강서구                   |
|                | 구로지사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로구                   |
|                | 금천지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금천구                   |
|                | 영등포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영등포북부지사 관할구역 제외) |
|                | 영등포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 여의도동             |

| 지역<br>본부       | 지 사 명  | 사무소 위치              | 관 할 구 역                    |
|----------------|--------|---------------------|----------------------------|
|                | 동작지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                        |
|                | 관악지사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관악구                        |
|                | 서초남부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초구 서초동, 양재동, 내곡동          |
|                | 서초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초구(서초남부지사 관할구역 제외)        |
|                | 강남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강남구(강남서부 및 강남북부지사 관할구역 제외) |
|                | 강남서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
|                | 강남북부지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
|                | 송파지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송파구                        |
|                | 강동지사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강동구                        |
|                | 강원서부지사 | 강원도 춘천시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
|                | 원주형성지사 | 강원도 원주시             | 원주시, 횡성군                   |
|                | 강릉지사   | 강원도 강릉시             | 강릉시                        |
|                | 동해지사   | 강원도 동해시             | 동해시                        |
|                | 태백정선지사 | 강원도 태백시             | 태백시, 정선군                   |
|                | 강원동부지사 | 강원도 속초시             | 속초시,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
|                | 삼척지사   | 강원도 삼척시             | 삼척시                        |
|                | 강원중부지사 | 강원도 홍천군             |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
|                | 평창영월지사 | 강원도 평창군             | 평창군, 영월군                   |
| 부산<br>지역<br>본부 | 부산중부지사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또는 영도구 | 중구, 동구, 영도구                |
|                | 부산서부지사 | 부산광역시 서구            | 서구                         |
|                | 부산진구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진구                       |
|                | 부산동래지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 동래구                        |
|                | 부산남부지사 | 부산광역시 남구 또는 수영구     | 남구, 수영구                    |
|                | 부산북부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또는 강서구     | 북구, 강서구                    |
|                | 해운대지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해운대구                       |
|                | 부산사하지사 | 부산광역시 사하구           | 사하구                        |
|                | 부산금정지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금정구                        |
|                | 부산연제지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연제구                        |
|                | 부산사상지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상구                        |
|                | 기장지사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                        |
|                | 울산중부지사 |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북구      | 중구, 북구                     |
|                | 울산남부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 남구                         |

| 지역<br>본부       | 지 사 명  | 사무소 위치         | 관 할 구 역       |
|----------------|--------|----------------|---------------|
|                | 울산동부지사 | 울산광역시 동구       | 동구            |
|                | 울주지사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주군           |
|                | 창원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
|                | 마산지사   | 경상남도 마산시       | 마산시           |
|                | 진주산청지사 | 경상남도 진주시       | 진주시, 산청군      |
|                | 진해지사   | 경상남도 진해시       | 진해시           |
|                | 통영고성지사 | 경상남도 통영시       |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
|                | 사천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 사천시           |
|                | 김해지사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
|                | 밀양창녕지사 | 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시, 창녕군      |
|                | 거제지사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           |
|                | 양산지사   | 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시           |
|                | 함안의령지사 | 경상남도 함안군       | 함안군, 의령군      |
|                | 경남북부지사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함천군, 함양군 |
|                | 하동남해지사 |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 남해군      |
| 대구<br>지역<br>본부 | 대구중부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또는 서구 | 중구, 서구        |
|                | 대구동부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 동구            |
|                | 대구남부지사 | 대구광역시 남구       | 남구            |
|                | 대구북부지사 | 대구광역시 북구       | 북구            |
|                | 대구수성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수성구           |
|                | 대구달서지사 | 대구광역시 달서구      | 달서구           |
|                | 달성지사   | 대구광역시 달성군      | 달성군           |
|                | 포항남부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남구, 울릉군   |
|                | 포항북부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 포항시 북구        |
|                | 경주지사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           |
|                | 김천지사   | 경상북도 김천시       | 김천시           |
|                | 경북북부지사 | 경상북도 안동시       |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
|                | 구미지사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
|                | 영주봉화지사 | 경상북도 영주시       | 영주시, 봉화군      |
|                | 영천지사   | 경상북도 영천시       | 영천시           |
|                | 상주지사   | 경상북도 상주시       | 상주시           |
|                | 문경예천지사 | 경상북도 문경시       | 문경시, 예천군      |
|                | 경산청도지사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산시, 청도군      |
|                | 의성군위지사 | 경상북도 의성군       | 의성군, 군위군      |

| 지역<br>본부       | 지 사 명  | 사무소 위치          | 관 할 구 역            |
|----------------|--------|-----------------|--------------------|
| 광주<br>지역<br>본부 | 경북서부지사 | 경상북도 칠곡군        |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      |
|                | 울진영덕지사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 울진군           |
|                | 광주동부지사 |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남구  | 동구, 남구             |
|                | 광주서부지사 | 광주광역시 서구 또는 광산구 | 서구, 광산구            |
|                | 광주북부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 북구                 |
|                | 전주남부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시 완산구            |
|                | 전주북부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시 덕진구, 완주군       |
|                | 군산지사   | 전라북도 군산시        | 군산시                |
|                | 익산지사   | 전라북도 익산시        | 익산시                |
|                | 정읍지사   | 전라북도 정읍시        | 정읍시                |
|                | 남원순창지사 | 전라북도 남원시        | 남원시, 순창군           |
|                | 김제지사   | 전라북도 김제시        | 김제시                |
|                | 전북동부지사 | 전라북도 진안군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
|                | 부안고창지사 | 전라북도 부안군        | 부안군, 고창군           |
|                | 목포지사   | 전라남도 목포시        | 목포시                |
|                | 여수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        | 여수시                |
|                | 순천지사   |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시                |
|                | 나주시사   |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
|                | 무안신안지사 | 전라남도 무안군        | 무안군, 신안군           |
|                | 광양구례지사 | 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시, 구례군           |
|                | 고흥보성지사 | 전라남도 고흥군        | 고흥군, 보성군           |
|                | 화순지사   | 전라남도 화순군        | 화순군                |
|                | 해남진도지사 | 전라남도 해남군        | 해남군, 진도군           |
|                | 완도강진지사 | 전라남도 강진군        | 강진군, 완도군           |
|                | 영암장흥지사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 장흥군           |
|                | 영광함평지사 | 전라남도 영광군        | 영광군, 함평군           |
|                | 전남북부지사 | 전라남도 장성군        | 장성군, 곡성군, 담양군      |
|                | 제주지사   | 제주도 제주시         | 제주시                |
| 대전<br>지역<br>본부 | 대전동부지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또는 동구 | 대덕구, 동구            |
|                | 대전중부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 중구                 |
|                | 대전서부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 서구                 |
|                | 대전유성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유성구                |
|                | 청주동부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
|                | 청주서부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 흥덕구            |

| 지역<br>본부       | 지 사 명  | 사무소 위치          | 관 할 구 역       |
|----------------|--------|-----------------|---------------|
|                | 충주지사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
|                | 제천단양지사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단양군      |
|                | 충북남부지사 | 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                | 진천지사   | 충청북도 진천군        | 진천군           |
|                | 괴산증평지사 |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증평군      |
|                | 음성지사   | 충청북도 음성군        | 음성군           |
|                | 천안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
|                | 공주지사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
|                | 보령서천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서천군      |
|                | 아산지사   |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
|                | 서산태안지사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태안군      |
|                | 충남남동지사 | 충청남도 논산시 또는 계룡시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                | 연기지사   | 충청남도 연기군        | 연기군           |
|                | 부여청양지사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청양군      |
|                | 홍성지사   | 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
|                | 예산지사   |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           |
|                | 당진지사   | 충청남도 당진군        | 당진군           |
| 경인<br>지역<br>본부 | 인천중부지사 |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동구  | 중구, 동구, 옹진군   |
|                | 인천남부지사 | 인천광역시 남구 또는 연수구 | 남구, 연수구       |
|                | 인천남동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동구           |
|                | 인천부평지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평구           |
|                | 인천계양지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계양구           |
|                | 인천서부지사 | 인천광역시 서구        | 서구, 강화군       |
|                | 수원서부지사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
|                | 수원동부지사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
|                | 성남남부지사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분당구       |
|                | 성남북부지사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
|                | 의정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
|                | 안양만안지사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만안구       |
|                | 안양동안지사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동안구       |
|                | 부천남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소사구       |
|                | 부천북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원미구, 오정구  |
|                | 광명지사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

| 지역<br>본부 | 지 사 명   | 사무소 위치   | 관 할 구 역   |
|----------|---------|----------|-----------|
|          | 평택지사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
|          | 동두천연천지사 |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연천군 |
|          | 안산지사    |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
|          | 고양지사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
|          | 과천시사    |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       |
|          | 구리지사    | 경기도 구리시  | 구리시       |
|          | 남양주가평지사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가평군 |
|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       |
|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
|          | 군포지사    | 경기도 군포시  | 군포시       |
|          | 의왕지사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
|          | 하남지사    | 경기도 하남시  | 하남시       |
|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
|          | 파주지사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       |
|          | 이천시사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
|          | 안성지사    | 경기도 안성시  | 안성시       |
|          | 김포지사    |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
|          | 양주지사    | 경기도 양주시  | 양주시       |
|          | 여주지사    | 경기도 여주군  | 여주군       |
|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
|          | 경기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
|          | 포천지사    | 경기도 포천시  | 포천시       |
|          | 양평지사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       |



## 부록 2. 기존 지역본부 및 지사평가 지표(2009년 기준)

| 평가<br>부<br>문 | 구<br>분 | 평가지표                   | 지표유형    | 배<br>점 |
|--------------|--------|------------------------|---------|--------|
| 총계           |        | <28개 지표>               |         | 100    |
| I.공통         | 소계     | <8개 지표>                |         | 38     |
|              | 고객서비스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계량      | 10     |
|              |        | 외부고객 만족도               | 계량      | 5      |
|              |        | 내부고객 만족도               | 계량      | 2      |
|              |        | 전화응대 모니터링              | 계량      | 5      |
|              | 경영관리   | 재정안정                   | 계량, 비계량 | 5      |
|              |        | 청렴도 지수                 | 계량      | 3      |
|              |        | 경영개선 노력과 성과            | 비계량     | 3      |
|              |        | 1인당 업무처리량              | 계량      | 4      |
|              |        | 과·결원율                  | 계량      | 1      |
| II.행정<br>지원  | 소계     | <3개 지표>                |         | 9      |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 계량      | 3      |
|              | 홍보실적   | 홍보실적                   | 계량      | 3      |
|              | 노력도    | 행정지원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3      |
| III.자격<br>징수 | 소계     | <6개 지표>                |         | 18     |
|              | 자격     | 4대보험처리실적               | 계량      | 3      |
|              | 부과     |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        | 계량      | 3      |
|              | 징수     | 보험료 징수실적               | 계량      | 3      |
|              | 채납전담   | 특별관리대상 징수실적            | 계량      | 3      |
|              | 사업장관리  | 소득추소탈루 통보실적            | 계량      | 3      |
|              | 노력도    | 자격징수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3      |
| IV.보험<br>급여  | 소계     | <5개 지표>                |         | 14     |
|              | 보험급여   | 본인부담금환급금·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실적 | 계량      | 2      |
|              | 급여조사   |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 의뢰실적       | 계량      | 2      |
|              |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실적          | 계량      | 4      |
|              | 급여관리   | 기타징수금 징수실적             | 계량      | 3      |
| V.건강<br>지원   | 노력도    | 보험급여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3      |
|              | 소계     | <3개 지표>                |         | 12     |
|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및 암검진 등 실적        | 계량      | 4      |
|              | 의료이용지원 | 의료이용 지원실적              | 계량      | 5      |
| VI.장기<br>요양  | 노력도    | 건강지원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3      |
|              | 소계     | <3개 지표>                |         | 9      |
|              | 자원관리   | 장기요양기관 관리              | 계량      | 3      |
|              | 인정관리   | 법정기한내 등급판정 처리수준        | 계량      | 3      |
|              | 노력도    | 장기요양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3      |

### Ⅲ. 자격징수 부문

#### 1. 자격

| 지표(KPI)명         | 4대사회보험 처리실적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 부서          | 자격징수실/자격부                                                                                                                                                                                                                                                                                                                                                       |    |    |
| 평가적용 부서          | 자격징수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div>○ 4대사회보험 처리실적</div> <div><math display="block">- \frac{(a \times 1) - [(b \times 0.3) + (c \times 0.7)]}{\text{접수건수}}</math></div> <div>• a :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이내 처리건수</div> <div>• b :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경과 후 1일 이내 처리건수</div> <div>• c :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경과 후 2일이후 처리건수</div> <div>※ 처리경과일수의 산정기준 : 접수일 불산입, 휴일 불산입</div> <div>※ 사업장 적용·변경·탈퇴신고건, 퇴직 시 보수총액통보건 제외</div>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2. 부과

| 지표(KPI)명         |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자격징수실/부과부                                                                                                                                                                                                                                                                                          |    |    |
| 평가적용부서           | 자격징수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div>○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목표 : 97%)</div> <div><math display="block">\frac{\text{처리기한내 처리건수}}{\text{정산대상(근로자수+개인대표자수)}}</math></div> <div>• 정산대상 근로자 수 : 현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수</div> <div>• 정산대상 개인대표자 수 : 현재 연말정산 대상 개인사업장 대표자 수</div> <div>• 처리건수 : 4월(근로자), 6월(개인대표자) 정산대상 건수 중 각각 기준일 현재까지 처리한 건수</div>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3. 징수

| 지표(KPI)명          | 보험료 징수실적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 부서           | 자격징수실/징수부                                                                                                                                                                                                                                                                                                                                                                                                                                                                                                                                                                 |    |    |
| 평가적용 부서           | 자격징수부                                                                                                                                                                                                                                                                                                                                                                                                                                                                                                                                                                     |    |    |
| 성과측정 지표<br>(평가산식) | <p>○ 지역보험료 징수실적(2점)</p> <p>- (당년징수율×30)+(목표달성률×70)</p> <p>▶ 당년징수율 : (당년도 징수금액/당년도 고지금액)×100</p> <p>▶ 목표달성률</p> $\left[ \frac{\text{당년도 징수율}}{\text{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 (100 - \text{최근 3년간 전체평균징수율}) \times 1.5\%} \right] \times 100$ <p>※ 결과값 인정범위 : 항목별 가중치(30,70) 초과 불인정</p> <p>○ 직장보험료 징수실적(1점)</p> <p>- (당년징수율×50)+(목표달성률×50)</p> <p>▶ 당년징수율 : {(50인미만징수율×70)+(50인이상 징수율×30)}×100</p> <p>▶ 목표달성률</p> $\left[ \frac{\text{당년도 징수율}}{\text{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 (100 - \text{최근 3년간 전체평균징수율}) \times 15\%} \right] \times 100$ <p>※ 결과값 인정범위 : 항목별 가중치(70,30,50,50) 초과 불인정</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4. 체납전담

| 지표(KPI)명          | 특별관리대상 징수실적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 부서           | 자격징수실/징수부                                                                                                                                                                                                                                                                                                                                                                            |    |    |
| 평가적용 부서           | 자격징수부                                                                                                                                                                                                                                                                                                                                                                                |    |    |
| 성과측정 지표<br>(평가산식) | <p>○ 체납전담파트 징수실적</p> <p>- <math>\left( \frac{\text{특별관리 징수금액}}{\text{특별관리 목표금액}} \times 60\% \right) + \left( \frac{\text{공매의뢰건수}}{\text{공매목표건수}} \times 40\% \right)</math></p> <p>▶ 특별관리 목표금액 : 특별관리 대상금액×목표징수율</p> <p>▶ 공매목표건수 : 특별관리 대상세대×공매목표율</p> <p>▶ 목표징수율 : 50%</p> <p>▶ 공매목표율 : 3%</p> <p>※ 공매의뢰 건수 중 직권해제 및 자산관리공사 반려 건은 제외</p> <p>※ 결과값 인정범위 : 항목별 가중치(60,40) 초과 불인정</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5. 사업장관리

| 지표(KPI)명          | 소득축소탈루 통보실적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 부서           | 자격징수실/사업장관리부                                                                           |    |    |
| 평가적용 부서           | 자격징수부                                                                                  |    |    |
| 성과측정 지표<br>(평가산식) | ○ 소득축소탈루 통보실적<br><div>국세청 통보건수</div> <div>목표건수</div><br>※ 국세청 통보건수 : 심사위원회 상정 후 승인된 건수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6. 노력도

| 지표(KPI)명         | 자격징수 업무노력과 성과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자격징수실                                                                                                                                     |    |    |
| 평가적용부서           | 자격징수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자격징수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br>— 지역본부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 선정<br>※ 다른 지역본부에 비하여 실적이 탁월한 사업, 실적은 저조하나 당년도에 향상도가 높은 사업, 기타 독창적인 업무를 추진한 경우 등 |    |    |
| 평가방법             | 6등급 평가                                                                                                                                    |    |    |

IV. 보험급여 부문

1. 보험급여

| 지표(KPI)명         | 상한제사후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실적                                                                                                                                                                                                                                           | 배점 | 2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급여관리실/급여관리부/급여조사1부                                                                                                                                                                                                                                               |    |    |
| 평가적용부서           | 보험급여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실적(1점)<br><br>[ $\frac{(a \times 1) + (b \times 0.4)}{\text{통보건수}}$ - $\frac{\text{전년도이전 미처리건}}{\text{전년도 통보건수}}$ ]<br><br>▶ 목표 : 98.0%<br>- a : 결정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br>- b : 결정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46일 이후<br>※ 지급불능 건(사망, 출국, 말소)중 공시송달 건, 수령 거부 건은 제외 |    |    |
|                  |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실적(1점)<br><br>[ $\frac{(a \times 1) + (b \times 0.4)}{\text{통보건수}}$ - $\frac{\text{전년도이전 미처리건}}{\text{전년도 통보건수}}$ ]<br><br>▶ 목표 : 95.0%<br>- a : 시효기산일로부터 45일 이내<br>- b : 시효기산일로부터 46일 이후<br>※ 지급불능 건(사망, 출국, 말소)중 공시송달 건, 수령 거부건은 제외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2. 급여조사(2)

| 지표(KPI)명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실적                                                                                                                                                                                                                                                                                                                                                                                                                                                                                                                                                                                                                                                                                                                                                                                                                                                                               | 배점 | 4점 |
|------------------|---------------------------------------------------------------------------------------------------------------------------------------------------------------------------------------------------------------------------------------------------------------------------------------------------------------------------------------------------------------------------------------------------------------------------------------------------------------------------------------------------------------------------------------------------------------------------------------------------------------------------------------------------------------------------------------------------------------------------------------------------------------------------------------------------------------------------------------------------------------------------------------------|----|----|
| KPI CHAMPION     | 대전동부지사, 3급, 김대원(009149)                                                                                                                                                                                                                                                                                                                                                                                                                                                                                                                                                                                                                                                                                                                                                                                                                                                                     |    |    |
| 지표관리부서           | 급여관리실/급여조사1부                                                                                                                                                                                                                                                                                                                                                                                                                                                                                                                                                                                                                                                                                                                                                                                                                                                                                |    |    |
| 평가적용부서           | 보험급여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실적</p> <div><div><math display="block">(a \times 1.3) + (b \times 1.2) + c + d</math></div><div>전년도 월평균진료비 심사결정금액</div></div> <p>▶ 목표 : 전년도 월평균 진료비 심사결정금액의 0.7%</p> <p>▶ 환수결정사유별 환수결정금액 가중치 기준</p> <p>a : 결정사유(90 수진자 조회) → 병원급 선정후 환수 결정건</p> <p>b : 결정사유(90 수진자 조회) → 의원급 선정후 환수 결정건</p> <p>c : 결정사유(32~34, 71~82, 92, 95), 색출사유17</p> <p>· 색출사유(17), 진료내역통보(92) → 1.0</p> <p>· 전산점검(32~34, 71~81, 95) → 0.5</p> <p>d : 현지조사 의뢰에 의한 환수실적 및 참여실적</p> <p>▶ 현지조사 의뢰 및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반영 기준</p> <p>- 현지조사 직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부당확인금액 중 요양기관별로 지사 환수목표액의 30%까지 실적반영</p> <p>- 현지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소속지사에 현지조사 참여 월별로 지사 환수 목표액의 10% 실적반영</p> <p>· 현지실사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표방과목별 전년도 평균 부당확인금액을 요양기관별로 지사 환수 목표액의 30%까지 실적반영</p> <p>· 현지실사 의뢰기관 중 미실시기관은 표방과목별 전년도 평균부당확인금액의 90%를 요양기관별로 지사 환수목표액의 30%까지 실적반영</p> <p>▶ 전년도 월평균 진료비 심사결정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p> <p>※ 종합병원(중별1), 보건기관 제외</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3. 급여관리

| 지표(KPI)명         | 기타징수금 징수실적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급여관리실/급여조사2부                                                                                                                                                                                                                                                                                                                                                                                                                                                                                                                                                                                                                                                      |    |    |
| 평가적용부서           | 보험급여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기타징수금 징수실적</p> <p style="text-align: center;">당년도 금액징수율</p> <p style="text-align: center;"><math>a + (100 - a) \times 2.5\%</math></p> <p>▶ 목표 징수율 ≤ 100 (100을 초과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 : 최근 5년간 금액징수율 중 최고·최저년도 징수율을 제외한 3년 평균금액 징수율</li></ul> <p>※ 평가 시 제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실사관련 고지 건</li><li>- 대형사고 및 전염병 관련 통합고지건 중 장기간 징수불능 건 등</li><li>- 체납 후 진료, 현역병·수용자 등의 부당수급, 의료급여수수료, 의료급여 진료비 정산 관련 고지건 제외 (종별 : 12, 16, 17, 91, 41-02, 11-31)</li></ul> <p>▶ 실적산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금액징수율 = <math>\frac{\text{당해년도총징수금액}}{\text{당해년도총고지금액}}</math></li></ul>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4. 노력도

| 지표(KPI)명         | 보험급여 업무노력과 성과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급여관리실                                                                                                                                                                                                                                         |    |    |
| 평가적용부서           | 보험급여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보험급여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역본부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 선정</li><li>※ 다른 지역본부에 비하여 실적이 탁월한 사업, 실적은 저조하나 당년도에 향상도가 높은 사업, 기타 독창적인 업무를 추진한 경우 등</li><li>※ 보고서 작성 분량(A4) : 6쪽 내외 (서식 추후 통보)</li></ul> |    |    |
| 평가방법             | 6등급 평가                                                                                                                                                                                                                                        |    |    |



## V. 건강지원 부문

### 1. 건강검진

| 지표(KPI)명         | 건강검진                                                                                                                                                                                                                                                                                                                                                                                                                                                                                                                                                                                                                                                                                                                                                                                                                                                                                                                                           | 배점 | 4점 |
|------------------|------------------------------------------------------------------------------------------------------------------------------------------------------------------------------------------------------------------------------------------------------------------------------------------------------------------------------------------------------------------------------------------------------------------------------------------------------------------------------------------------------------------------------------------------------------------------------------------------------------------------------------------------------------------------------------------------------------------------------------------------------------------------------------------------------------------------------------------------------------------------------------------------------------------------------------------------|----|----|
| KPI<br>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건강관리실/건강검진부                                                                                                                                                                                                                                                                                                                                                                                                                                                                                                                                                                                                                                                                                                                                                                                                                                                                                                                                    |    |    |
| 평가적용부서           | 건강지원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일반건강검진 실적(1.5점)</p> $\frac{\text{해당지역본부의 1차검진 수검률}}{\text{해당지역본부의 1차검진 목표수검률}}$ <p>▶ 목표수검률 : 전체 65.382%(지역본부별 목표수검률 별도 설정)<br/> ※ 해당 지역본부의 전년도 수검률 + (100 - 전년도 수검률) × 2% 적용<br/> ▶ 수검률 : <math>B/A \times 100\%</math><br/> ▶ 검진대상자(A) : 2010년 1월말 현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1차) 수<br/> ▶ 수검자(B) : 2010년 1월말 현재 일반건강검진 수검자(1차) 수</p> <p>○ 암검진 수검률(1.5점)</p> $\frac{\text{암검진수검률}}{\text{암검진 목표수검률}}$ <p>▶ 목표수검률 : 41.605%(지역본부별 목표수검률 별도 설정)<br/> ※ 해당 지역본부 전년도 수검률 + (100 - 전년도 수검률) × 3%<br/> ▶ 암검진대상자(A) : 2010년 1월말 현재 암검진 대상자 수<br/> ▶ 암수검자(B) : 2010년 1월말 현재 암검진 수검자 수<br/> ▶ 수검률 : <math>B/A \times 100\%</math></p> <p>○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0.5점)</p> $\frac{\text{해당지역본부 수검률}}{\text{목표 수검률}}$ <p>▶ 2009년 목표수검률 : 39.99%<br/> - 평균수검률 + (100 - 평균수검률) × 10%<br/> ※ 평균수검률 = 사범기간수검률(29.90%) + 2008년 수검률(36.74%) / 2<br/> 33.32%(전체 지역본부 공통)<br/> ▶ 검진대상자수 : 평가기간 중 검진기간 종료자수<br/> ▶ 수검자수 : 평가기간 중 수검자수<br/> ▶ 수검률 : 평가기간 중 수검자수 / 평가기간 중 검진대상자수</p> |    |    |

| 지표(KPI)명 | 건강검진                                                                                                                                                                                                                                                                                                                                                      | 배점 | 4점 |
|----------|-----------------------------------------------------------------------------------------------------------------------------------------------------------------------------------------------------------------------------------------------------------------------------------------------------------------------------------------------------------|----|----|
|          | <p>○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0.5점)</p> $\left( \frac{\text{해당지역본부의1차검진수검률}}{\text{해당지역본부의1차검진목표수검률}} \right)$ <p>▶ 목표수검률 : 전체 47.81%(지역본부별 목표수검률 별도 설정)<br/>         ※ 해당 지역본부의 전년도 수검률+(100-전년도수검률)×2% 적용<br/>         ▶ 검진대상자(A) : 2010년 1월말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1차)수<br/>         ▶ 수검자(B) : 2010년 1월말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1차)수<br/>         ▶ 수검률 : B/A × 100%</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2. 의료이용지원

| 지표(KPI)명         | 의료이용 지원실적                                                                                                                                                                                                                                                                                                                                                  | 배점 | 5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건강관리실/의료이용지원부                                                                                                                                                                                                                                                                                                                                              |    |    |
| 평가적용부서           | 건강지원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검진결과 사후관리 실적(1.5점)</p> $\frac{\text{사후상담건수}}{\text{사후상담목표건수}} \times 80\% + \frac{\text{만족도점수}}{\text{만족도목표점수(80)}} \times 20\%$ <p>▶ 사후상담 목표건수 : 전년도 목표의 102%(지역본부별 목표 합계)<br/>         ▶ 사후상담건수 : 2009년 지역본부별 사후상담 실시건수<br/>         ▶ 만족도 점수 : 외부 리서치기관의 조사결과 지역본부별 종합만족도<br/>         ▶ 만족도 목표점수 : 종합만족도 80점 이상일 경우 만족도점수 만점 처리 ('07년도 77.7점)</p> |    |    |

| 지표(KPI)명          | 의료이용 지원실적                                                                                                                                                                                                                                                                                                                                                                                                                                                                                                                                                                                                                                                                                                                                                                                                                                                                                                                                                                                                                                                                        | 배점 | 5점 |
|-------------------|----------------------------------------------------------------------------------------------------------------------------------------------------------------------------------------------------------------------------------------------------------------------------------------------------------------------------------------------------------------------------------------------------------------------------------------------------------------------------------------------------------------------------------------------------------------------------------------------------------------------------------------------------------------------------------------------------------------------------------------------------------------------------------------------------------------------------------------------------------------------------------------------------------------------------------------------------------------------------------------------------------------------------------------------------------------------------------|----|----|
| 성과측정 지표<br>(평가산식) | <p>○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실적(1.5점)</p> <p>- 상담실적 (70%) + ②복약상담 실적(30%)</p> <p>▶ 목표값 : 연간 상담등록 관리인원 80,000명</p> <p>▶ 실적산식</p> <p>- { (① <math>\frac{\text{상담등록실적}}{\text{상담등록목표}} \times 70\%</math>) + (② <math>\frac{\text{복약상담실적}}{\text{복약상담목표}} \times 30\%</math>) }</p> <p>▶ 상담등록목표 : '09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상담 등록 목표인원</p> <p>▶ 상담등록실적 : 연간 상담등록인원 목표에 의한 상담등록 인원</p> <p>▶ 복약상담목표인원 : 상담등록 목표인원의 3% (소수점 이하 절사)</p> <p>▶ 복약상담 실적 : 자문약사 복약상담 답변건수 (사례관리 등 포함)</p> <p>※ '09년도 자문의뢰 건 중 '09년도 답변실적</p> <p>○ 사례관리 상담실적(2점)</p> <p>( <math>\frac{\text{신규등록인원}}{\text{등록목표인원}} \times 40\% + \frac{\text{상담건수}}{\text{상담목표건수}} \times 50\% + \frac{\text{만족도점수}}{\text{만족도목표점수}} \times 10\%</math> )</p> <p>▶ 만족도 목표점수(83점) : '09년도 만족도 조사점수(목표달성도 최대값은 100%로 함)</p> <p>▶ 신규등록인원 : 사업대상 질환(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을 가진 대상자 중 참여동의를 얻어 요구사정을 실시하고, 상담(방문, 전화)을 제공한 대상자를 말함</p> <p>▶ 상담건수 : 신규등록된 대상자의 요구사정 결과로 나타난 문제목록과 그에 따른 관리(생활습관교정, 정보제공 등)를 위하여 방문 또는 전화로 중재를 실시한 건수</p> <p>▶ 등록목표인원 : 사례관리 신규등록 목표인원</p> <p>▶ 상담목표건수 : 사례관리 전화 및 방문상담 목표건수(목표건수는 2009년 사업계획에 반영) 단, 목표달성도 최대값은 100%로 함</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3. 노력도

| 지표(KPI)명         | 건강지원 업무노력과 성과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건강관리실                                                                                                                                                                              |    |    |
| 평가적용부서           | 건강지원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건강지원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br>－ 지역본부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 선정<br>※ 다른 지역본부에 비하여 실적이 탁월한 사업, 실적은 저조하나<br>당년도에 향상도가 높은 사업, 기타 독창적인 업무를 추진한 경우 등<br>※ 보고서 작성 분량(A4) : 6쪽 내외 (서식 추후 통보) |    |    |
| 평가방법             | 6등급 평가                                                                                                                                                                             |    |    |

## Ⅵ. 노인장기요양 부문

### 1. 자원관리

| 지표(KPI)명         | 장기요양기관 관리                                                                                           |      | 배점            | 3점            |               |               |      |
|------------------|-----------------------------------------------------------------------------------------------------|------|---------------|---------------|---------------|---------------|------|
| KPI CHAMPION     |                                                                                                     |      |               |               |               |               |      |
| 지표관리부서           | 요양운영실/자원관리부                                                                                         |      |               |               |               |               |      |
| 평가적용부서           | 장기요양부                                                                                               |      |               |               |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      |               |               |               |               |      |
|                  | $\frac{(a'_1 \times 25\% + a'_2 \times 25\% + a'_3 \times 25\%)}{a} + \frac{b' \times 25\%}{b}$     |      |               |               |               |               |      |
|                  | ▶ 정보게시율 85% 이상                                                                                      |      |               |               |               |               |      |
|                  | - a : 운영센터내 회원가입한 기관(입소, 주야간, 단기보호기관)<br>※ '09.12.31까지 회원가입한 기관                                     |      |               |               |               |               |      |
|                  | - a'1 : a기관중 사진을 게시한 기관,<br>- a'2 : a기관중 정·현원을 게시한 기관<br>- a'3 : a기관중 비급여를 게시한 기관                   |      |               |               |               |               |      |
|                  | - b : 운영센터내 회원가입한 기관(주야간, 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 장기요양기관)<br>※ '09.12.31까지 회원가입한 기관<br>- b' : b기관 중 사진을 게시한 기관 |      |               |               |               |               |      |
| ▶ 평점기준           |                                                                                                     |      |               |               |               |               |      |
|                  | 등급                                                                                                  | S    | A             | B             | C             | D             | E    |
|                  | 실적                                                                                                  | 85이상 | 83이상<br>~85미만 | 81이상<br>~83미만 | 79이상<br>~81미만 | 77이상<br>~79미만 | 77미만 |
|                  | 평점                                                                                                  | 3.00 | 2.85          | 2.70          | 2.55          | 2.40          | 2.25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               |      |

## 2. 인정관리

| 지표(KPI)명         | 법정기한내 등급판정 처리실적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요양급여실/인정관리부                                                                                                                                                                                                                                                                                                                                                                                                                                                                                                                                                                                                                                                                                                            |    |    |
| 평가적용부서           | 장기요양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법정기한내 등급판정 처리실적<br>$\frac{(a \times 1) + (b \times 0.95) + (c \times 0.9) + (d \times 0.4)}{\text{관할지사 신청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법정기한내(30일) 처리건</li> <li>- b : 30일 초과 50일 이내 처리건</li> <li>- c : 50일 초과 60일 이내 처리건</li> <li>- d : 60일 초과 처리건</li> </ul> ▶ 기간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제출일부터 등급판정 완료일, 독촉기한10일(공휴일 포함)은 기간산정에서 제외</li> <li>- '09.4.1일 이전 갱신신청 접수건에 대하여는 기산일을 '09.4.1일로 한다.</li> </ul> ▶ 기간산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준 : 2009.1.1-10.31일까지 신청접수 건</li> <li>- 처리기준 : 2009.1.1-12.31일까지</li> </ul> ▶ 신청건수중 제외 대상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취소건, 조사불능건(사망, 출국, 말소 등), 조사거부건, 등급판정위원회 의결로 재조사 지시건</li> </ul>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3. 노력도

| 지표(KPI)명         | 장기요양 업무노력과 성과                                                                                                                                                                                                                                                                                    | 배점 | 3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요양운영실/요양급여실 공통                                                                                                                                                                                                                                                                                   |    |    |
| 평가적용부서           | 장기요양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장기요양 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분별로 하나의 사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지역본부에 비하여 실적이 탁월한 사업, 실적은 저조하나 당년도에 향상도가 높은 사업, 기타 독창적인 업무를 추진한 경우 등</li> <li>※ 보고서 작성 분량(A4) : 6쪽 내외 (서식 추후 통보)</li> </ul> </li> </ul> |    |    |
| 평가방법             | 6등급 평가                                                                                                                                                                                                                                                                                           |    |    |

## 2009년도 지사평가 지표 및 기준

| 평가<br>부<br>문     | 구<br>분 | 평가 지표                  | 지<br>표<br>유<br>형 | 배<br>점 |
|------------------|--------|------------------------|------------------|--------|
| 총계               |        | <25개 지표>               |                  | 100    |
| I.<br>공통         | 소계     | <5개 지표>                |                  | 26     |
|                  | 고객서비스  | 외부고객 만족도               | 계량               | 12     |
|                  |        | 전화응대 모니터링              | 계량               | 5      |
|                  | 경영관리   | 청렴도 지수                 | 계량               | 5      |
|                  |        | 1인당 업무처리량              | 계량               | 3      |
|                  |        | 과·결원율                  | 계량               | 1      |
| II<br>행정<br>지원   | 소계     | <3개 지표>                |                  | 5      |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 계량               | 1      |
|                  | 홍보실적   | 홍보실적                   | 계량               | 2      |
|                  | 노력도    | 행정지원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2      |
| III.<br>고객<br>지원 | 소계     | <5개 지표>                |                  | 22     |
|                  | 자격     | 4대 사회보험 처리실적           | 계량               | 4      |
|                  | 사업장관리  | 사업장지도점검 실적             | 계량               | 4      |
|                  | 부과     |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        | 계량               | 8      |
|                  | 수납징수   | 보험료 징수실적               | 계량               | 4      |
|                  | 노력도    | 고객지원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2      |
| IV.<br>보험<br>급여  | 소계     | <5개 지표>                |                  | 20     |
|                  | 보험급여   | 본인부담금환급금·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실적 | 계량               | 4      |
|                  | 급여조사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실적          | 계량               | 5      |
|                  | 급여관리   | 기타징수금 징수실적             | 계량               | 5      |
|                  |        | 상해요인 사후관리 처리실적         | 계량               | 4      |
|                  | 노력도    | 보험급여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2      |
| V.<br>건강<br>지원   | 소계     | <3개 지표>                |                  | 12     |
|                  | 건강검진   | 건강검진 활성화 실적            | 계량               | 5      |
|                  | 의료이용지원 | 의료이용 지원실적              | 계량               | 5      |
|                  | 노력도    | 건강지원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2      |
| VI.<br>장기<br>요양  | 소계     | <3개 지표>                |                  | 12     |
|                  | 자원관리   | 장기요양기관 관리              | 계량               | 5      |
|                  | 인정관리   | 법정기한내 등급판정 처리실적        | 계량               | 5      |
|                  | 노력도    | 장기요양 업무노력과 성과          | 비계량              | 2      |
| VII.<br>위임       | 소계     | <1개 지표>                |                  | 3      |
|                  | 지사경영   | 지사관리                   | -                | 3      |

### Ⅲ. 고객지원 부문

#### 1. 자격

| 지표(KPI)명         | 4대사회보험 처리실적                                                                                                                                                                                                                                                                                                                                  | 배점 | 4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자격정수실/자격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4대사회보험 처리실적</p> $- \frac{(a \times 1) - [(b \times 0.3) + (c \times 0.7)]}{\text{접수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 :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이내 처리건수</li><li>• b :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경과 후 1일 이내 처리건수</li><li>• c : 접수일로부터 처리기간 경과 후 2일이후 처리건수</li></ul> <p>※ 처리경과일수의 산정기준 : 접수일 불산입, 휴일 불산입</p> <p>※ 사업장 적용·변경·탈퇴신고건, 퇴직 시 보수총액통보건 제외</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2. 사업장관리

| 지표(KPI)명         | 사업장 지도점검실적                                                                                                                                                                                                                                                                                                                                                                                                                                    | 배점 | 4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자격정수실/사업장관리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사업장 지도점검실적(1.4점)</p> $- \frac{\text{지도점검실시 사업장수}}{\text{전년도말 사업장수} \times 1/3 \times 1/4}$ <p>○ 보험료 환수실적(2.6점)</p> $- \frac{\text{평가기간중 환수금액}}{[(A + (B \times 20\%))] \times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 :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전년도 월평균 산정보험료</li><li>• B :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년도 월평균 산정보험료</li></ul> <p>▶ 단, <math>[(A + B \times 20\%)] \times 6.67\%</math> &gt; 자사별 정원(전년도말 기준) × 1,500만원 = 자사별 정원(전년도말 기준) × 1,500만원</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3. 부과

| 지표(KPI)명         |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                                                                                                                                                                                                                                                                                                               | 배점 | 4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자격징수실/부과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직장보험료 연말정산 처리실적(목표 : 97%)</p> $\frac{\text{처리기한내 처리건수}}{\text{정산대상(근로자수 + 개인대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대상 근로자 수 : '08.12.31 현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수</li> <li>정산대상 개인대표자 수 : '08.12.31 현재 연말정산 대상 개인사업장 대표자 수</li> <li>처리건수 : 4월(근로자), 6월(개인대표자) 정산대상 건수 중 각각 2009.5.31, 2009.7.31. 현재까지 처리한 건수</li> </ul>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4. 수납징수

| 지표(KPI)명         | 보험료 징수실적                                                                                                                                                                                                                                                                                                                                                                                                                                                                                                                                                                                                                                                                                                                                                                                                                                                                       | 배점 | 8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자격징수실/징수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지역보험료 징수실적(4점)</p> $-(\text{당년징수율} \times 30\%) + (\text{목표달성률} \times 60\%) + \left( \frac{\text{특별관리징수액}}{\text{특별관리목표액}} \times 10\% \right)$ <p>▶ 당년징수율 : <math>(\text{당년도 징수금액} / \text{당년도 고지금액}) \times 100</math></p> <p>▶ 목표달성률</p> $\left[ \frac{\text{당년도 징수율}}{\text{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 (100 - \text{최근 3년간 전체평균징수율}) \times 1.5\%} \right]$ <p>※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이 99.90%를 초과하는 경우 99.90% 적용</p> <p>※ 특별관리 목표금액 : 특별관리 대상금액 × 목표 징수율(50%)</p> <p>※ 결과값 인정범위 : 항목별 가중치(30,60,10) 초과 불인정</p> <p>○ 직장보험료 징수실적(4점)</p> $-(\text{당년징수율} \times 50) + (\text{목표달성률} \times 50)$ <p>▶ 당년징수율 : <math>\{(50\text{인미만징수율} \times 70) + (50\text{인이상 징수율} \times 30)\} \times 100</math></p> <p>▶ 목표달성률</p> $\left[ \frac{\text{당년도 징수율}}{\text{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 - (100 - \text{최근 3년간 전체평균징수율}) \times 15\%} \right] \times 100$ <p>※ 결과값 인정범위 : 항목별 가중치(70,30,50,50) 초과 불인정</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5. 노력도

| 지표(KPI)명         | 자격부과징수 업무노력과 성과                                                                                                                                                                              | 배점 | 2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자격징수실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자격부과징수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br>－ 지사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 선정<br>※ 다른 지사에 비하여 실적이 탁월한 사업, 실적은 저조하나 당년도에<br>향상도가 높은 사업, 기타 독창적인 업무를 추진한 경우 등<br>※ 보고서 작성 분량(A4) : 1급지 4쪽, 2급지 3쪽 내외 (서식 추후 통보) |    |    |
| 평가방법             | 6등급 평가                                                                                                                                                                                       |    |    |

IV. 보험급여 부문

1. 보험급여

| 지표(KPI)명         |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실적                                                                                                                                                                                                                                                                                                                                                                                                                                                                                                                                                                               | 배점 | 4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급여관리실/급여관리부/급여조사1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div>○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실적(2점)<br/><math display="block">\left[ \frac{(a \times 1) + (b \times 0.4)}{\text{통보건수}} - \frac{\text{전년도이전 미처리건}}{\text{전년도 통보건수}} \right]</math><br/>▶ 목표 : 98.0%<br/>- a : 결정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45일 이내,<br/>- b : 결정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46일 이후<br/>※ 지급불능 건(사망, 출국, 말소)중 공시송달 건, 수령 거부 건은 제외</div> <div>○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실적(2점)<br/><math display="block">\left[ \frac{(a \times 1) + (b \times 0.4)}{\text{통보건수}} - \frac{\text{전년도이전 미처리건}}{\text{전년도 통보건수}} \right]</math><br/>▶ 목표 : 95.0%<br/>- a : 시효기산일로부터 45일 이내<br/>- b : 시효기산일로부터 46일 이후<br/>※ 지급불능 건(사망, 출국, 말소)중 공시송달 건, 수령 거부건은 제외</div>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2. 급여조사

| 지표(KPI)명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실적                                                                                                                                                                                                                                                                                                                                                                                                                                                                                                                                                                                                                                                                                                                                                                                                                                                                                                                      | 배점 | 5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 부서           | 급여관리실/급여조사1부                                                                                                                                                                                                                                                                                                                                                                                                                                                                                                                                                                                                                                                                                                                                                                                                                                                                                                                       |    |    |
| 성과측정 지표<br>(평가산식) | <p>○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실적</p> $\frac{(a \times 1.3) + (b \times 1.2) + c + d}{\text{전년도 월평균진료비 심사결정금액}}$ <p>▶ 목표 : 전년도 월평균 진료비 심사결정금액의 0.7%</p> <p>▶ 환수결정사유별 환수결정금액 가중치 기준</p> <p>a : 결정사유(90 수진자 조회) → 병원급 선정후 환수 결정건</p> <p>b : 결정사유(90 수진자 조회) → 의원급 선정후 환수 결정건</p> <p>c : 결정사유(32~34, 71~82, 92, 95), 색출사유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색출사유(17), 진료내역통보(92) → 1.0</li><li>• 전산점검(32~34, 71~81, 95) → 0.5</li></ul> <p>d : 현지조사 의뢰에 의한 환수실적 및 참여실적</p> <p>▶ 현지조사 의뢰 및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반영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지조사 직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부당확인금액 중 요양기관별로 지사환수목표액의 30%까지 반영</li><li>- 현지조사에 참여한 직원의 소속지사에 현지조사 참여 월별로 지사 환수목표액의 10% 실적반영</li><li>• 현지실사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표방 과목별 전년도 평균 부당확인금액을 요양기관별로 지사 환수목표액의 30%까지 실적반영</li><li>• 현지실사 의뢰기관 중 미실시기관은 표방과목별 전년도 평균부당 확인금액의 90%를 요양기관별로 지사 환수목표액의 30%까지 실적반영</li></ul> <p>▶ 전년도 월평균 진료비 심사결정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p> <p>※ 종합병원(종별1), 보건기관 제외</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3. 급여관리

| 지표(KPI)명         | 기타징수금 징수실적                                                                                                                                                                                                                                                                                                                                                                                                                                                                                                               | 배점 | 5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급여관리실/급여조사2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기타징수금 징수실적</p> $\frac{\text{당년도 금액징수율}}{a + (100 - a) \times 2.5\%}$ <p>▶ 평가 시 제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실사관련 고지 건</li> <li>- 대형사고 및 전염병 관련 통합고지건 중 장기간 징수불능 건 등</li> <li>- 체납후 진료, 현역병·수용자 등의 부당수급, 의료급여수수료, 의료 급여 진료비 정산 관련 고지건 제외 (종별 : 12, 16, 17, 91, 41-02, 11-31)</li> </ul> <p>▶ 실적산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액징수율 = <math>\frac{\text{당해년도총징수금액}}{\text{당해년도총고지금액}}</math></li> <li>- a : 최근 5년간 금액징수율 중 최고·최저년도 징수율을 제외한 3년 평균금액징수율</li> </ul>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지표(KPI)명         | 상해요인 사후관리실적                                                                                                                                                                                                                                                                                                                                                                                                                                          | 배점 | 4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급여관리실/급여조사2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상해요인 사후관리 적용실적</p> $\frac{\text{적용(부당, 구상결정)건수}}{\text{처리건수}} \times 70\% + \frac{\text{적용(부당, 구상결정)금액}}{\text{처리금액}} \times 30\%$ <p>▶ 목표 : 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부당, 구상결정)건수 : 부당이득금, 구상금으로 결정한 건</li> <li>- 적용(부당, 구상결정)금액 : 부당이득금, 구상금으로 결정한 금액</li> <li>- 처리건수(금액) : 부당, 구상결정 건수(금액) + 정당처리 건수(금액)</li> <li>- 처리대상건수 : '08.11차수 ~ '09.10차수 본부발체건과 '09년도 지사발체건</li> </ul> <p>※ 접수취소, 조사 및 결정유예 건수, 금액은 제외</p> |    |    |
| 평가방법             | 목표대실적 평가                                                                                                                                                                                                                                                                                                                                                                                                                                             |    |    |

4. 노력도

| 지표(KPI)명         | 보험급여 업무노력과 성과                                                                                                                                                                                    | 배점 | 2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급여관리실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보험급여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br>－ 지사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 선정<br>※ 다른 지사에 비하여 실적이 탁월한 사업, 실적은 저조하나<br>당년도에 향상도가 높은 사업, 기타 독창적인 업무를 추진한<br>경우 등<br>※ 보고서 작성 분량(A4) : 1급지 4쪽, 2급지 3쪽 내외 (서식<br>추후 통보) |    |    |
| 평가방법             | 6등급 평가                                                                                                                                                                                           |    |    |

## V. 건강지원 부문

### 1. 건강검진

| 지표(KPI)명         | 건강검진실적                                                                                                                                                                                                                                                                                                                                                                                                                                                                                                                                                                                                                                                                                                                                                                                                                                                                                                                                                                                                                                                                                                                                                                                                                                                                                                                                                                                                                                                                                                                                                                                                                          | 배점 | 5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건강관리실/건강검진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일반건강검진 실적(1.5점)</p> <p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frac{\text{해당지사의 1차검진 수검률}}{\text{해당지사의 1차검진 목표수검률}}</math> </p> <p>▶ 목표수검률 : 전체 65.38%(지사별 목표수검률 별도 설정)<br/>           ※ 해당 지사의 전년도 수검률+(100-전년도 수검률)×2%적용<br/>           ▶ 수검률 : B/A × 100%<br/>           ▶ 검진대상자(A) : 2010년 1월말현재 일반건강검진 대상자(1차) 수<br/>           ▶ 수검자(B) : 2010년 1월말현재 일반건강검진 수검자(1차) 수</p> <p>○ 암검진 수검률(1.5점)</p> <p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frac{\text{암검진수검률}}{\text{암검진 목표수검률}}</math> </p> <p>▶ 목표수검률 : 41.61%(지사별 목표수검률 별도 설정)<br/>           ※ 해당 지사 전년도 수검률+(100-전년도 수검률)×3%<br/>           ▶ 암검진대상자(A) : 2010년 1월말현재 암검진 대상자 수<br/>           ▶ 암수검자(B) : 2010년 1월말현재 암검진 수검자 수<br/>           ▶ 수검률 : B/A × 100%</p> <p>○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1점)</p> <p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frac{\text{수검률}}{\text{목표 수검률}}</math> </p> <p>▶ 2009년 목표 수검률 : 39.99%<br/>           - 평균수검률 + (100 - 평균수검률) × 10%<br/>           ※ 평균수검률 = 시범기간수검률(29.90%) + 2008년 수검률(36.74%) / 2<br/>           33.32%(전체 지사 공통)<br/>           ▶ 검진대상자수 : 평가기간 중 검진기간 종료자수<br/>           ▶ 수검자수 : 평가기간 중 수검자수<br/>           ▶ 수검률 : 평가기간 중 수검자수 / 평가기간 중 검진대상자수</p> <p>○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1점)</p> <p style="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left( \frac{\text{해당지사의1차검진수검률}}{\text{해당지사의1차검진목표수검률}} \right)</math> </p> <p>▶ 목표수검률 : 전체 53.244%(지사별 목표수검률 별도 설정)<br/>           ※ 해당 지사의 전년도 수검률+(100-전년도수검률)×2% 적용<br/>           ▶ 검진대상자(A) : 2010년1월말현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1차)수<br/>           ▶ 수검자(B) : 2010년1월말현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1차)수<br/>           ▶ 수검률 : B/A × 100%</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2. 의료이용지원

| 지표(KPI)명          | 의료이용 지원실적                                                                                                                                                                                                                                                                                                                                                                                                                                                                                                                                                                                                                                                                                                                                                                                                                                                                                                                                                                                                                                                                                                                                                                                                                                                                                                                                                                                                                                                                                                                                                                                                                      | 배점 | 5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 부서           | 건강관리실/의료이용지원부                                                                                                                                                                                                                                                                                                                                                                                                                                                                                                                                                                                                                                                                                                                                                                                                                                                                                                                                                                                                                                                                                                                                                                                                                                                                                                                                                                                                                                                                                                                                                                                                                  |    |    |
| 성과측정 지표<br>(평가산식) | <p>○ 검진결과 사후관리 실적(1점)</p> $\frac{\text{상담처리건수}}{\text{상담목표건수}} (20\%) + \frac{\text{개선효과건수}}{\text{개선목표건수}} (40\%) + \frac{\text{만족도점수}}{\text{목표점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상담 목표건수 : 전년도 목표의 102%(지사별 목표 건수)</li> <li>- 사후상담건수 : 2009년 지사별 사후상담 실시건수</li> <li>- 개선목표건수 : 2009년 사후 상담건수의 40%에 해당하는 건수</li> <li>- 개선효과건수 : 2009년 상담결과 금연 등 건강증진 개선효과 있는 자 수</li> <li>- 만족도 점수 : 외부 리서치기관의 조사결과 지사별 종합만족도</li> <li>- 만족도 목표점수 : 종합만족도 80점 이상일 경우 만족도점수 만점 처리 ('07년도 종합만족도 : 77.7점)</li> </ul> <p>○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실적(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실적 (70%) + ②복약상담 실적(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값 : 연간 상담등록 관리인원 80,000명</li> <li>▶ 실적산식 <math display="block">- \{ \text{① 상담 등록 실적} \times 70\% + \text{② 복약상담 실적} \times 30\% \}</math> </li> <li>▶ 상담등록목표 : '09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상담 등록 목표인원</li> <li>▶ 상담등록실적 : 연간 상담등록인원 목표에 의한 상담등록 인원</li> <li>▶ 복약상담목표인원 : 상담등록 목표인원의 3% (소수점 이하 절사)</li> <li>▶ 복약상담 실적 : 자문약사 복약상담 답변건수 (사례관리 등 포함)</li> <li>※ '09년도 자문의뢰 건 중 '09년도 답변실적</li> </ul> </li> </ul> <p>○ 사례관리 상담실적(2점)</p> $\frac{\text{신규등록인원}}{\text{등록목표인원}} \times 40\% + \frac{\text{상담건수}}{\text{상담목표건수}} \times 50\% + \frac{\text{정상종결률}}{\text{목표정상종결률}} \times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등록인원 : 사업대상 질환(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을 가진 대상자 중 참여 동의를 얻어 요구사정을 실시하고, 상담(방문, 전화)을 제공한 대상자를 말함</li> <li>▶ 상담건수 : 신규등록된 대상자의 요구사정 결과로 나타난 문제목록과 그에 따른 관리 (생활습관교정, 정보제공 등)를 위하여 방문 또는 전화로 중재를 실시한 건수</li> <li>▶ 정상종결률 : <math>\frac{\text{정상종결인원}}{\text{사례관리종결인원}} \times 100</math><br/>(목표 정상종결률은 2009년 사업계획에 반영 ... 80%)</li> </ul>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3. 노력도

| 지표(KPI)명         | 건강지원 업무노력과 성과                                                                                                                                                                                 | 배점 | 2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건강관리실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 건강지원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 평가<br>— 지사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 선정<br>※ 다른 지사에 비하여 실적이 탁월한 사업, 실적은 저조하나 당년도에<br>향상도가 높은 사업, 기타 독창적인 업무를 추진한 경우 등<br>※ 보고서 작성 분량(A4) : 1급지 4쪽, 2급지 3쪽 내외 (서식 추후<br>통보) |    |    |
| 평가방법             | 6등급 평가                                                                                                                                                                                        |    |    |

## Ⅵ. 노인장기요양 부문

### 1. 자원관리

| 지표(KPI)명          | 장기요양기관 관리                                                                                       | 배점   | 5점            |               |               |               |         |
|-------------------|-------------------------------------------------------------------------------------------------|------|---------------|---------------|---------------|---------------|---------|
| KPI CHAMPION      |                                                                                                 |      |               |               |               |               |         |
| 지표관리 부서           | 요양운영실/자원관리부                                                                                     |      |               |               |               |               |         |
| 성과측정 지표<br>(평가산식) | ○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      |               |               |               |               |         |
|                   | $\frac{(a'_1 \times 25\% + a'_2 \times 25\% + a'_3 \times 25\%)}{a} + \frac{b' \times 25\%}{b}$ |      |               |               |               |               |         |
|                   | ▶ 정보게시율 85% 이상                                                                                  |      |               |               |               |               |         |
|                   | - a : 운영센터 내 회원 가입한 기관(입소, 주야간, 단기보호기관)                                                         |      |               |               |               |               |         |
|                   | - a'1 : a기관 중 사진을 게시한 기관, - a'2 : a기관 중 정·현원을 게시한 기관                                            |      |               |               |               |               |         |
|                   | - a'3 : a기관 중 비급여를 게시한 기관                                                                       |      |               |               |               |               |         |
|                   | - b : 운영센터내 회원 가입한 기관(주야간, 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 장기요양기관)                                                 |      |               |               |               |               |         |
|                   | - b' : b기관 중 사진을 게시한 기관                                                                         |      |               |               |               |               |         |
|                   | ※ '09.12.31까지 회원 가입한 기관                                                                         |      |               |               |               |               |         |
|                   | ※ 단, 관할구역내 a 또는 b만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실적을 100% 적용                                                      |      |               |               |               |               |         |
| 평가방법              | ▶ 평점기준                                                                                          |      |               |               |               |               |         |
|                   | 등급                                                                                              | S    | A             | B             | C             | D             | E       |
|                   | 실적                                                                                              | 85이상 | 83이상<br>~85미만 | 81이상<br>~83미만 | 79이상<br>~81미만 | 77이상<br>~79미만 | 77미만    |
|                   | 평점                                                                                              | 5.00 | 4.75          | 4.50          | 4.25          | 4.00          | 3.75    |
|                   | 평가방법                                                                                            |      |               |               |               |               | 평가산식 평가 |

## 2. 인정관리

| 지표(KPI)명         | 법정기한내 등급판정 처리실적                                                                                                                                                                                                                                                                                                                                                                                                                                                                                                                                                | 배점 | 5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요양급여실/인정관리부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법정기한내 등급판정 처리실적</p> $\frac{(a \times 1) + (b \times 0.95) + (c \times 0.9) + (d \times 0.4)}{\text{신청건수}} \times 100$ <p>- a : 법정기한 내(30일) 처리건, - b : 30일 초과 50일 이내 처리건<br/>         - c : 50일 초과 60일 이내 처리건, - d : 60일 초과 처리건</p> <p>▶ 기간산정 기준</p> <p>- 신청서 제출일부터 등급판정 완료일, 독촉기한 10일(공휴일 포함)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p> <p>- '09.4.1일 이전 갱신신청 접수건에 대하여는 기산일을 '09.4.1일로 한다.</p> <p>▶ 기간산정 대상</p> <p>- 신청기준 : 2009.1.1-10.31일까지 신청접수 건</p> <p>- 처리기준 : 2009.1.1-12.31일까지</p> <p>▶ 신청건수 중 제외 대상건</p> <p>- 신청 취소건, 조사불능건(사망, 출국, 말소 등), 조사거부건, 등급판정 위원회 의결로 재조사 지시건</p> |    |    |
| 평가방법             | 평가산식 평가                                                                                                                                                                                                                                                                                                                                                                                                                                                                                                                                                        |    |    |

## 3. 노력도

| 지표(KPI)명         | 장기요양 업무노력과 성과                                                                                                                                                                                           | 배점 | 2점 |
|------------------|---------------------------------------------------------------------------------------------------------------------------------------------------------------------------------------------------------|----|----|
| KPI CHAMPION     |                                                                                                                                                                                                         |    |    |
| 지표관리부서           | 요양운영실/요양급여실 공통                                                                                                                                                                                          |    |    |
| 성과측정지표<br>(평가산식) | <p>○ 장기요양업무 추진성과 및 노력도</p> <p>－ 지사 평가지표 및 기준의 평가부문별로 하나의 사업 선정</p> <p>※ 다른 지사에 비하여 실적이 탁월한 사업, 실적은 저조하나 당년도에 향상도가 높은 사업, 기타 독창적인 업무를 추진한 경우 등</p> <p>※ 보고서 작성 분량(A4) : 1급지 4쪽, 2급지 3쪽 내외 (서식 추후 통보)</p> |    |    |
| 평가방법             | 6등급 평가                                                                                                                                                                                                  |    |    |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

| 발간번호         | 2011년도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
| 연구 2011-01   |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 송태민   |
| 연구 2011-02   |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출 및 수입구조 분석                       | 조재국   |
| 연구 2011-03   |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 이상영   |
| 연구 2011-04   |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 박실비아  |
| 연구 2011-05   |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 정기혜   |
| 연구 2011-06   |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가공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 곽노성   |
| 연구 2011-07   | 저소득층 이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 김혜련   |
| 연구 2011-08   |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은진   |
| 연구 2011-09   |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 김동진   |
| 연구 2011-10   | 통일대비 북한 위기사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 황나미   |
| 연구 2011-11   |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 신영석   |
| 연구 2011-12   |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과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 윤석명   |
| 연구 2011-13   | 사회보장제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 최성은   |
| 연구 2011-14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근준   |
| 연구 2011-15   |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애·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 신화연   |
| 연구 2011-16-1 |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 김미숙   |
| 연구 2011-16-2 |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 여유진   |
| 연구 2011-17-1 |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 고경환   |
| 연구 2011-17-2 |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고경환   |
| 연구 2011-17-3 | 2011 사회예산분석                                              | 최성은   |
| 연구 2011-17-4 | 2011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 유근준   |
| 연구 2011-17-5 |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 윤석명   |
| 연구 2011-17-6 |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 원종욱   |
| 연구 2011-17-7 |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 정영호   |
| 연구 2011-18   |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 이태진   |
| 연구 2011-19   |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노대명   |
| 연구 2011-20   |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 여유진   |
| 연구 2011-21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 최현수   |
| 연구 2011-22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 김태완   |
| 연구 2011-23   |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 이현주   |
| 연구 2011-24   | 2011 빈곤연계연보                                              | 김문길   |
| 연구 2011-25   |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 강혜규   |
| 연구 2011-26   | 중산층가족의 복지제검도 증진방안 연구                                     | 김유경   |

| 발간번호          | 2011년도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
| 연구 2011-27    |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 김미숙     |
| 연구 2011-28    |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 반용관     |
| 연구 2011-29    |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 김성희     |
| 연구 2011-30    |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 김성희     |
| 연구 2011-31    | 사회복지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 강혜규     |
| 연구 2011-32    |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 이삼식     |
| 연구 2011-33    |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 정영철     |
| 연구 2011-34    |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 손창균     |
| 연구 2011-35    |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 도세록     |
| 연구 2011-36    |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 장영식     |
| 연구 2011-37-1  | 출산율예측모형개발                                                   | 이삼식     |
| 연구 2011-37-2  | 저출산에 대한 민간의 영향과 정책과제                                        | 김태홍(외부) |
| 연구 2011-37-3  |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 최정수     |
| 연구 2011-37-4  |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 김은정     |
| 연구 2011-37-5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백선희(외부) |
| 연구 2011-37-6  |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 이삼식     |
| 연구 2011-37-7  |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 박종서     |
| 연구 2011-37-8  |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 임정덕(외부) |
| 연구 2011-37-9  |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 정경희     |
| 연구 2011-37-10 |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소정     |
| 연구 2011-37-1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 이윤경     |
| 연구 2011-37-12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 선우 덕    |
| 연구 2011-37-13 |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br>-M시 종적연구기반(I)            | 오영희     |
| 연구 2011-37-14 |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 김수봉     |
| 연구 2011-37-15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 오영희     |
| 연구 2011-37-16 |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 이삼식     |
| 연구 2011-37-17 |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 정경희     |
| 연구 2011-37-18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 이소정     |
| 연구 2011-37-19 |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 신창우     |
| 연구 2011-37-20 |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 김기홍(외부) |
| 연구 2011-37-21 |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 정영철(외부) |
| 연구 2011-37-22 |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 이미정(외부) |
| 연구 2011-38    |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br>-2006-2010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
| 연구 2011-39-1  |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 이상영     |
| 연구 2011-39-2  |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 김동진     |
| 연구 2011-39-3  |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 최은진     |
| 연구 2011-39-4  |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 김동진     |
| 연구 2011-40-1  |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 김남순     |
| 연구 2011-40-2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 김정선     |

####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 발간번호         | 2011년도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
| 연구 2011-41-1 |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 홍석표   |
| 연구 2011-41-2 |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홍석표   |
| 연구 2011-42   |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 김승권   |
| 연구 2011-43   |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 김미숙   |
| 연구 2011-44-1 |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남상호   |
| 연구 2011-44-2 |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 강신옥   |
| 연구 2011-45   |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 정영호   |
| 연구 2011-46   |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송태민   |
| 연구 2011-47   |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 이연희   |

| 발간번호       | 2012년도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
| 연구 2012-01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 정기혜     |
| 연구 2012-02 |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 김대중     |
| 연구 2012-03 |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김정선     |
| 연구 2012-04 |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곽노성     |
| 연구 2012-05 |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 김남순     |
| 연구 2012-06 |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 박살비아    |
| 연구 2012-07 |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 윤강재     |
| 연구 2012-08 |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신호성     |
| 연구 2012-09 |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 이상영     |
| 연구 2012-10 |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상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 김혜련     |
| 연구 2012-11 |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방안             | 김동진     |
| 연구 2012-12 |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 정진욱     |
| 연구 2012-13 |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 정기혜     |
| 연구 2012-14 |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 신영석     |
| 연구 2012-15 |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 김진수     |
| 연구 2012-16 |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 윤석명     |
| 연구 2012-17 |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 신현웅     |
| 연구 2012-18 |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 신화연     |
| 연구 2012-19 |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 유근춘     |
| 연구 2012-20 |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 원종욱     |
| 연구 2012-21 |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 고경환     |
| 연구 2012-22 | 중임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 최성은     |
| 연구 2012-23 |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 고경환     |
| 연구 2012-24 | 2012년 사회예산 분석                                  | 최성은     |
| 연구 2012-25 |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 유근춘     |
| 연구 2012-26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 윤석명·신화연 |
| 연구 2012-27 |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 원종욱     |
| 연구 20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 강신옥     |



| 발간번호          | 2012년도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
| 연구 2012-29    |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태완   |
| 연구 2012-30    |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 남상호   |
| 연구 2012-31    | 현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 김미곤   |
| 연구 2012-32    |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 이현주   |
| 연구 2012-33    |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 염주희   |
| 연구 2012-34    |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I (터키)        | 이현주   |
| 연구 2012-35    |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김문길   |
| 연구 2012-36    |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 김미곤   |
| 연구 2012-37    | 2012년 빈곤통계연보                                 | 김문길   |
| 연구 2012-38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 강혜규   |
| 연구 2012-39    |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 김미숙   |
| 연구 2012-40    |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심층분석 | 김성희   |
| 연구 2012-41    |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 김유경   |
| 연구 2012-42    |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재활,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 박수지   |
| 연구 2012-43    |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 정영철   |
| 연구 2012-44    |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 장영식   |
| 연구 2012-45    |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 도세록   |
| 연구 2012-46    | 보건복지분야 통계조사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손창균   |
| 연구 2012-47-1  |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 이삼식   |
| 연구 2012-47-2  |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 신윤정   |
| 연구 2012-47-3  |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 이상립   |
| 연구 2012-47-4  |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 김현식   |
| 연구 2012-47-5  |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 이철선   |
| 연구 2012-47-6  |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 염주희   |
| 연구 2012-47-7  |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 이삼식   |
| 연구 2012-47-8  | 임신 및 출산을 위한 난임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인공수정 대상    | 황나미   |
| 연구 2012-47-9  |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 최정수   |
| 연구 2012-47-10 |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 정은희   |
| 연구 2012-47-11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 김현식   |
| 연구 2012-47-12 |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 (이현장) |
| 연구 2012-47-13 |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 이상립   |
| 연구 2012-47-14 |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 정경희   |
| 연구 2012-47-15 |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 오영희   |
| 연구 2012-47-16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전달체계의평가및개선방안                        | 선우덕   |
| 연구 2012-47-17 | 노인장기요양요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 이윤경   |
| 연구 2012-47-18 |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 정경희   |
| 연구 2012-47-19 |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 김대중   |
| 연구 2012-47-20 |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 박종서   |
| 연구 2012-47-21 |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 이윤경   |

##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 발간번호          | 2012년도 보고서명                                                   | 연구책임자   |
|---------------|---------------------------------------------------------------|---------|
| 연구 2012-47-22 |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 이삼식     |
| 연구 2012-47-23 | 선진국의고령사회정책:유럽국가의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중심으로                  | 선우덕     |
| 연구 2012-47-24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 오영희     |
| 연구 2012-47-25 |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정정희     |
| 연구 2012-47-26 | 출산력시계열자료구축및분석                                                 | 신창우·이삼식 |
| 연구 2012-47-27 | 저출산고령화에따른사회복지공적전달체계개편방안:공적전달체계의수직적편제와수평적배열의재구조화               | 정홍원     |
| 연구 2012-47-28 | 부모에대한경제적존과자녀의만혼화                                              | (이만우)   |
| 연구 2012-47-29 |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 신윤정     |
| 연구 2012-47-30 |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 (최경환)   |
| 연구 2012-47-31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 박종서     |
| 연구 2012-48    |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 오영호     |
| 연구 2012-49-1  | 중앙정부의문화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 이상영     |
| 연구 2012-49-2  |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대한건강영향평가                                         | 김동진     |
| 연구 2012-49-3  |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 최은진     |
| 연구 2012-49-4  |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 최은진     |
| 연구 2012-50-1  |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 김남순     |
| 연구 2012-50-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잡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 김정선     |
| 연구 2012-51    | 2012년 아시아 사회정책 비교 연구: 빈곤정책 연구(3년차)                            | 홍석표     |
| 연구 2012-52    |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 김승권     |
| 연구 2012-53    |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 김미숙     |
| 연구 2012-54    |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김승권     |
| 연구 2012-55-1  |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 최현수     |
| 연구 2012-55-2  |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육구의동태분석                           | 남상호     |
| 연구 2012-56-1  |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 정영호     |
| 연구 2012-56-2  |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 김대중     |
| 연구 2012-57    |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송태민     |
| 연구 2012-58    |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 이연희     |
| 연구 2012-59    |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 이상영     |
| 연구 2012-60    |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 황나미     |
| 연구 2012-61    | 사회보장 재정주체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원종옥     |
| 연구 2012-62    |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 신영석     |
| 연구 2012-63    |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 윤강재     |
| 연구 2012-64    |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 이상영     |
| 연구 2012-65    |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정립 방향                                 | 고경환     |
| 연구 2012-66    |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 김혜련     |
| 연구 2012-67    |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 남상호     |
| 협동 2012-1     |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 신호성     |
| 협동 2012-2     |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영호     |